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연구

2022. 12.

한국국방연구원

머리말

최근 우리 군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라는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전환 여성을 남성으로 보고 심신장애 전역처분을 한 군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국회, 언론, 인권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국방부에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증진되고 이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군에서도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는 성전환자 현역복무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소수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없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민간에서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주로 검토한 것과 달리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서의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병역판정검사 단계를 포함하여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관련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하여 군사적 측면, 장병 및 국민 인식 측면,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부터 외국군과 같이 성전환자의 복무를 넓게 인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은 군의 상황, 국제사회의 경향 및 장병의 인식, 법률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단계적인 수용도 고려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설문참여, 자료제공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민간의 의료·법률·인권전문가, 국방부, 병무청 및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김윤태

연 구 담 당

책 임 자	박 문 언
참 여 자	독 고 순
	김 동 민
	박 찬 빈
	김 영 곤

제 기 부 서	윤 문 학(국방부 인사기획관)
	김 현 석(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형 무(국방부 인사관리제도담당)

목 차

요 약 ····· 11

Ⅰ. 서론 ····· 1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5
2. 제기부서 요구사항 및 연구목표 ····· 16
3.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 17

Ⅱ. 성전환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5

1. 성소수자와 성전환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 ····· 25
2.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의 전반적인 변화 ····· 27
3.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의 권고 ····· 29
4. 성전환자에 대한 외국 입법례 ····· 35
5.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의 변화 ····· 39

Ⅲ.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현 실태 ····· 51

1. 성소수자 군 복무 실태 ····· 51
2. 성전환자의 병역판정 검사단계에서의 문제 ····· 52
3. 성전환자 현역복무 시 문제 ····· 58
4.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외국 사례의 분석 ····· 60

Ⅳ.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영향요소 분석 ····· 79

1. 군사적 측면에서의 문제 ····· 79
2. 장병 및 국민 인식 측면에서의 문제 ····· 81
3.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 ····· 99
4. 종합적 검토 ····· 103

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관련 방안 검토 ····· 105
1.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방안 결정 시 고려사항 ····· 105
2. 성전환자 현역복무의 제한 [방안 Ⅰ] ····· 109
3. 성전환자 수술 여부에 따른 현역복무 검토 [방안 Ⅱ] ····· 111
4. 성전환 시기에 따른 현역복무 검토 [방안 Ⅲ] ····· 115
5. 성전환 현역복무 관련 현실적 방안 ····· 116

Ⅵ. 결론 및 제언 ····· 123
1. 성전환자 현역복무 문제의 종합적 검토 ····· 123
2. 성전환자 현역복무에 대한 정책적 제언 ····· 125

참고문헌 ····· 129

부 록 ····· 131
1. 부대 방문 장병 대상 면담 내용 ····· 133
2. 대국민 조사 설문지 및 설문결과 ····· 135
3. 장병 대상 조사 설문지 ····· 159

표 목 차

<표 1-1>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하사 사건 경과 ····· 15
<표 1-2> 구체적 면담 및 자문 현황 ····· 19
<표 1-3>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기간과 대상자 ····· 20
<표 1-4> 선행연구 목록 ····· 23
<표 2-1> 성소수자의 분류 ····· 25
<표 2-2>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분야에서의 변화 ····· 28
<표 2-3> 요그야카르트 원칙의 구체적 내용 ····· 30
<표 2-4> 국제협약상의 차별금지 규정 ····· 31
<표 2-5> 성전환자 관련 국제법원의 판결 ····· 34
<표 2-6> 성별정정의 요건에 대한 국가별 현황 ····· 36
<표 2-7> 성전환자에 대한 국가별 정책 현황 ····· 38
<표 2-8> 대법원예규상 성별정정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와 참고사항 ····· 42
<표 2-9>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판단 ····· 44
<표 2-10> 일반 및 경찰·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 46
<표 2-11> 교도소 성소수자 수용 현황 ····· 48
<표 2-12> 여성호르몬의 영향과 예상되는 시간적 과정 ····· 49
<표 3-1> 성전환자 관련 법규의 내용 ····· 53
<표 3-2> 현행 법령상 성전환자 관련 문제 ····· 54
<표 3-3> 남성호르몬의 영향과 예상되는 시간적 과정 ····· 55
<표 3-4> 성전환자 인사 관련 중앙행정부처 확인 ····· 56
<표 3-5> 성전환자 관련 병역처분 현황 ····· 57
<표 3-6> 성별불일치 관련 병역처분 현황 ····· 57
<표 3-7> 성전환자 군 복무 시 병영생활 문제점 ····· 59
<표 3-8>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국가별 현황 ····· 62
<표 3-9> 트럼프 정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정책 ····· 69
<표 3-10>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전환자 관련 판결 ····· 71
<표 3-11> 미군의 성전환자 관련 정책 ····· 73

<표 4-1> 성전환 관련 전투준비태세의 제한 사항 ····· 80
<표 4-2> 성전환자 현역복무 시 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 요소 ····· 81
<표 4-3> 장병 면담조사 결과 내용 ····· 83
<표 4-4>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없는 경우) ····· 84
<표 4-5>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있는 경우) ··· 85
<표 4-6>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 ····· 86
<표 4-7>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인식 ····· 87
<표 4-8>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 ····· 90
<표 4-9> 성별불일치 관련 추가적 답변 결과(장병) ····· 91
<표 4-10> 성별정체성에 대한 추가적 답변 결과(국민) ····· 92
<표 4-11>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응답 ····· 92
<표 4-12> 성전환 남성과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응답 ····· 94
<표 4-13>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William) ····· 94
<표 4-14> 성전환 여성의 계속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갤럽) ····· 96
<표 4-15> 병역의무 이행자 대상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얼미터) ·· 96
<표 4-16>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유형 ····· 97
<표 4-17> 성전환자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 ····· 101
<표 4-18> 기본권 상충 시 해결방안 ····· 102
<표 5-1>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보완 필요 분야 ····· 107
<표 5-2>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복무 제한 방안 ····· 109
<표 5-3>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복무 제한 방안의 장단점 ····· 110
<표 5-4>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 복무 방안 ····· 111
<표 5-5>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 복무 방안의 장단점 ····· 111
<표 5-6> 성전환 수술 여부에 따른 현역복무 방안 ····· 113
<표 5-7> 성전환 수술 여부에 따른 현역복무 인정 시 장단점 ····· 113
<표 5-8> 성전환 수술 미완료 의료적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방안 ····· 114
<표 5-9> 성전환 수술 미완료자 현역복무 인정 방안의 장단점 ····· 115
<표 5-10> 군 복무 중 성전환 인정 방안 ····· 116
<표 5-11> 군 복무 중 성전환 인정 방안의 장단점 ····· 116

<표 5-12> 현행 제도 유지 시 보완 사항 ····· 118
<표 5-13> 국방 관련 규정 개정 사항 ····· 118
<표 5-14>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사항 ····· 120
<표 5-15> 의료적 판단에 의한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사항 ····· 122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 21
<그림 2-1> 성전환의 일반적 과정 ····· 26
<그림 2-2> OECD LGBTI 포용적 입법현황 ····· 35
<그림 2-3> 민사사건에 있어 성전환 관련 판례의 변화 ····· 41
<그림 3-1> 부대관리훈령상 동성애자 군 복무 보장 관련 내용 ····· 52
<그림 3-2>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별 군인권지수 ····· 61
<그림 3-3> OECD 국가별 성소수자 관련 입법 현황 ····· 61
<그림 3-4> 이스라엘군의 성전환 절차 ····· 64
<그림 3-5> 영국군의 성전환 절차 ····· 66
<그림 3-6> 호주군의 성전환 절차 ····· 67
<그림 4-1>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없는 경우) ·· 84
<그림 4-2>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있는 경우) ·· 85
<그림 4-3>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 ····· 86
<그림 4-4>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인식 ····· 87
<그림 4-5>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간부) ····· 89
<그림 4-6>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병) ····· 89
<그림 4-7> 성별불일치 관련 추가적 답변 결과(장병) ····· 91
<그림 4-8> 성별정체성에 대한 추가적 답변 결과(국민) ····· 92
<그림 4-9>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응답 ····· 92
<그림 4-10> 성전환 남성과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응답 ····· 94
<그림 4-11>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William) ····· 94
<그림 4-12> 성전환 수술에 대한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 95
<그림 4-13> 성전환자의 합리적 차별 문제 ····· 99
<그림 4-14> 성전환자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 ····· 101
<그림 5-1>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 요소 ····· 105
<그림 5-2>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보완 필요 분야 ····· 108
<그림 6-1> 성전환자 현역복무 개선 방향 ····· 126

요 약

2019년부터 우리 군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2020년 법원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성전환 여성을 남성으로 보고 심신장애 전역처분을 한 군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이후 국회, 언론, 인권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국방부에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국내외에 걸쳐 성소수자와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은 없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는 성전환자 현역복무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제기부서에서는 첫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포함하여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장병과 국민의 인식, 둘째, 현행 법령상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제한과 기본권 침해 관련 문제, 셋째,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외국군 사례 분석을 통한 군 영향요소, 넷째, 성전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와 복무 인정 시 군의 준비 사항으로 법령, 규정 및 인사제도 관련 정비사항과 부대시설이나 생활시설 관련 개선 요소의 검토를 요구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첫째, 성소수자와 성전환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하였다. 구체적 시대 변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권고, 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법령과 민형사상 판례의 변화도 확인하였다. 경찰·소방·교육 및 일반 공무원들의 성전환자 임용과 법무부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제도도 검토하였다.

둘째,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동성애자의 현역복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병역판정 단계에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호르몬이나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성전환 여성과 성전환 남성의 병역처분 실태를 확인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외국군의 성전환자 복무실태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군사 선진국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복무 중 성전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국, 러시아, 터키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가능성과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군사적 측면, 장병 및 국민의 인식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단결, 사기, 부대시설이나 병력관리, 인력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 군에도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이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그 외의 경우는 외국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병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의 4개 사단급 부대, 각 군 본부, 육군사관학교 등을 방문하여 장병들과 면담하고 추가적으로 병 4,000여 명, 간부 1,500여 명,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병무청, 군인권센터, 의료전문가 및 변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토론회를 통해 예비역 지휘관, 보수 및 진보 인권단체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였다. 추가적으로 민간에서 실시한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설문결과도 확인하였다. 법률적 측면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판례를 분석하고,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것이 성전환자나 다른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개별 내용 검토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부터 의학적으로 성별불일치를 느끼고 있는 장병들까지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군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 방안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개별 방안을 선택할 경우 제도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 법규, 부대관리, 인력, 병영문화, 교육훈련과 작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모든 방안을 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 중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최종적으

로 제시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문제는 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기본권 침해문제가 군에서 먼저 제기되었고 차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므로 군사적인 측면, 장병의 인식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 중에서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고 성전환자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장병의 의식변화와 시대 상황에 따라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1년 육군 남성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이후 해당 간부를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것인지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다. 심신장애를 사유로 전역이 결정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전환자의 복무 배제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1] 이후 국회, 언론, 인권 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하사 사건의 구체적 경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하사 사건 경과

구분	일자	내용
민간병원 진료	2017. 5. 27.	성주체성 장애 진단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2019. 9. 19.	성주체성 장애 진단
의료목적의 해외여행	2019. 11. 29.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 시행
국군수도병원	2019. 12. 23.	성전환 수술로 여성 외부성기 형태 확인
육군 전공상심사위원회	2020. 1. 9.	비전공상으로 결정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	2020. 1. 21.	전역심사위원회 연기 권고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2020. 1. 23.	성전환자 심신장애 전역 의결
청주지방법원	2020. 2. 10.	성별정정 허가 결정
육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2020. 2. 18.	심신장애 전역처분 취소의 인사소청
육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2020. 6. 29.	인사소청 기각
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전역처분취소 소송제기
국가인권위원회	2020. 12. 14.	성전환자 복무 배제 재검토 권고
MBC PD수첩	2021. 4. 13.	성전환자 관련 문제 방송
이투데이	2022. 8. 9.	국방부 연구용역 관련 언론보도

1) 2020. 12. 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진정0056500(군 복무 중 성전환 군인에 대한 부당한 전역 처분).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 등의 결정에서도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은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논란이 예상되므로 국민적 공감대,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선행적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장병이나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일부 사례는 있었지만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가능성에 대해 군내·외에서 직접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군의 전투준비태세나 군의 사기 및 단결 등에 미치는 군사적 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부정한다고 할 경우 법률·인권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여러 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에서 먼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가 이미 군에 다수 복무하고 있다는 연구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군에서의 성전환자 복무사례를 통해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종합하여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제기부서 요구사항 및 연구목표

가. 제기부서 요구사항

국방부(인사기획관리과)는 성전환자 현역복무에 대한 군내·외 인식 및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포함한 여론조사를 요청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있어 함께 복무할 장병들의 생각과 국민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제한할 경우 헌법상 평등권과 관련해서 성에 의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기본권 침해 여부의 검토를 요구하였다.

추가적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검토하기 위해 무엇보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인정되는 외국군에서의 군에 대한 영향요소를 분석하고 외국군의 전반적인 현황 확인을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가능 여부와 복무 인정 시 군의 준비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 규정, 인사제도 등에 있어 정비사항과 부대나 병영생활 시설과 관련된 개선 요소에 대해서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연구목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보다 현재 우리 군의 상황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표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장병과 국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된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제한한다고 할 경우 제한의 요건이나 구체적 제한 사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만약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역복무의 구체적 인정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부정하거나 인정할 경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이 연구의 목표이다.

3. 연구방법 및 수행체계

가. 연구방법

기존의 연구가 민간에서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 문제를 주로 검토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지만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장병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의 고려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하여 인권·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성전환자에 대한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성전환자 관련 정부의 정책이나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무관자료를 통해 외국군의 성전환자 복무 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성전환자 군 복무와 관련된 국방 법령과 규정 및 국회의 입법자료도 검토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사의 경우와 같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로 인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외국군의 사례를 통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비교법적 관점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우리 군에도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병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통해 현역복무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인정 여부는 사회 전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변화에도 파급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국민과 장병의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 변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인정되는 인권친화적 병영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나. 연구수행체계

먼저, 성전환자 관련 기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이나 국내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발간한 보고서나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외국군의 성전환자 현역복무 제도를 확인한 후 연구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였다.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육·해·공군 7개 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

간부, 병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성소수자 및 보수 인권단체, 성전환자, 병무청 담당자, 법률과 의료분야 민간 전문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자문도 받았다. 주변국과 지속적인 무력충돌 상황에 있으면서도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출장을 통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자료도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이나 자문 현황은 <표 1-2>와 같다.

〈표 1-2〉 구체적 면담 및 자문 현황

구분	일자	장소	내용
장병 면담	2022. 4. 19.	육군 제15사단(화천)	장병 20명에 대한 면담 (지휘관, 간부, 참모)
장병 면담	2022. 4. 21.	공군 제15전투비행단(성남)	장병 16명에 대한 면담 (지휘관, 간부, 참모)
인권단체 면담	2022. 4. 22.	군인권센터(신촌)	센터장 등 3명 면담
장병 면담	2022. 4. 28.	육군 제1사단(파주)	장병 17명에 대한 면담 (지휘관, 간부, 참모)
장병 면담	2022. 5. 3.	해군 제2함대사령부(평택)	장병 15명에 대한 면담 (지휘관, 간부, 참모)
간부 면담	2022. 5. 9. ~ 5. 10.	계룡대	육군(7명), 해군 (4명), 공군(8명) 간부
생도 면담	2022. 5. 17.	육군사관학교(태릉)	생도 12명(2, 3, 4학년)
군의관 면담	2022. 5. 19.	국군수도병원(성남)	정신과 군의관 면담
병무청 방문	2022. 5. 27.	병무청, 대전지방병무청	병역판정 담당관 3명, 정신과 전담 의사 2명
성전환자 면담	2022. 6. 27.	용산역 회의실	성전환자 병역이행 관련 면담 (성전환 남성 2명)
성전환 전문의 면담	2022. 7. 11.	순천향대학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전문가 자문	2022. 7. 14.	한국국방연구원	前) 국방 고위정책결정자
성전환자 면담	2022. 7. 21.	한국국방연구원	15사단 전역자 면담(MTF)
이스라엘 출장	2022. 8. 1. ~ 8. 6.	이스라엘(텔아비브)	이스라엘 방위군

장병의 인식조사를 위해 병 4,000여 명, 간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병 설문조사의 경우 간부와 병사를 구분하여 육·해·공군, 계급, 부대유형, 복무기간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부대별로 해당 인원들에 대해 설문조사 사이트를 안내하고 국방망과 인터넷망을 통해 동시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국민조사의 경우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을 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 사이트를 안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830명에 대해 조사요청을 하였고 1,173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1,000명이 조사를 완료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고 신뢰수준은 ±3.1%인데,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기간과 대상자

구분	일자	내용
대국민 설문조사	2022. 5. 20. ~ 5. 23.	국민 1,0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장병 설문조사	2022. 7. 25. ~ 8. 12.	병 3,951명, 간부 1,563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이를 제한하는 경우의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 외국 법원의 판례를 확인하고 국내법상 병역이나 국방관련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성전환자 관련 민·형사법상 판례의 변화와 정부 부처 행정기관의 성전환자 관련 실무도 확인하였다. 공무원의 일반적인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에, 교수나 교사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과와 교원정책과에, 교도소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보안과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에 채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비역 지휘관, 보수적 군 인권단체 대표, 법학교수, 변호사, 정신과 군의관이 참여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추가적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제 제기부서와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체계를 간략하게 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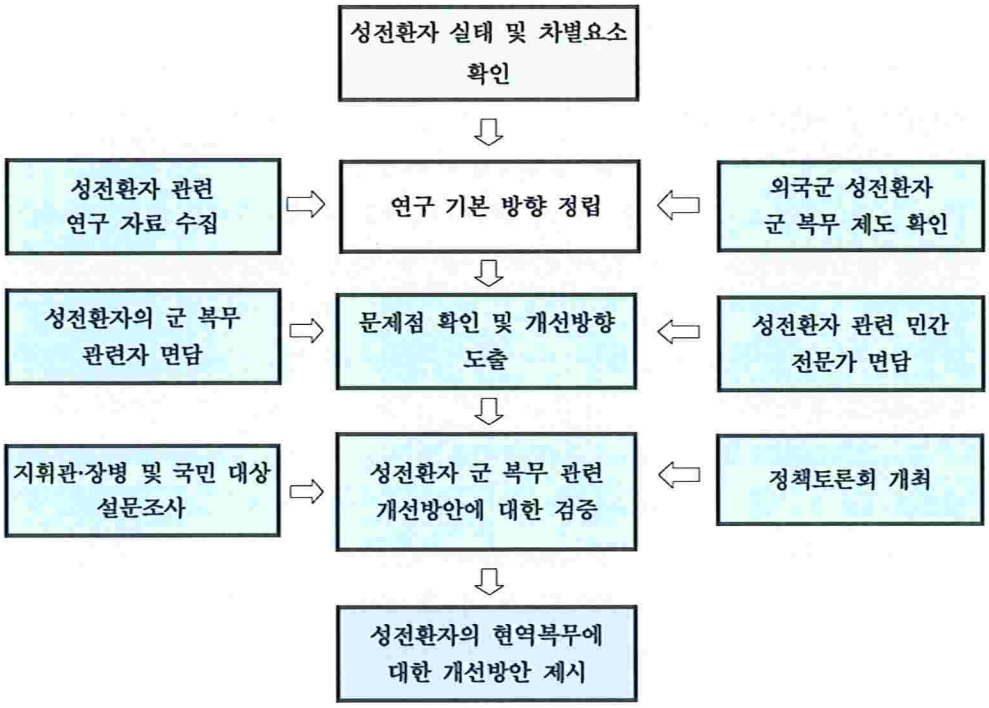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다. 선행연구 개괄

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성소수자 단체를 중심으로 성전환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 조사』 에서 200명의 성소수자 청소년, 948명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차별실태를 조사하였다. 군 복무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288명의 응답자가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마쳤다고 응답하였는데, 동성애자가 261명이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24명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다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591명의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성별정체성의 법적 인정, 보건·의료영역, 학교·교육영역, 직장·노동, 화장실 등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차별을 조사하였다. 국가기관의 차별에 대해 조사하면서 군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성전환자

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도 200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다양한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과 차별금지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상황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로 인한 긍정 또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관련 연구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로 인해 군에 부정적 영향이 적다고 보면서, 군의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부각시켰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미군 내에서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 군인의 수를 예측하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 시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민간 성전환자의 비율을 고려할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의 수를 1,320명에서 6,630명(전체 군인의 0.2~0.5% 내외)으로 추정하였다.[2] 영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군의 사례 분석을 통해 작전준비태세나 부대단결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비용도 전체 군 건강보험 비용의 0.13%로 거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예측하였다.[3]

제네바 안보거버넌스센터(Geneva Centre for Security Sector Governance)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와 각국의 법령 등을 제시하면서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전환자 군 복무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세계트랜스젠더건강전문가협회(The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성전환자의 인권보호와 건강·의료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구체적인 선행연구 목록은 <표 1-4>와 같다.

---

2) Schaefer, Aqgnes Gereben., et al. (2016).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 Rand Corporation, p. 16.

3) *Ibid*, p. 36.

〈표 1-4〉 선행연구 목록

저자	연도	제목	작성기관
김일란	2006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박기주	2013	성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입법과 정책
장서연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박한희	2018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 개정을 앞두고	인권연구
음선필	2019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홍성수	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Sheila Quinn	2010	An Activist's Guide to the Yogyakarta Principles	Hivos
Eli Coleman	2012	Standard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sexual, Transgender, and Gender-Nonconforming People	세계트랜스젠더 건강전문가협회
Polchar	2014	LGBT Military Personnel: A Strategic Vision for Inclusion	헤이그 전략연구센터
Schaefer	2016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	Rand Corporation
Marjolein	2018	Trans and Intersex Equality Rights in Europe	EU Commission
Alan	2018	Gender Identity in the Canadian Forces	Armed Forces & Society
Hillman	2020	Human Rights of Armed Forces Personnel: Compendium of Standards Good Practices Recommendations	제네바안보 거버넌스연구센터
Daniel	2021	Public Attitudes on Transgender Military Service: The Role of Gender	Armed Forces & Society
CDADI	2022	Thematic Report on Legal Gender Recognition in Europe.	Council of Europe

라. 연구수행의 한계

본 연구의 목적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 시 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허용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성전환자로 군에 복무하는 인원은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고 성별불일치를 느끼고 있는 성전환 여성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성전환자에 대한 지휘관, 간부 또는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성전환 간부들은 사례가 없어 주로 외국군의 복무사례에서 군에 대한 영향요소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 분석에 있어 정량적 평가를 통한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관련자들의 의견을 통해 군에 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있어서도 성전환자의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모든 경우에 대해 질문을 하기가 어려워 성전환 여성, 성전환 남성, 성전환 간부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장병과 국민들이 군의 복무에 대해 알고 있거나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 설문의 내용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일부 내용을 다르게 구성하였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그리고 용어에 있어 "트랜스젠더"라는 용어는 "성전환자"와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성불쾌감(gender dysphoria)"과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Ⅱ. 성전환자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성소수자와 성전환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

성소수자는 성별정체성·성적지향에 의해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되는 사람을 말한다. '성적지향'은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성적지향에 따른 성소수자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등을 포함한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gender)로 생물학적 성(sex)과 구분되는데, 성별정체성에 따른 성소수자는 남성·여성, 중성, 양성, 젠더 퀴어(gender queer)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성소수자(LGBTI)의 구분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성소수자의 분류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지정 성별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전환자 (Transgender)	남성	동성애자 (Homosexual) Lesbian, Gay
	여성	
	간성(Intersex)	양성애자 (Bisexual)

'성전환자'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는데, 포괄적 용어로는 일반적으로 성이분적인 젠더규범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에서는 의학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성을 체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실태조사』에서는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

고 정의하였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 조사』에서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전환'은 출생 시 지정된 성별의 외모, 신체 특징, 성 역할 등을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맞추어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성전환 과정은 외모 복장의 변화부터 법적 성별정정, 성전환 수술 등의 의료적 치료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인 성전환의 절차는 <그림 2-1>과 같다.

구분	상담	심리치료 & 성역할 변화	호르몬 치료	성별 재지정 수술
성전환 남자 (FTM)	성별 문제 & 성불쾌감 확인	개인, 커플, 가족 또는 집단치료 성불쾌감이나 사회적 낙인의 부정적 영향 감소	수염, 체모 증가 근육량 증가 월경중단 질 위축 음성이 굵어짐 (에스트로겐)	남성형 흉부 성형술 자궁 절제술 요도 재건 수술 음낭성형술 기타 미용수술
성전환 여자 (MTF)		내면화된 트랜스 혐오 완화 사회와 동료의 지지 강화 신체상을 좋게 하고 회복력 배양 남성 또는 여성으로 생활	근육량 감소 피부 부드러워짐 남성 성기능 부전 유방발달 고환 및 정자 축소 (테스토스테론)	유방확대 성형술 음경, 고환절제술 외음부 성형술 안면윤곽여성화술 음성(성대)수술 기타 미용 수술

〈그림 2-1〉 성전환의 일반적 과정

성전환자는 정신과 상담,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성별 문제나 성불쾌감을 확인하게 된다. 호르몬 치료로 성불쾌감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성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 재지정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성불쾌감에 따른 성전환자 비율은 사춘기 전후로 차이가 발생한다. 사춘기 전에 성불쾌감을 느낀 사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는 남성이 6~23%, 여성이 12~27% 내외이며 동성애자로 정체화되는 비율도 높다. 성불쾌감 진단을 받고 사춘기 호르몬 억제제를 처방받은 청소년은 대부분 성전환 치료를 계속 받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4)]

2.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의 전반적인 변화

가. 의학분야에서의 변화

인간의 성적 행위를 정상·비정상으로 구분하는 성과학의 논의 속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성전환자는 비정상으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20세기 중반부터 성전환은 병리적인 현상이자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상으로 인식하였다. 미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발간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1973년 제2판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였다. 1980년 DSM 제3판은 성전환증(Transsexualism)과 아동의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of Childhood)를 명시하였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 제10판 역시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범주에 포함하였다.

1990년 이후 성전환자 인권운동의 발전과 다양한 성전환자의 존재가 드러나자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병리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성별정체성에 의한 성불쾌감보다 사회의 혐오와 차별인 경우를 구분할

4) Coleman, Eli, et al. (2012). *Standard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sexual, Transgender, and Gender-Nonconforming People.*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p. 11.

필요가 있었다. 2013년 미정신의학회는 DSM 제5판에서 '성주체성장애'라는 용어 대신 '성불쾌감(위화감)(gender dysphoria)'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2015년, 몰타는 2016년에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2018년 ICD 제11판에서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되, 성 건강 관련 상태라는 범주 아래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이는 트랜스젠더 자체가 어떠한 "질병이나 장애"가 아닌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의 경우 의료적 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이 목적이었다.[5]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분야에서의 변화를 간략하게 표시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성전환자에 대한 의학분야에서의 변화

구분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	국제질병분류(ICD)
작성주체		미국정신의학회(APA)	세계보건기구(WHO)
내용 변화	1973년	동성애 삭제(제2판)	
	1980년	성전환증과 아동의 성주체성장애를 명시(제3판)	
	1990년		동성애 삭제,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범주에 포함(제10판)
	2013년	성주체성장애 → 성불쾌감(gender dysphoria) (제5판)	
	2018년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항목 신설(제11판)

나. 성소수자의 인권운동 확대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ICD 제10판 정신장애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인 5월 17일을 기념하여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5) 박한희. (2018).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 개정을 앞두고." 『인권연구』, Vol. 1, No. 1 한국인권학회, p. 180-187.

Homophobia: IDAHO)'이 제정되었다. 이후 트랜스젠더와 양성애자 이슈로 2009년과 2015년 Trans·Biphobia가 추가되었으며, 각국에서 많은 "Rainbow" 단체가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서울광장에서 LGBTQ 성소수자 축제가 열렸다.[6]

3. 국제규범과 국제기구의 권고

가. 성소수자에 대한 요그야카르트 원칙

국제 인권운동가들이 2006년 인도네시아 요그야카르트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법 적용의 원칙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29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7] 차별금지, 핍박으로부터 보호, 권능부여, 책임이 핵심 4가지 요소이다.

29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3원칙은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차별 없는 적용 및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이다. 제4~11원칙은 생명 및 신체안전의 권리로 폭력과 고문으로부터 자유, 사생활보호, 자의적인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제12~18원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고용, 주거, 사회보장, 교육, 건강 분야 권리향유에서의 차별금지 등이다. 제19~21원칙은 국가의 간섭없이 정체성 및 성을 드러내는 자유와 집회에 평화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였다. 제22~23원칙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박해로부터의 보호 청구에 관한 것이다. 제24~26원칙은 차별 없이 가족생활, 공적 업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제27~29원칙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증진 및 인권침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7년 성적 표현과 성징을 포함한 추가 9개 원칙과 111개의 국가의무를 규정하였다.[8] 추가된 원칙의 내용을 보면 제30~34원칙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법적인 인정을 받을 권리, 신체와 정신이 온전할 권리, 범죄화와 제재로부터의 자유, 궁핍

---

6) https://www.sqcf.org/sqp2022 (2022. 12. 15. 최종방문).
7) Quinn, Sheila. (2010). *An Activist's Guide to the Yogyakarta Principles.* Hivos.
8) Grinspan, Mauro Cabral, et al. (2017). *The Yogyakarta Principles plus 10.* www.Yogyakartaprinciples.org.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마지막으로 제35~38원칙은 위생, 정보통신기술, 진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권리이다. 이러한 요그야카르트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표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3〉 요그야카르트 원칙의 구체적 내용

구분	원칙	내용
2006년	제1, 2	인권의 보편적 향유, 평등과 차별금지
	제3	법 앞에서 인정받을 권리
	제4~제6	생명 및 신체안전의 권리, 사생활 보호
	제7~제11	폭력과 고문으로부터 자유, 자의적인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 구금시설에서의 인간적 처우, 인간에 대한 착취, 거래, 매매로부터 보호
	제12~제18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고용, 주거, 사회보장, 교육, 건강 분야 권리향유에 있어 차별금지
	제19~제21	국가의 간섭없이 정체성 및 성을 드러내는 자유와 집회에 평화롭게 참여할 권리
	제22~제23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박해로부터의 보호 청구(이동의 자유, 망명요청권)
	제24~제26	차별 없이 가족생활, 공적업무,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27~제29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증진 및 인권침해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 마련
2017년	제30	폭력, 차별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1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32	자기결정에 의해 신체·정신적 완전성을 가질 권리
	제33	성적 지향, 정체성, 표현 등을 이유로 한 제재나 범죄화로부터의 자유
	제34~제35	가난이나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위생권
	제36	정보와 기술통신과 관련된 인권의 향유
	제37	피해자의 범죄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
	제38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 보전, 활성화할 권리

나. 국제조약이나 국제규범

국제조약이나 국제규범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 성을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모든 권리가 보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도 성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조, 제26조). 유럽인권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도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성전환과 관련해서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제8조)가 국제법원에서 주로 문제되고 있다.

명시적으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스탄불 조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으로 불리는 여성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유럽평의회 협약이다. 동 조약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어 장애, 건강상태,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국제협약상 성과 관련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황은 <표 2-4>와 같다.

〈표 2-4〉 국제협약상의 차별금지 규정

구분	조항	내용
국제인권 A규약	제2조, 제3조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국제인권 B규약	제2조, 제2조, 제26조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평등한 법의 보호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4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 보호, 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이스탄불 조약	제4조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다. 국제기구의 권고

유엔은 국제인권규약상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005년 일반논평 제18호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9] 2011년 이후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적 법률과 개인에 대한 폭력행위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별정정을 위한 요건에 불임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10]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성전환자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각국들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2010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각료이사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군인의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다.[11] 그뿐만 아니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입법적인 방안 및 다른 조치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고, 성전환자의 고용, 교육, 건강 보호 등에 관한 적절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2] 의원총회에서도 2017년 아동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기초로 성전환 관련 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의료인에 의한 일방적인 성적 특징의 변경이 행해져서는 안 되고 성전환을 위해 불임을 포함한 불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선행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3]

---

9)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s to Work(Art. 6 of the Covenant), February 2006, E/C.12/GC/18.

10) UN Human Rights Council,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N Doc. A/HRC/19/41, 2011. 11. 7.;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Doc. A/HRC/22/53, 2013. 2. 1.;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Doc. A/HRC/31/57, 2016. 1. 5.

11)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CM/Rec(2010)4, op. cit., note 26, para. 77.

12) Recommendation CM/Rec(2010)5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Measures to Combat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13) Parliamentary Assembly. (2017). Resolution 2191. Promoting the Human Rights fo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Intersex People.

라. 국제법원의 판결

성전환자에 대한 국제법원의 판결은 28개 EU 가입국을 포함 47개 유럽국가들이 1950년 체결한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와 EU조약에 의해 설립된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주로 확인된다.

먼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1999년 *Smith & Grady v. UK* 사건(29 EHRR 493, 1999)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조사나 동성애를 이유로 전역 조치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을 시작으로 2002년 *Goodwin v. UK* 사건(35 EHRR 18, 2002)에서 성전환자에 대해 법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 및 가족권의 침해라고 보았다. 2010년 *PV v. Spain* 사건(ECtHR, No. 35159/09, 30 November 2010)에서는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전환 이후 자식에 대한 접견권을 제한하는 원인이 성전환 때문이 아니고 감정적 불안정성 때문이라면 적법하다고 하였으나, 2015년 *Identoba and Other v. Georgia* 사건(39 BHRC 510, 2015)에서 성소수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해 경찰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당한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하였다. 2003년 *Van Kuck v. Germany* 사건(37 EHRR 51, 2003)에서는 성전환 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으며, 2017년 *Garçon & Nicot v. France* 사건(ECtHR App Nos. 79885/12 and 52596/13, 6 April 2017)에서는 거세수술을 조건으로 성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의 침해로 보았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부터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판시하고 있었는데, 1996년 *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 사건(2 CMLR 247, 1996)이 그 시초라 할 것이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이라고 상급자에게 알리자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다. 2004년 *KB v. National Health Service Pensions Agency and Another* 사건(1 CMLR 28, 2004)에서는 성전환 남성의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06년 *Richards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사건(2 CMLR 49, 2006)에서도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에 연금을 지급하는데, 영국이 60세의 성전환 여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였다. 2018년 *MB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 사건(C-451/16, 26 June 2018)에서 연

금은 결혼상태와 무관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전환으로 인해 동성혼 상태에 있는 성전환 여성의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2018년 미주인권재판소도 개명, 공적기록, 성별표시를 수정하는 것은 미주인권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임을 명시하였다.[14] 성전환자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판결 내용은 <표 2-5>와 같다.

〈표 2-5〉 성전환자 관련 국제법원의 판결

유럽인권재판소	
Smith & Grady v. UK (1999년)	성적지향에 관한 조사나 동성애를 이유로 전역조치를 한 것은 위법
Goodwin v. UK (2002)	성전환자에 대해 법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생활 및 가족권 침해
Van Kuck v. Germany (2003)	성전환 수술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Garçon & Nicot v. France (2017)	거세수술을 조건으로 성전환을 인정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 침해
유럽사법재판소	
P v. S and Cornwall County Council(1996)	성전환 수술을 할 것이라고 상급자에게 알리자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
KB v. National Health Service Pensions Agency and Another(2004)	성전환 남성의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성을 이유로 한 차별
Richards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2006)	영국이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60세의 성전환 여성(남자는 65세에 지급)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
MB v. Secretary of State for Work and Pensions(2018)	성전환으로 인해 동성혼 상태에 있는 성전환 여성의 연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로 위법 (연금은 결혼상태와 무관하게 지급)

14) State Obligations Concerning Change of Name, Gender Identity, and Rights Derived from a Relationship between Same-Sex Couples[Interpretation and Scope of Articles 1(1), 3, 7, 11(2), 13, 17, 18 and 24, in relation to Article 1, of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dvisory Opinion OC-24/17, Inter-Am. Ct. H.R. (ser. A) No. 24, Nov. 24, 2017.

4. 성전환자에 대한 외국 입법례

가. 법적 성별정정의 인정

이슬람교 국가를 제외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2000년 이전 유럽 국가 중에서도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가가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국가들 중 키프러스,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의 국가는 별도의 법령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법령으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독일, 몰타와 같이 남·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도 존재한다.[15)]

성별정정의 결정은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법원에서 승인하는 국가도 있고, 영국, 헝가리, 룩셈부르크와 같이 행정기관에서 승인하는 국가도 있다. 덴마크와 몰타는 트랜스젠더의 비병리화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몰타의 경우 질병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성전환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OECD의 LGBTI에 대한 포용적 입법 현황은 <그림 2-2>와 같은데, 우리나라의 포용적 입법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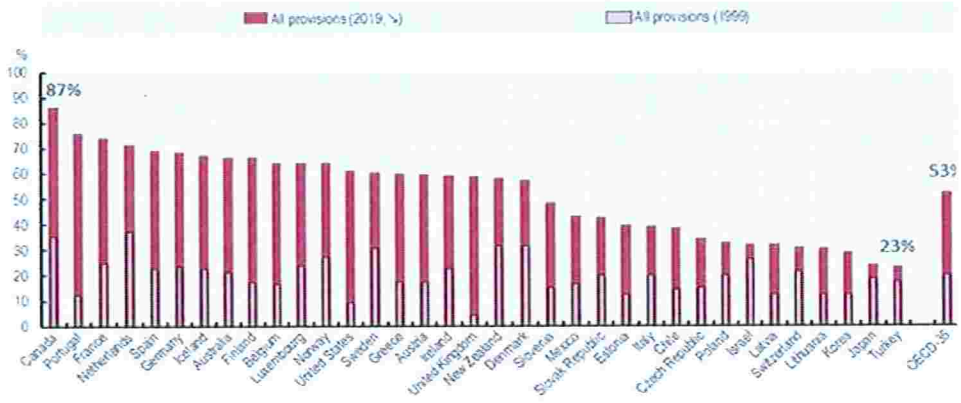

〈그림 2-2〉 OECD LGBTI 포용적 입법 현황

15) Marjolein Van Den Brink, et al. (2018). *Trans and Intersex Equality Rights in Europe*. EU Commission, p. 110.
16) Council of Europe. (2022). *Thematic Report on Legal Gender Recognition in Europe*, p. 10.

성별정정을 위한 구체적 요건은 국가별로 다양한데, 벨기에, 아르헨티나, 덴마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은 성년의 경우 자신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조사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성별정정에 있어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학적 진단을 성별정정의 사전 절차로 인정하고 있다. 소수이긴 하지만 핀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러스와 같은 국가는 성별정정을 위해 생식능력 제거나 성전환 수술도 요구하고 있다.[17]

체첸,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미혼이나 이혼을 성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은 혼인한 사람에 대해 이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이 이를 폐지한 국가도 존재한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별정정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많지만, 이탈리아, 몰타와 같이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거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과 같이 16세를 전후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이 가능한 국가도 있다. 성별정정의 요건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분류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성별정정의 요건에 대한 국가별 현황

구 분			국가 현황
성별 정정의 요건	자기결정		벨기에, 아르헨티나, 덴마크,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의학적 진단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의학적 진단을 요구
	생식능력 제거		핀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러스
	이혼	요구	체첸,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불요구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독일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보호자에게 성별정정 신청권을 부여(이탈리아, 몰타)하거나, 16세 전후 부모의 동의를 요구(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성별 정정 승인 기관	법원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행정기관		영국, 헝가리, 룩셈부르크
남·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인정			오스트리아, 독일, 몰타, 캐나다

17) Marjolein Van Den Brink, et al. (2018). *Trans and Intersex Equality Rights in Europe.* EU Commission의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나. 성전환자의 의료지원과 기타 문제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 형태는 국가별로 입법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국민 전체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민간보험사와의 계약을 통해 치료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은데, 라트비아는 성전환 수술을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험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경우 국가의 재정적 지원(fund)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기금으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아일랜드, 키프러스와 같이 오로지 호르몬 치료만 가능한 국가도 있으며, 크로아티아, 네덜란드처럼 성전환 관련 의료전문가가 없어 외국에서 수술받는 국가도 있다. 폴란드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헝가리는 치료 비용의 10%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별 요건도 다양한데, 영국은 의료지원을 위해 "실제 생활 검사(real life test)"를 통해 일정 기간 전환된 성으로 생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차 전환된 성으로 생활할 가능성에 대해 심사한다.[18] 스웨덴은 상체와 하체를 구분하여, 상체에 대해서는 성불쾌감을 요구하지만, 하체에 대해서는 성불쾌감뿐만 아니라 성전환증의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19] 병원의 입원에 있어서도 전환하려는 성 또는 현재의 법적인 성 가운데 어떤 성별로 입원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많은데, 국가별로 개별 상황에 맞게 전환하려는 성 또는 법적인 성에 따라 입원을 인정하고 있다.

성전환자의 시설사용에 있어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성전환 여성의 여성 탈의실 사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다른 여성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그들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20] 유사한 사례로 덴마크는 다른 여성들의 감정을 고려할 때 성전환 여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로 안내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21] 오스트리아는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독일처럼 모든 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시설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국가도 존재한다. 앞의 유럽인권재판소나 유럽사

---

18) Gender Recognition Act 2004, Section 1. Applications.
19) Marjolein Van Den Brink., et al. (2018). *Trans and Intersex Equality Rights in Europe.* EU Commission, p. 81.
20) College voor de Rechten van de Mens, oordeelnr. 2014-64, 22 May 2014.
21) Danish equality board, case 9383/2016.

법재판소의 판례에서 본 것과 같이 유럽에서는 성전환 여성을 생물학 여성과 구분하여 연금이나 퇴직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영역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는 성전환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성전환자에 대한 국가별 상황은 <표 2-7>과 같다.

〈표 2-7〉 성전환자에 대한 국가별 정책 현황

구분	각국의 상황
자기결정 또는 의학적 진단	상당수의 국가는 정신과 상담, 호르몬 치료 등의 의학적 진단으로 성전환을 인정하나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국가도 존재
성전환 수술 필요	핀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키프러스는 생식기능의 제거나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나,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법원에 의해 위법성 인정[22]
의료보험 적용국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일본 등 40여 개국 이상
노동영역	- 미국(시민권법에서 성별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성에 대한 차별로 인정) - 대만의 성별노동평등법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에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 - 일본도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따라 성별정체성에 관계없이 보호
연금	유럽은 유럽인권재판소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성전환자의 연금청구권이나 정년을 보장
캠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 실시

다. 소결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성별정정을 인정하고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별정정의 구체적 요건은 나이, 성전환 수술, 이혼 등과 같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절차, 치료 비용지원도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성전환 수술이나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유럽국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22) Austrian Constitutional Court (VfGH), Case V 4/06(2006); German Constitutional Court (BVerfG), Case 1 BvR 3295/07(2011); Cantonal High Court of Zurich, Case NC090012(2011); Council of Europe. (2015). *Protecting Human Rights of Transgender Persons*, p. 13.

5 성전환자에 대한 우리나라 법령과 제도의 변화

가. 국내법의 현황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모두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규정하면서 '성적지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성적지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경찰수사규칙」과 「해양경찰수사규칙」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참고인 등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다양한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 8. 31.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서 차별의 내용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020. 6. 29. 발의된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정의규정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적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여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으로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경기도를 포함하여 다수의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 외에도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나. 성전환자 관련 법원의 판례 변화

형사사건에 있어 성전환자 관련 판례는 생물학적 성을 중시하다가 사회적 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1996년 대법원은 성염색체의 구성, 성전환 수술 후 여성으로서 생식능력 등 생물학적 요소를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 생물학적 성을 중시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다가 사회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성기와 신체, 성관계 등 사회적 영역에서 전환된 성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으로 인정되며 법률적으로도 동일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민사사건의 경우 성별정정에 있어서도 판례가 변화되었다. 2006년 호적정정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초로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여 호적정정을 허용하였다(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결정). 입법 당시 상정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호적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진정한 신분관계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 소수 의견은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판결을 통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입법의 취지나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 호적정정을 인정할 수 없고 오로지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2011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사회적 성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다른 사람과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성별정정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신분관계의 중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2가지 예외를 제시하였다.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혼인한 사람이 성별정정을 신

청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의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9. 2. 자, 2009스117 결정). 민사사건에 있어 성전환 관련 판례의 변화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2-3>과 같다.[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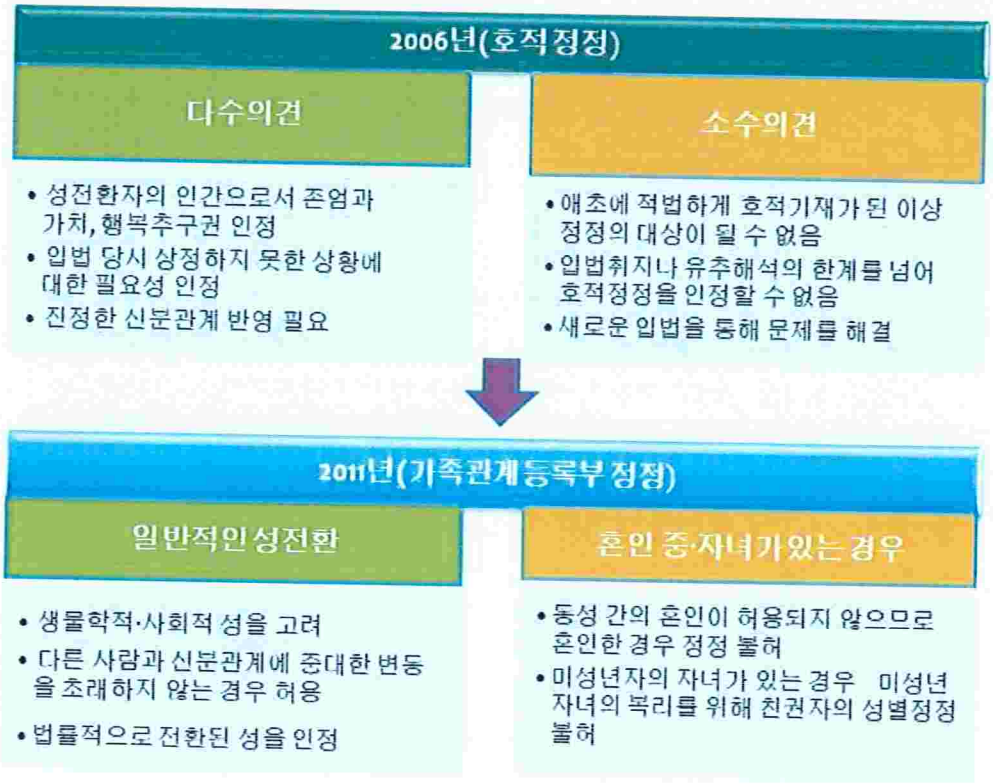

〈그림 2-3〉 민사사건에 있어 성전환 관련 판례의 변화

각급 법원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개별 법관에 따라 성별정정의 기준은 다른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시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로 인한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23) 대법원(2022. 11. 24. 선고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미성년자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인정되었다.

혼인 및 미성년자녀의 존재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하거나 성전환 수술 후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신체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였다는 사실, 또는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견서나 감정서를 2020년 첨부서류에서 참고서면으로 개정하였다.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 혼인 및 미성년 자녀의 존재여부도 조사사항에서 참고사항으로 개정하였다. 성별정정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와 참고사항은 <표 2-8>과 같다.

〈표 2-8〉 대법원예규상 성별정정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와 참고사항

구 분	내용	비고
소견서나 감정서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	2020년 첨부서류 → 참고서면로 개정
	성전환 수술 후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신체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였음을 확인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 부재	
진술서와 보증서	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인의 보증서	
참고사항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 혼인여부 및 미성년자녀 존재 여부	조사사항 → 참고사항

다. 성별정정 관련 법원 판례의 구체적 사례 분석

성별정정 관련 법원의 판례는 성전환자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결정이 존재한다. 성기 재건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와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판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생식능력을 제거하였지만 외부성기 재건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 남성 사건에서 법원은 성별정정을 인정하였다. 성전환자의 의료적 조치를 성역할과 성별표현의 변화, 호르몬요법, 외과적 치료로 구분하고 외부

성기 성형술(남성성기 지향술과 유리피판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고난도의 수술임을 인정하였다. 외부성기 성형이 성전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에도 강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의사의 진단을 통해 호르몬 치료, 가슴제거 수술, 난소·난관 절제술 등을 마치고 남성의 신체 외관을 갖추었다면 성별정정이 인정된다고 하였다(2013호파1406, 2018호기20034).

고환 절제 수술을 받았지만 여성 성기 재건술을 시행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사건에 있어서도 여성호르몬 치료와 고환 절제수술을 통해 유방이 발달하고 신체가 여성처럼 변화했다면 외음부 성형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2015호기302). 사회적 혼란, 다른 구성원의 혐오감이나 불편함, 성전환자 자신의 혼란을 이유로 외부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 권익도 보호되어야 하며, 제3자의 보호 문제 역시 민사법과 가사소송법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별 기준에 부족한 외관으로 인한 일반인의 혼란감은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받는 사회적, 경제적, 인격적 고통에 비하면 당연히 감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외부 성기 수술로 반대 성의 생식능력까지 획득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부 성기 재건의 강제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생식능력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성별정정이 허용된 성전환 여성의 사례도 존재한다. 외부 성기 성형은 고비용, 고난도의 수술로 건강상 위험과 상당한 후유증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자궁적출술과 같은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것은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 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다(2020브2020). 반대로 유방 및 자궁 제거 수술을 하였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한 사례도 존재한다(2015브11). 호르몬 치료만 받고 있던 상태에서 재판부나 판사에 따라 완화된 조건으로 성별정정이 인정된 사례[24]도 존재한다. 그렇다 보니 성별정정에 우호적인 법원을 찾아서 성별정정을 신청(forum shopping)하는 경우도 있다.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의 사건을 종합하면 <표 2-9>와 같다.

24) 김성희 외. 2008. 『세 성전환 남성의 이야기』. 그린비, p. 96.

〈표 2-9〉 성별정정에 대한 법원 판단

구 분	허가	불허
성기 재건수술 미시행(FTM)	- 외부성기 성형이 성전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님 - 남성성기 성형술은 고비용, 장기간 시간 소요 - 남성의 신체 외관을 갖추었다면 성별정정 가능	
성기 재건수술 미시행(MTF)	-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 권익 보호 - 성별 기준에 부족한 외관으로 인한 일반인의 혼란감은 감내 - 외부 성기 수술로 반대 성의 생식능력까지 획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요 불필요	
생식능력 미제거(FTM)	- 남성성기 성형술은 고비용, 장기간 시간 소요 -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 요구는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훼손을 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생식능력제거& 성전환 수술 미시행(FTM)		- 30여 년 전 유방제거 수술을 받고 소 제기 전 자궁 및 부속기 적출수술은 인정 - 정신과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성전환수술을 마치지 않은 점 - 사회적인 영역에서 남성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라. 경찰의 남녀통합선발제도

공무원의 선발이나 채용에 있어 성전환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별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서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생식비뇨기, 내분비, 신경 계통의 질환만을 불합격 판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임용 시 성전환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

표에는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체격에 있어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면 된다.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 양안이 0.8 이상이어야 하고 색각이나 사시가 아니어야 한다.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별표 1]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제10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직무에 적합한 신체인지의 판단을 위해 팔다리와 손·발가락, 척추만곡증, 상·하지관절의 정상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3] 특수부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11조 관련)에서 일부 특수부서의 경우 신장 170cm·체중 60kg 이상, 흉위 신장의 1/2 이상, 양안의 나안 시력 1.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체력검사의 평가는 100m,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에 따라 「별표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서 구체적으로 채용 가능한 신체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체격에 대해서는 직무에 적합한 신체로만 규정하고 있고, 시력, 청력, 혈압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일반 및 경찰·소방공무원의 신체검사 기준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일반 및 경찰·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구분		기준 요소
일반공무원		1. 일반결함(악성종양,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구강·인후기관 계통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중증 호흡기, 심혈관, 간, 신장, 내분비, 혈액질환 4.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신경 계통 질환 5. 문서 작성 능력 또는 표현 능력의 팔다리 장애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질환 6.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시각 장애 및 정신계통 질병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5]
경찰 공무원	일반부서	1. 체격: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별표1] 2. 시력: 양안 0.8 이상 및 색각 이상 없어야 함 3. 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 청취 가능 4. 혈압: 수축기혈압 145 이하, 확장기혈압 90 이하 5. 복시인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34조의2 제1항)
	특수부서	1. 신장 170cm 이상 2. 체중 60kg 이상 3. 흉위 신장의 1/2 이상 4. 시력은 양안 나안 시력이 각각 1.0 이상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별표3]
소방공무원		1. 체격: 신체검사결과 양호, 직무에 적합한 신체 2. 시력: 양안 0.8 이상 및 색각 이상 없어야 함 3. 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 청취 가능 4. 혈압: 수축기혈압 145 이하, 확장기혈압 90 이하 5.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휴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 부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 제7항)

2021. 6. 21. 국가경찰위원회는 '순환식·남녀 동일기준·P/F제' 체력검사 및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 방안을 의결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채용 시 성별의 구분 없이 일원화된 기준에 따른 체력측정을 위해 직무 적합성이 높은 순환식

체력검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순환식 체력검사에서는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이 합격하며, 종목식 체력검사에서는 각 평가 종목에 실격이 없고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하도록 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임용기회 보장을 위해 시험실시 단계별로 여성 또는 남성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간부후보생과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2023. 1. 1.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분야는 2026. 1. 1.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령에 의할 때 신체와 체력기준을 충족한다면 성전환자의 경찰공무원임용을 금지할 수 없다.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이 성전환자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과 동일하게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고려할 때 신체나 체력요건이 직무수행 가능성 판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법무부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정부 부처 중에서 성소수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 법무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5조).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성소수자를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부여받은 주민등록상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동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 양성애자는 자신과 같은 성별 또는 다른 성별 모두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끌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기타 이성 복장을 선호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트랜스젠더의 형태와 관련하여 출생 성별은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여성, 반대의 경우인 트랜스젠더 남성 그리고 제3의 성으로 인식하는 비이분법적 트랜스젠더(non-binary transgender)도 있으며, 의료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과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9년의 지침이 트랜스젠더를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적 성(gender)이 일치하지 않는 사

람으로, 물리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만을 성전환자로 구분하였다가 그 범위를 확대한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에 따라 수용시설의 소장은 성소수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일반인과 다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신체 등을 지닌 신입 수용자에 대해 상담결과 및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안정된 수용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의 진료 등 의료처우를 실시할 수 있다.

2009년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발간한 『특수한 요구를 가진 수용자를 위한 핸드북(Handbook on Prisoners with Special Needs)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을 생물학적 성으로 분류하고 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핸드북은 호르몬요법, 성별재지정(성전환) 수술 등 성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비 부담의 호르몬 투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핸드북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거실지정 및 물품 지급에서의 기준이 변화하였는데, 2019년까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성전환자, 여장 남자 및 남장 여자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 거실을 지정하고 물품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았다. 2020년 개정 지침에서는 성소수 수용자의 본인 의견 고려, 법률적 성별, 신체적 성, 다른 수용자로부터의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용자복은 지정된 수용동 기준에 따라 평상복을 지급하되, 수용자의 의견, 성별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2020. 4. 17. 기준 성소수자 수용인원은 전체 83명이고 그중 성전환자는 9명인데, 구체적 현황은 <표 2-11>과 같다.

〈표 2-11〉 교도소 성소수자 수용 현황

(2020. 4. 17. 기준, 단위: 명)

구분	소계	성전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기타
			게이	레즈비언		
인원	83	9	49	6	10	9

2022년 미국 뉴저지에서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성전환의 요건으로 하지 않아 여자 교도소에서 2명이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25] 성전환자가 젊고 호르몬 치료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거가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사건의 발생이 가능하다. 잉글랜드 럭비풋볼연맹도 호르몬 치료를 받더라도 근육량과 골밀도의 차이가 커서 성전환 여성 선수의 출전을 금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다.[26] 여성호르몬의 영향과 예상되는 시간적 과정은 <표 2-12>에서 보는 것과 같다.[27]

〈표 2-12〉 여성호르몬의 영향과 예상되는 시간적 과정

영향	예상 시작점	예상 최대효과
체지방의 재분배	3~6개월	2~5년
근육량 감소, 힘의 약화	3~6개월	1~2년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유분의 감소	3~6개월	미상
성욕의 감소	1~3개월	1~2년
자발성 발기의 감소	1~3개월	3~6년
발기 부전증	다를 수 있음	다를 수 있음
가슴의 성장	3~6개월	2~3년
고환크기의 감소	3~6개월	2~3년
정자 생성의 감소	다를 수 있음	다를 수 있음
수염 및 체모의 얇아짐과 성장의 지연	6~12개월	3년
남성 탈모	머리카락 재성장 중지와 손실은 1~3개월 정도 정지	1~2년

25) https://www.nbcnews.com/nbc-out/out-news/nj-trans-prisoner-impregnated-2-inmates-transferred-mens-facility-rcna38947 (2022. 12. 31. 최종방문).
26) https://www.reuters.com/lifestyle/sports/rfu-bans-transgender-women-participating-womens-game-2022-07-29/ (2022. 12. 31. 최종방문).
27) Coleman, Eli, et al. (2012), p. 38.

Ⅲ.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현 실태

1. 성소수자 군 복무 실태

현재 국방 관련 규정에서 성전환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없지만 성소수자 중 동성애자에 대한 군 복무 관련 규정은 존재한다.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법원의 판례나 국제규범을 고려할 때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역복무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

현행 국방 관련 법령 중에 헌법상의 성적 차별금지에 관련된 규정이 존재한다. 「군인사법」은 법의 적용에 있어 모든 군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및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2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이라 함)도 모든 군인의 평등한 대우 및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동성애자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병영 내 동성애자 장병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애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상적인 복무 수행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동성애자 장병에 대해서는 신분별 현역복무부적합 기준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전역처분을 할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처리를 할 수 없다(제253조). 지휘관 및 간부는 동성애 병사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타인에 의해 동성애자로 밝혀지는 "아웃팅(Outing)"은 장병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다만,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나 사고 예방업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모 등 관련된 필수 인원에 한하여 알릴 수 있다(제255조). 동성애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성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각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자는 엄중 처벌한다(제256조). 설문조사를 통한 동성애자 식별활동을 금지하고 인권교육 시 성

적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제254조 및 제257조). 이러한 사항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부대관리훈령상 동성애자 군 복무 보장 관련 내용

병영 내에서의 동성애자 사이의 성적 행위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된다.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제92조의6)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대법원은 「군형법」상 추행죄와 관련하여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애자 군인의 성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2019도3047 판결).

2. 성전환자의 병역판정 검사단계에서의 문제

가.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병역판정 감사단계에서 성전환자는 크게 보면 행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성별이 정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살펴본다.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적으로 남성인 성전환 여성은 「병역법」 및 국방부령인 신체검사규칙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에서 현역복무가 부적합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102조의3 성별불일치), 고환이 정상용적의 1/2 이하로 감소한 고환결손 또는 위축(384), 귀두나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음경절단(394)의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간부로서 임관을 하려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 등급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과 질환 중에 신경증적 장애(82)나 인격 및 행동장애(84), 자궁 또는 난소 제거(340) 등으로 임관이 어려울 수도 있다. 육군의 경우 「육규 161 건강관리 규정」 [별표 2] 신체 각 과별 요소평가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산부인과 관련 질병 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현행 법령상 성전환자 관련 법규의 개략적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성전환자 관련 법규의 내용

구 분	구체적 내용	
	남성 관련	여성 관련
병역법	–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증상이 있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3]	
	– 법적으로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 (전시근로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 고환결손 또는 위축 – 음경절단	
군인사법 시행규칙	– 신경증적 장애(불안, 적응장애) – 성인 인격 및 행동장애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	
	– 갑상선 절제술(8급–전절제술) – 음경상실 – 고환위축, 고환결손	– 유방절제술(8급–전절제술) – 자궁 및 난소 제거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 성전환 수술 후 상태 또는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 유방 확대술 등 신체에 대한 비가역적인 변화의 경우 성주체성 장애 인정	
	– 음경절단이나 상실	– 근치적 유방절제, 전 절제

병역판정검사에 있어 간부와 병사는 신분에 따라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병사의 경우 성전환 여성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다고 할 때 성전환자의 인정 범위에 따라 병역기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간부는 병역의무 이행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적으로 여성인 성전환 남성은 현행법 체계상 간부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다. 법적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병사로서 병역이행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로 여자이지만 성전환 남성도 남성으로서 병역의무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현행 법령상 성전환자 관련 문제

구 분		생물학적 성 → 전환된 성	
		남성 → 여성 (MTF)	**여성 → 남성** (FTM)
성전환	**간부**	간부로 임용 불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침해)	
	병사	- 병역기피의 문제 발생 가능	- 군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를 금지하면 자기결정권 침해

성전환 남성이 남자 간부나 병사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 신체검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남군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간부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 등급표, 병은 「병역법」상의 신체검사 규정 적용에 의해, 정신과 질환 중에 신경증적 장애(82)나 인격 및 행동장애(84), 성별불일치 등으로 현역복무가 어려울 수 있다. 음경상실(320), 고환위축(325), 고환결손(326)의 사유가 적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육규 161 건강관리 규정」 [별표 2] 신체 각 과별 요소평가 기준표에 따라 성전환 수술 후 상태 또는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 유방 확대술 등 신체에 대한 비가역적인 변화의 경우 성주체성 장애(70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가 인정되거나 음경절단이나 상실(129)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나.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성전환 남성의 문제에 있어 「병역법 시행령」은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을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하였다(제136조 제1항 제2호 바목). 성전환 수술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었다면 병역이행의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고려가 필요하다. 성전환 남성의 경우 헌법상의 의무이자 대한민국 남자의 권리로서 현역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 수염이나 체모가 자라고 근육량이 증가하는 등 외형이 남성과 같이 변화하게 되는데, 남성호르몬의 영향과 예상되는 시간적 과정은 <표 3-3>과 같다.[28]

〈표 3-3〉 남성호르몬의 영향과 예상되는 시간적 과정

영향	예상 시작점	예상 최대효과
피부에 유분 증가, 여드름	1~6개월	1~2년
수염, 체모가 자람	3~6개월	3~5년
탈모	12개월	다를 수 있음
근육량 증가, 힘의 강화	6~12개월	2~5년
체지방의 재분배	3~5개월	2~5년
월경의 중단	2~6개월	자료 없음
클리토리스의 확대	3~6개월	1~2년
질의 위축	3~6개월	1~2년
목소리가 굵어짐	3~12개월	1~2년

성별정정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입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성전환 남성이 존재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인정할 대상의 범위도 문제이다. 성별 재지정 수술을 완료한 성전환 남성만 현역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성별 재지정 수술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호르몬 치료나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성전환 남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의 현역복무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8) Coleman, Eli, et al. (2012), p. 37.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성전환 여성의 경우 법적으로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되었으므로 병사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 2021년 병적 편입 후 병역판정 검사 전에 성별이 정정된 경우 병무청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현재는 병무청과 행정안전부 사이에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성별정정이 완료된 성전환 남성이 간부로 임관을 원하는 경우 법률상으로 문제가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역법 시행령」의 해석상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를 간부로 임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심신장애 등급표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정할 여지도 존재한다. 다른 중앙행정부처의 공무원 채용이나 임용절차에서 법적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대해 결격사유가 적용되는지를 질의하였지만, 아직 성전환자의 임용과 관련하여 문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교사의 경우 방학기간 동안 성전환 수술을 하고 전환된 성으로 교직을 계속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전환자의 채용이나 복무와 관련하여 질의한 중앙행정부처의 현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성전환자 인사 관련 중앙행정부처 확인

부처	주무부서	비고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채용
교육부	양성평등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사 채용
법무부	인권정책과, 보안과	교정분야
경찰청	인사담당관	채용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	채용

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실태

병무청은 법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 성전환 남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나, 병역면제 미신청자는 신체검사를 거쳐 전시근로역(5급)으로 처분한다. 성전환 여성은 원칙적으로 병적에서 제적하

되, 법원 판결 이전의 가족관계등록부 미정정자는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제적 처분을 하게 된다.

성별 미정정자의 경우 성전환 수술 이전은 성별불일치 사유로, 수술 이후는 양쪽 고환결손으로 5급 처분을 하고 있다.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인원은 2022. 4. 30. 기준으로 15명, 병적에서 제적된 인원은 8명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성전환 남성은 50여 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다. 성별이 정정된 성전환 여성은 매년 5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나 2022년에는 4월까지의 자료임에도 8명이 발생하였다. 연도별 성전환자 관련 병역처분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성전환자 관련 병역처분 현황

(2022. 4. 30. 기준, 단위: 명)

구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여 → 남	전시근로역	15	46	54	59	30
남 → 여	병적 제적	8	5	5	5	6

2022. 4. 30. 기준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성별불일치 관련 처분현황은 성별불일치 13명, 양쪽 고환결손 3명이다. 성전환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이 정정되지 않은 성전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8년 성별불일치 현황은 '인격 및 행태장애, 성적 선호장애'를 포함하고 2021년부터 '양쪽 고환결손'은 병역면제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고 있는데, 질병, 사고, 수술 등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 수치이다. 2021년부터 검사규칙상 '성주체성장애'는 '성별불일치'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연도별 성별불일치 관련 병역처분 현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성별불일치 관련 병역처분 현황

(2022. 4. 30. 기준, 단위: 명)

구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성별불일치(전시근로역)		13	58	48	42	32
양쪽 고환결손	전시근로역	3	27	–	–	–
	병역면제	–	–	25	39	29

성별 미정정 성전환자의 병역처분 현황을 종합하면, 성별불일치로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다. 병역판정검사 전까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불일치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 사례가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성전환 여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정신과 상담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고 입대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시 문제

성전환자가 병사로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와 간부로 군 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의 문제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조금은 상이하게 문제될 수 있다. 먼저 성별불일치를 느끼고 있지만 성전환 수술이나 성별정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들이 있다. 이들은 병사 개인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현역복무 실태가 매우 다르다고 할 것이다. 적극적인 복무 의사가 있는 병사들은 지휘관과의 상담을 통해 샤워나 목욕 시간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생활상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전환자에 대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불일치로 인해 복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병사의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성전환자가 병영에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부대관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지휘관이나 간부의 행동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들은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성전환자로 인해 부대 내 성범죄 발생을 우려하거나 복무 부적응으로 다른 병사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전환자가 간부로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성전환 간부에 대한 일반적인 복무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성불쾌감을 가진 간부에 대한 상담, 의료지원, 인사관리 등에 대한 규정도 당연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휘관, 간부를 위한 업무지침뿐만 아니라 의료·법률·상담 전문인력도 부족하거나 없는 실정이다. 성전환자가 간부로 임관하고

자 하는 경우 「병역법」과 달리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명시적인 복무 제한 규정은 없으나 정신과나 비뇨기과적 사유로 인해 심신장애로 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대전지방법원 판례(2020구합104810)의 기준에 따르면 성전환 여성 간부에 대해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적 사유를 이유로 현역복무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부의 성전환 여부에 대해 업무수행 측면에서 남군과 여군 사이에 다른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여군들은 여군의 높은 임용경쟁률을 주장하면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한 여군에 대해 인사상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지만, 병이나 남자 간부들은 임용이나 진급과의 관련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영생활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표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3-7〉 성전환자 군 복무 시 병영생활 문제점

구분		병사	간부
성전환		개인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복무실태 상이, 지휘관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부재	
	남성 (FTM)		- 일과 중 개인 샤워, 화장실 등의 시설 부족 -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발생 가능
	여성 (MTF)	- 병영생활 중 개인 샤워, 화장실 등의 시설 문제 -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발생 가능	- 일과 중 개인 샤워, 화장실 등의 시설 부족 -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발생 가능 - 다른 여성 간부들의 거부감

4.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외국사례의 분석

가. 성소수자(LGBT)의 군 복무에 대한 정책적 단계

외국군의 성소수자 군 복무 정책은 포용, 허용, 관용, 배제, 박해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박해'는 성소수자의 복무를 금지하고 군기강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단계이다. '배제'는 성소수자를 적극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군 복무를 부정하는 단계이다. '관용'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성소수자임을 밝히지 않는 이상 군 복무를 부정하지는 않는(Don't ask don't tell) 정책단계이다. '허용'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만 성소수자의 복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 단계이다. 과거 미국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있어 다른 정책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양자 모두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마직막으로 '포용'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소수자임의 공개와 자긍심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4년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장병들이 성소수자를 동료로 상호 존경하도록 만드는 리더십이나 행동강령의 존재,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성소수자 군 복무의 공식적인 인정 여부,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제한 없는 인정, 외국 파견근무에서의 보호대책과 국제적 협력 분야를 국가별로 평가하였다. 성소수자 군인권지수를 조사한 전체 103개 조사국가 중 우리나라는 73위를 차지하였는데 조사결과는 <그림 3-2>와 같다.[29]

2019년 실시한 OECD 국가별 성소수자(LGBTI) 관련 입법 현황에서 캐나다는 성소수자의 평등한 보호를 위한 입법이 거의 90% 정도에 달했고, 포르투갈과 프랑스도 거의 80%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 터키 등과 비교할 때 1999년에 비해 성소수자 보호입법의 증가가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성소수자 보호에 필요한 입법이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30] 이러한 OECD 국가별 성소수자 관련 입법 현황의 비교는 <그림 3-3>과 같다.

---

29) The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2014). *LGBT Military Personnel: A Strategic Vision for Inclusion.* p. 58.

30) CDADI. (2022). *Thematic Report on Legal Gender Recognition in Europe*, p. 9.

LGBT MILITARY INDEX

1	New Zealand
2	Netherlands
2	United Kingdom
4	Sweden
5	Australia
6	Canada
7	Denmark
8	Belgium
9	Israel
10	France
10	Spain
12	Germany
13	Norway
14	Switzerland
15	Croatia
15	Uruguay
17	Argentina
17	Austria
17	Finland
20	Czech Republic
20	Portugal
20	South Africa
23	Brazil
24	Bolivia
25	Estonia
26	Albania
27	Ireland
28	Hungary
29	Cuba
29	Japan
31	Ecuador
32	Slovenia
33	Colombia
34	Luxembourg
35	Georgia
35	Slovakia
37	Chile
38	Malta
38	Romania
40	United States
41	Italy
41	Poland
43	Bosnia and Herzegovina
43	Bulgaria
43	Latvia
46	Lithuania
47	Mexico
48	Thailand
49	Serbia
50	Philippines
51	Peru
52	Ukraine
53	Vietnam
54	Cyprus
55	Greece
56	Nicaragua
57	Nepal
58	Rwanda
59	Republic of Congo
60	Belarus
60	Sierra Leone
62	China
62	Pakistan
64	DR Congo
65	Lebanon
66	Liberia
67	Indonesia
68	Armenia
69	Libya
70	Afghanistan
70	India
70	Qatar
73	South Korea
73	Russia
75	Namibia
76	Algeria
77	Azerbaijan
77	Turkey
79	Somalia
80	Morocco
81	Jamaica
82	Egypt
83	Tanzania
83	United Arab Emirates
83	Zambia
86	Bangladesh
87	Belize
87	Gambia
87	Sudan
90	Kazakhstan
90	Tunisia
92	Malaysia
93	Oman
94	Cameroon
94	Kenya
96	Botswana
97	Uganda
98	Saudi Arabia
99	Ghana
100	Zimbabwe
101	Syria
102	Iran
103	Nigeria

〈그림 3-2〉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별 군인권지수

〈그림 3-3〉 OECD 국가별 성소수자 관련 입법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군사 선진국은 대부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영향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군 복무 중 성전환까지 인정하고 있으며, 동양권에서 일본과 대만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도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해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어 군 복무를 부정하고 있으며, 멕시코도 군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의 군사선진국을 제외한 각 국가별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여부는 <표 3-8>과 같다.[31]

〈표 3-8〉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여부에 대한 국가별 현황

구분		국가 현황
인정	스웨덴	차별금지법에 의해 2014년부터 군 복무 가능
	스페인	2009년부터 성전환자 입대 및 복무 중 성전환 가능
	태국	제한적으로 인정하나 실제 복무 인원 확인 불가
	일본	국가공무원법 평등대우의 원칙에 의할 때 복무가 가능하고 소수자가 근무하고 있음
	대만	공식적인 근거는 없으나 부정하지 않음
부정	이란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역면제
	중국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입대 불가
	러시아	정신장애로 인식하고 면역
	터키	관련 규정은 없으나 사회적 분위기는 성전환자를 정신이상으로 간주
	멕시코	군기 저해를 이유로 복무 불가

31) 외국 국방무관의 무관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나. 이스라엘 군의 성전환자 군 복무

이스라엘은 1998년부터 공개적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원칙적으로 성전환을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인정하지 않으며 현재 120명의 성전환자가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32] 일부 성전환자는 성별불일치 이외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전역하는 사례도 당연히 존재한다. 2014년부터 성별정체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성전환자에 대한 지원은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지원하고 있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21세 이후에만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으며, 텔아비브에 있는 민간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1개월에 1명만 수술이 가능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이 다시 모여 이스라엘을 건국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소의 존재를 군도 인정하여 성전환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군에서도 보호하고 성전환자에 대한 일률적인 처리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만, 성전환자는 반드시 한 가지 성을 선택해야 하며, 논바이너리(non-binary)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스라엘군의 성전환 절차는 민간과 별도로 진행된다. 군은 징집 단계에서부터 성전환자의 권리와 성전환 절차에 대해 고지하며,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후 성불쾌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성전환을 인정하고 있는데, 성전환이나 불임수술이 성별정정의 요건이 아니다. 군의 성자문관(Gender Affairs Adviser) 부서에서 성전환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데, 정신과 전문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인사부서에서 복장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승인하며, 필요시 부대에 성전환자 관련 사항을 고지하기도 한다.

복무 중 성전환이 완료된 경우 성전환 군인에게 전환된 성의 대명사를 사용하게 하고 전환된 성별의 병영으로 이전하여 생활하게 된다. 화장실과 샤워시설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용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잠금장치를 제공한다. 사안에 따라 보직이나 부대 이동을 통해 지속적 복무를 보장하고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위한 의료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휘관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부여

32) 국외출장 중 이스라엘군 측에서 제시한 자료이다.

하고 있는데, 이는 지휘관이 부모처럼 부하를 돌보는 이스라엘군 문화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전환자 복무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병영, 샤워 등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성전환 수술 병원도 부족하여 성전환 수술을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이며, 특히 성전환 수술은 연령 제한이 있어 21세가 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성전환자와 함께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병사가 있을 수 있지만 다양성과 인권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의 성전환 절차는 <그림 3-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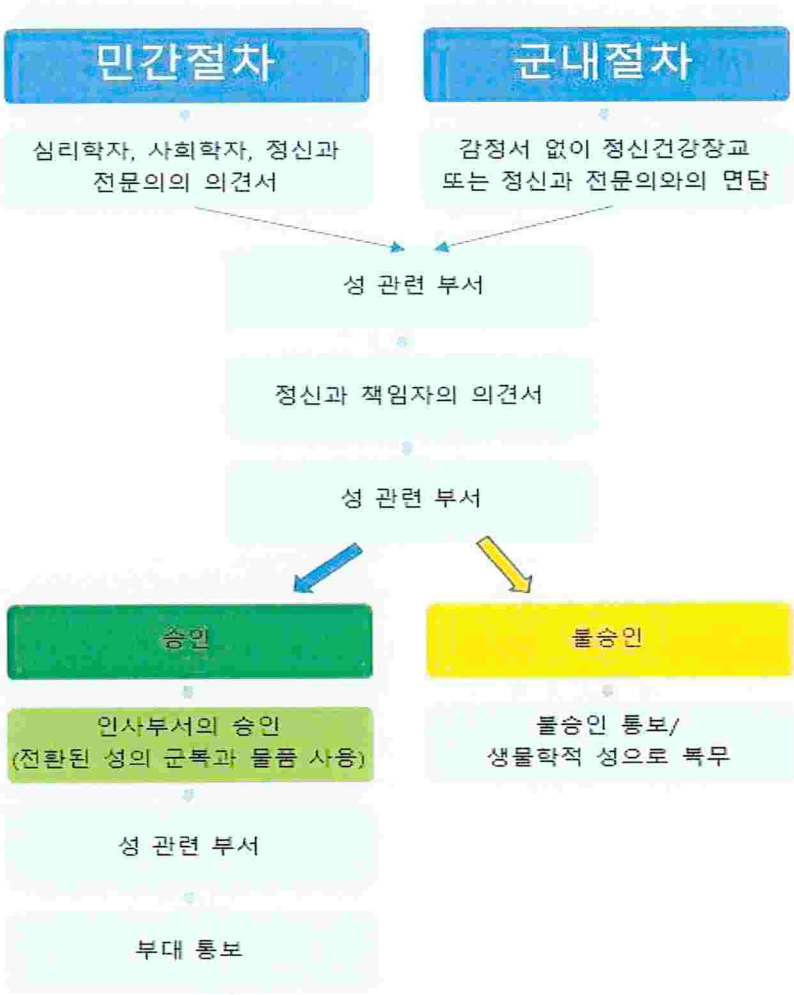

〈그림 3-4〉 이스라엘군의 성전환 절차

다. 영국군의 성전환자 군 복무

1998년 인권법이 유럽인권협약의 내용을 수용하고, 2002년 유럽인권재판소의 *Goodwin* 사건 판결 이후 성별인정법(2004)과 평등법(2010)에 의해 성전환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성전환의 법적 인정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폭행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성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와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성별정정을 할 수 있다. 성불쾌감을 느끼고 신청서를 신청한 날까지 2년 동안 다른 성으로 살았으며, 죽을 때까지 전환된 성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의 모병에 있어 성전환자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는다. 자신의 전환된 성으로 모병관이 입대절차를 진행하며, 성전환 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도 없다. 모병관이 성전환 관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법적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 성전환자는 지휘관이나 동료에 대해서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군 복무 중에도 성전환이 인정되는데, 지휘관과 군의관과의 상담을 통해 성전환이 이루어진다.

성전환 이후 동료들에게 상호 존중과 성실한 복무를 위해 관련 사실을 공지하는 절차가 존재한다. 성전환자와 함께 복무하는 장병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전환 군인에게 전환된 성과 결혼 여부에 따라 숙소 등을 제공하고 군복을 포함한 물품도 전환된 성에 맞게 제공한다. 성전환 기간 동안 해외파견 근무가 제외되나 성전환이 완료된 이후 자신의 역할에 맞는 체력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전환된 이름으로 기록이 변경되며, 이전의 상훈도 변경된 사항으로 재발급된다. 지휘관은 성전환자가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전환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포용성과 다양성에 관한 필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성전환 수술은 자비 또는 국가건강서비스부서(National Health Service)의 지원을 받아 가능한데, 호르몬 치료와 관련해서 첫 3년간은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이 되지만 그 이후는 매년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목소리, 가슴, 얼굴 성형은 별도로 지원되지 않지만, 이를 위해서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성기의 절제나 재건, 불임 수술은 성전환의 요건이 아니다. 민간의 기록변경은 성전환자 개인의 책임으로 본인이 신청하여 정정해야 한다. 성전환의 구체적 절차는 <그림 3-5>와 같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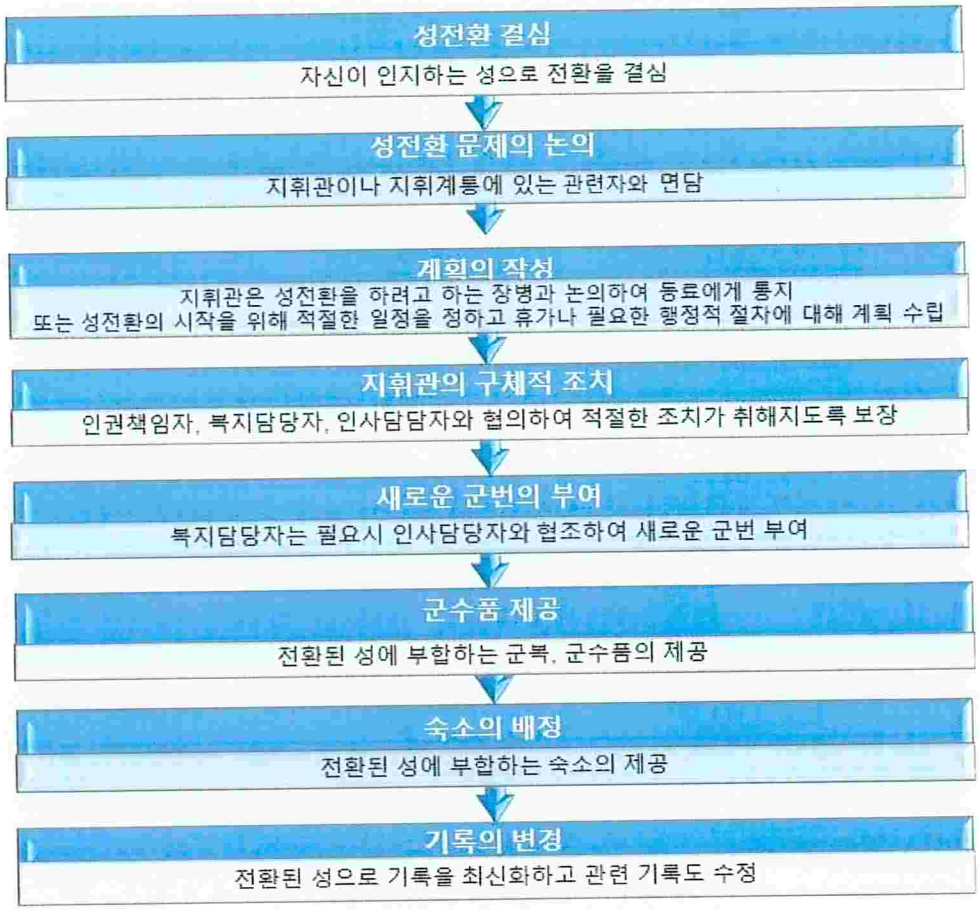

〈그림 3-5〉 영국군의 성전환 절차

라. 호주와 캐나다군의 성전환자 군 복무

호주는 2010년 성전환자의 입대 및 군 복무 금지 정책을 폐기하였으며, 2011년 국방부는 군 내 성전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군 또한 2013년 성전환자의 복무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였다. 국방건강매뉴얼(Defense Health Manual)에서 성전환자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휘관, 관리자, 장병들이 국방의료시스템

33) JSP(Joint Service Publication) 889 Policy for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Transgender Personnel in the Armed Forces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불쾌감을 가진 장병에 대해서는 세계트랜스젠더건강 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ransgender Health)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합동의무사령부(Joint Health Command)는 성불쾌감 치료를 위한 비용을 정부지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데(National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호주 트랜스젠더건강 전문가협회의 전문가는 성불쾌감이 있는 장병을 진료할 뿐만 아니라 군 의료관계자들도 지원하고 있다.

성전환 절차는 '진단, 치료, 지휘관과 동료 공지, 성전환 후 관리, 필요시 성전환 수술'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적 전환을 위해 호르몬 치료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은 군에서 지원하지만 성형수술은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는다. 성전환 기간 동안은 체력기준이 완화되지만 성전환 후 변경된 체력기준을 충족하여야 계속적인 복무가 가능하다. 호주군의 성전환 절차는 <그림 3-6>과 같다.[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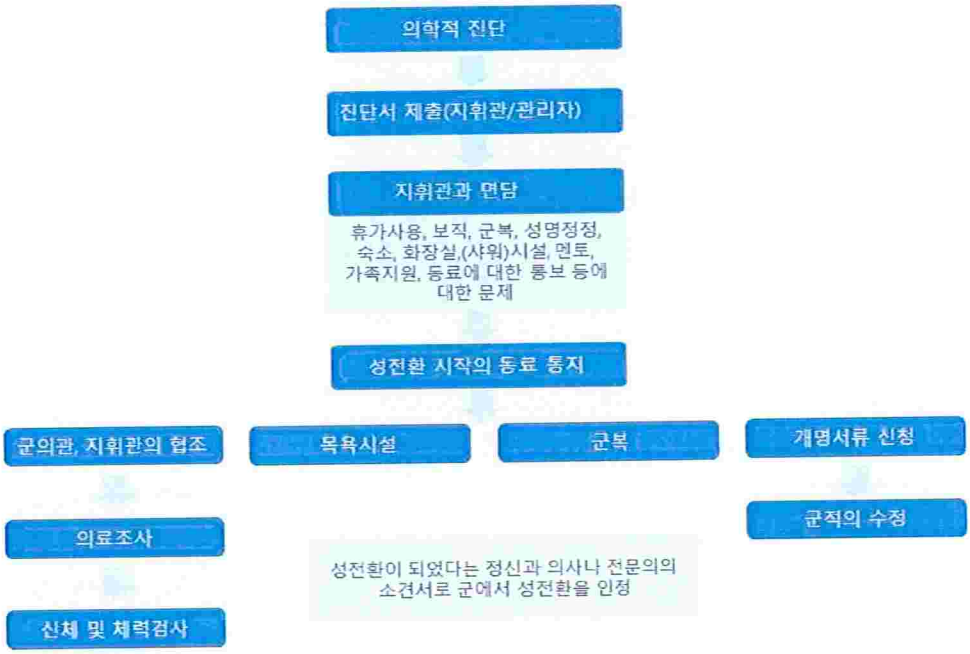

〈그림 3-6〉 호주군의 성전환 절차

34) Australian Air Force. Air Force Transgender and Gender Affirmation Guide를 정리한 것이다.

캐나다는 1960년에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으며, 1992년 성소수자에 대한 군 복무 금지정책을 폐지하였는데, 1998년 군은 성주체성장애를 인정하고 성전환 수술을 공개적으로 허용하였다. 1997년 하사 실비아 듀란드는 캐나다군 최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꾸었으며, 공개적으로 성을 바꾸고 세계에서 최초로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성전환자의 성전환 관련 지원과 친화적 공간 조성을 의무화하였으며, 2017년 성별정체성과 성별표현에 대한 차별금지를 인권법으로 제정하였다. 대략 265명의 성전환자가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 기준으로 군은 매년 1건의 성전환 수술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35] 국방행정지시(Defense Administrative Orders and Directives: DAOD)에 성별정체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법에 따라 군 내에서 성별정체성 및 성별표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적 행위는 상품·서비스·시설 지원 등의 제공, 진급, 훈련, 인사이동 등을 포함하며, 성전환의 절차는 대부분 영국, 호주와 유사하나 상훈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36]

마. 미국군의 성전환자 군 복무

미국은 2016년 이전까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있었다.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발령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0450, Security Requirements for Government Employment)은 동성애자와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연방기관의 공무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1963년부터 육군규정 40-501(Army Regulation: Standard of Medical Fitness)은 성적으로 논란이 되는 병력의 입대를 금지하였다. 1987년 *Leyland v. Orr* 사건(828 F.2d 584)에서 법원은 공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원고에 대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다리 절단과 같은 문제이므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시하였다. 2007년 육군규정에서는 성전환자에 대해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AR 40-151).[37] 이후 2012년 국방부 지시에서 군 지원

35) Okros, Alan, and Denise Scott. (2015). "Gender Identity in the Canadian Forces."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41, No. 2, p. 245.
36) 캐나다 국방무관의 무관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37) AR 40-501(2007)
3-35. Personality, psychosexual conditions, transsexual, gender identity … elsewhere

자는 성심리적 문제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DoDI 6130. 30).

2012년 이후 미정신의학회가 '성정체성장애'를 '성불쾌감'이라는 용어로 수정하고 예비역 장성 단체인 Palm Center에서도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정책에 반대하면서[38] 변화가 시작되었다. 2016년 오마바 정부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성적 차별로 보고, 군의관에 의해 성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였다. 국방장관 Ash Carter는 행정명령을 통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유능한 군인이 비자발적으로 분리되거나 전역되지 않는다고 공표하였다(Directive-Type Memo 16-005, Military Service of Transgender Service Members). 치료나 수술 후 18개월 동안 전환된 성으로 신체·정신상 문제가 없고, 복무에 필요한 신체·업무적 기준 충족 시 복무가 가능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오바마 정부 때의 성전환자 정책은 다시 수정되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에 성전환자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시키고, 성전환 수술절차와 관련된 비용지급 중지와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2019년 트럼프 정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3-9>와 같다(Directive-Type Memo 19-0004, Military Service by Transgender Persons and Persons with Gender Dysphoria).

〈표 3-9〉 트럼프 정부의 성전환자 군 복무 정책

면제된 개인	비면제된 개인	
	성불쾌감 진단 전력이 있는 경우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
2019. 3. 12. 이전에 복무 인정	36개월 동안 생물학적 성으로 안정적	결격 사유
성전환 치료 완료	의학적으로 성전환 불필요	
18개월 안정적	생물학적 성에 따른 복무기준 충족	

classified

a. A history of, or current manifestations of, personality disorder, … psychosexual conditions, transsexual, gender identity disorder to include major abnormalities or defects of the genitalia such as change of sex or a current attempt to change sex … from surgical correction of these conditions render an individual administratively unfit.

b. These conditions render an individual administratively unfit rather than unfit because of physical illness or medical disability.

38) Palm Center. (2015). "Open Service by Transgender Members of Israel Defense Forces."

트럼프 정부의 성전환자 복무 금지 정책에 반대하여 Jane Doe, Stone, Karnoski, Stockman 등이 성전환자 군 복무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Mattis 국방장관의 제안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령하였다.[39]

가처분 소송에서 군의 준비태세, 성을 기준으로 한 병영생활 문제, 의료비용 등에 대해 군의 재량권이 인정되어 국방부가 승소하였다. 가처분 사건에서 판결의 주요한 논거를 보면 먼저, Carter 정책의 경우 성전환을 한 경우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Mattis의 정책이 성전환자의 복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의 준비태세 유지문제, 성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병영생활 측면에서의 문제, 성전환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용 문제에 대해 군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정책이므로 하급심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Mattis의 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의학적 상태와 관련된 치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절차의 보장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효력정지 처분의 범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Mattis 정책의 전체적인 효력을 금지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관 5:4의 결정).[40]

2020년 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는 않았지만 2명의 동성애자와 1명의 성전환자를 해고한 Bostock v. Clay County 사건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은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140 S. Ct. 1731). 2021년 *Grimm v. Gloucester County School Board* 사건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성전환 남학생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교육위원회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972 F.3d 586, 4th Cir. 2020)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한 것은 <표 3-10>과 같다.

---

39)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regarding Military Service by Transgender Individuals(2018. 3. 23.).

40) https://www.supremecourt.gov/DocketPDF/18/18-676/77293/20181221111144859_Trump%20v.%20Karnoski%20brief.pdf (2022. 12. 30. 최종방문).

〈표 3-10〉 미국 연방대법원의 성전환자 관련 판결

사건명 (연도)	구체적 판결 내용
Trump v. Karnoski *(2019년)*	-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 제기 - 군의 준비태세, 성을 기준으로 한 병영생활 문제, 의료비용 등 군의 재량권 인정(5:4)
Bostock v. Clay County *(2020년)*	- 2명은 동성애, 1명은 성전환을 이유로 해고 - 시민권리법상 성에 의한 차별인지가 문제 - 다수의견은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해고는 성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7:2)
Grimm v. Gloucester County School Board *(2021년)*	- 성전환 남학생의 남자화장실 사용금지는 위법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성전환자 복무 정책은 다시 변화를 맞게 되는데, 2021년 군은 복무기준에 적합하다면 차별 없이 성전환자 군 복무를 인정하였다. 2021. 1. 25.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88)[41]과 군 복무 중 성전환 관련 국방부 지시(DODI 1300.28 In-Service Transition for Transgender Service Members), 군 신체검사 관련 국방부 지시(DODI 6130.03 Medical Standard for Military Service: Appointment, Enlistment, or Induction)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성전환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기본적으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군에서의 비자발적 분리나 전역을 금지하며 입대나 계속 복무를 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부당한 처우나 차별행위도 금지된다. 성별정체성은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성전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자료공개는 국방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성전환 장병은 군복, 용모, 체성분검사, 체력검증, 약물검사 등에 있어 다른 장병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성별은 DEERS[42]상의 표기를 기준으로 하며, 성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성

41)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2021. 1. 20.
42) 국방적격등록보고체계(Defense Enrollment Eligibility Reporting System: DEERS)

전환 기간 동안 제공되는 치료와 조치는 다른 치료 또는 의료적 조치와 동일하며, 파견근무도 성전환 기간이 아니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휘관은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고려하여 임무와 준비태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전환 시 관련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개별 성전환은 사례별로 유연하게 진행되며 성전환 수술은 성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성전환의 절차를 보면 의료전문가로부터 성불쾌감의 진단과 성전환 조치 계획을 접수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성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 보고 시 성전환 필요 예상기간과 계획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전환 후 추가적인 치료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동일하다. 지휘관은 장병의 요청에 대해 늦어도 90일 전에 서면으로 장병과 의료전문가에게 답변을 하여야 하며,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30일 이내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지휘관은 성전환 종료 후 의료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DEERS상의 성별 표기 정정을 승인한다. 특이한 것은 성전환 이후 성불쾌감이 해소되지 않은 장병은 이전 성별로 재전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 군에는 협조반이 있어서 의료, 정신건강, 법률, 인사관리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수행한다. 호르몬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 18개월 동안 안정적이거나 더 이상 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다면 성전환자는 신체검사를 통과하게 된다. 미군의 성전환자 관련 정책의 일반적 사항은 <표 3-11>과 같다.

〈표 3-11〉 미군의 성전환자 관련 정책

구분	내용
기본정책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 비자발적으로 군에서 분리나 전역 금지 - 입대나 계속 복무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 - 부당한 처우나 차별행위 금지 ※ 성별정체성은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성전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자료 공개는 국방부의 승인 필요
성전환 일반사항	- 성전환 장병은 다른 장병과 동일 기준 적용 (군복, 용모, 체성분검사, 체력검증, 약물검사 등) - 성별은 DEERS[43]상의 표기를 기준 - 성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의 진단 필요 - 성전환 기간 동안 제공되는 치료와 조치는 다른 치료 또는 의료적 조치와 동일 - 파견근무도 성전환 기간이 아니라면 동일한 기준 적용 - 지휘관은 의료전문가의 자문을 고려하여 임무와 준비태세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 조치 - 성전환 시 관련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개별 성전환은 사례별로 유연하게 진행(성전환 수술 필수×)
성전환의 절차	- 의료전문가로부터 성불쾌감의 진단과 성전환 조치계획을 접수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성전환을 요청 (보고 시 성전환 필요 예상기간과 계획 내용을 포함) - 성전환 후 추가적인 치료나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동일 - 지휘관은 장병의 요청에 대해 늦어도 90일 전에 서면으로 장병과 의료전문가에게 답변(요건 불충분 시 30일 이내 보완 지시) - 지휘관은 성전환 종료 후 의료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DEERS상 성별 표기 정정 승인 - 성전환 이후 성불쾌감이 해소되지 않은 장병은 이전 성별로 재전환도 가능
성전환자 지원 기관	군별중앙협조반(Service Central Coordination Cell: SCCC) ☞ 의료, 정신건강, 법률, 인사관리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신체검사	호르몬 치료의 경력이 있는 경우 18개월 동안 안정적 또는 더 이상 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 (DODI 6130.03 5. 24. t / 5. 28. t)

43) 국방적격등록보고체계(Defense Enrollment Eligibility Reporting System: DEERS)

바. 기타 외국군의 성전환자 군 복무[44)]

독일은 1969년 형법상 동성애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폐지되고 1980년 "성전환법(Transsexuellengesetz, 1980. 9. 10. 제정, 2017. 7. 20. 최근 개정)" 제정에 따라 사회·심리학적 배경에 따른 성별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군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도는 다른 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성전환법에 의하면 1) 성정체성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출생신고상 기록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에 소속감을 느끼며, 최소 3년 이상 변화된 성정체성에 따라 살도록 압박이 있을 경우, 2) 높은 확률로 다른 성별에 대한 자신의 지향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경우, 3) 지속적으로 생식능력이 없을 경우, 4) 자신의 외적인 성별의 특징을 변경하는 수술을 시행하여, 이를 통해 다른 성별의 외형에 명확히 근접했을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하고 있다(제8조). 하지만 이 조항은 2011년 독일연방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어 현재는 성전환 수술이나 생식능력의 제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성별정정 절차에 있어 해당 법원은 "가족 및 자발적 재판권 행사 관련 절차에 관한 법(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중 2명의 서로 독립된 감정인이 신청인의 교육과정 및 직업활동 기간 중 성전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성별정체성이 높은 확률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하며, 법원은 신청인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한다.

군에서도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는데, 현재 복무인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여겨 집계도 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전체인구의 0.3~0.5%가 성전환자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독일연방군에도 이를 기준으로 최대 1,200명의 성전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일연방군은 군 내 다양성 관리의 대표사례 중 하나로 성전환 수술(MTF) 후 계속 복무 중인 현역중령 Anastasia Biefang을 소개한 바 있는데, 정보화기술대대장을 거쳐 현재 사이버군사령부 작전훈련계획과장으로 복무 중이다.[45)] 아울러 2021년 독

---

44) 각국 국방무관의 무관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45) https://www.bundeswehr.de/de/aktuelles/schwerpunkte/65-jahre-bundeswehr/ein-orientierungspunkt-oberstleutnant-anastasia-biefang-3903920 (2022. 12. 30. 최종방문).

일 일간지 FAZ는 현역대령 Elisabeth Landsteiner에 대한 심층기사를 보도했는데, 2012년 중령 복무 당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공개하고 2013년 법적 절차를 거쳐 이름 및 성별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육군교육사령부 양성평등특명관 임무를 수행 중이다.[46)]

프랑스는 2016. 11. 18. 민법(Code Civile)에 '호적 내 성별 기입 내용 변경' 항목을 신설하고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법제화하였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국민성 때문에 개인의 성향, 종교 등 개인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의 복무에 대한 통계자료는 공개된 바 없다. 다만 언론에 노출된 사례 및 배포 자료에 비춰 동성애자 및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포함하여 다수의 성소수자가 군 내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별도의 제도는 없으나 국방부 산하 행정총국에서 2018년 '국방부 내 성전환'이라는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총 4쪽의 자료에는 성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성전환 관련 단어, 개념 정의, 행정 등 성전환 관련 진행 절차 및 지원 내용을 간략하게 담고 있다. 성전환은 사령부 보고 → 의료검진·복무 태도 평가 → 소속부대에 평가 정보 전달 → 기록상 이름 변경 → 사령부에서 변경된 성명 반영(명칭, 행정서류 변경, 군복, 보건 및 관련 정보 처리) → 기록상 기재된 성별 변경 → 사령부에서 성별 변경 반영(행정서류 변경, 관련 체력기준 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프랑스 하원에서 2017. 10. Jacques Marilossian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국방장관에게 군 내 성전환자 및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처우나 의료, 심리적 지원 조치 운용 여부 및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성전환자와 관련해서 군에 지원하는 것은 국방법전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허용된다고 보고하였다.

각 개인의 직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프랑스 군인들은 복무 기간 동안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의무국은 장병들이 최고의 의료, 심리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주시한다고 하였다. 일반 프랑스인들처럼 군인들도 직장 내 의료지원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갖는데 이러한 지원은 군 의료센터, 군 병원 또는 민간 시설에서

---

46) https://www.faz.net/aktuell/gesellschaft/menschen/transgender-bei-der-bundeswehr-vom-soldat-zur-soldatin-17543960.html?premium (2022. 12. 30. 최종방문).

진행될 수 있다. 성전환 군인 역시 의무국의 심리상담사, 의료진 또는 각 군의 군의관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성전환 인원들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성전환 후 국방부 내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절차들에 관하여 안내 자료를 작성하였다. 동 자료에는 신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보건 및 의료 진단 절차 및 고용주가 처리해야 할 절차를 포함하여 필요시 중재나 소송에 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2020년 성소수자 잡지 'Tetu'는 군 내 동성애자(성전환자 포함)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동료들의 모욕, 괴롭힘에 매우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진급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2014. 7. 1. 시행된 트랜스젠더법(Transgenderwet)에 의해 '누구든지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성별(gender)이 아닌 다른 성별에 소속되고자 하는 신념·확신을 가졌을 경우' 공식적인 성별정정이 가능하다. 의학적 요건 또는 판사의 개입이 요구되지 않으나, 전문가 소견서 제출이 요구된다. 2014년까지 30년간 법적 성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성전환 및 불임 수술을 요구해왔으나 트랜스젠더법 도입 이후 관련 내용은 삭제되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 국방부 내 트랜스젠더 인원은 18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전환을 희망하는 인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고 지휘관 및 관리자의 조율로 근무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성소수자(LGBTI)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차별금지, 신체 건강 관련 자유 및 자기결정권 존중, 신분 및 법적 인정에 대한 사생활 보호,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대중 인식 개선을 추진하였다. 2018. 6. 25. 법적으로 부여받은 성별과는 다른 성별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성소수자에 대해 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도입하였다(해당 법 제정 이후 이름 및 성별 변경 시 의료소견서·증명서 등 불필요).

벨기에는 2017년부터 행정절차를 통해 전자신분증상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며, 의료적 수술 또는 신체적 전환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전자신분증에 표기된 성별을 바탕으로 입대절차를 진행하고, 입대 시 성전환자로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군 내 보관자료나 기록은 없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 제27조에 평등취급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자위대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의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은 없다. 2017. 4.에 작성한 "여성자위관 활약 추진 이니셔

티브"에서 '전 부대원은 성별에 의해 차별되는 것이 없고, 오로지 본인의 의욕과 능력, 적성에 근거하여 적재적소에 임무 배치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위대 입대 조건 중 신체검사 항목으로 '개복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과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이 없을 것'이 규정되어 있다. 성전환을 위해 개복수술을 하는 경우 입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자위대에 입대하고 나서 성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어 성전환자가 자위대에서 소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육상자위대 대원이 전역한 사례도 있다. 현재 자위대 내 성전환자에 대한 특별한 법령이나 규정은 없어 여러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지만, 개인적 성향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만도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성전환자에 대해 신분증과 출생증명서상 성별 변경 기재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 성전환 수술은 정신과 의사 2명의 승인하에 실시되며,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호정기관(戶政機關)에서 성별정정을 완료한 자는 성별정정이 반영된 호적등본을 각 직할시·현(시)정부 징병검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신체등급 판정을 받는다.

반대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는 소멸한다. 호정기관에 성별 전환 등록을 완료한 자는 더 이상 의무복무 신분이 아니므로 병역의무가 없으며, 신체검사와 재검사 절차가 면제된다. 매년 병역의무 대상자의 0.025%인 약 50명 정도가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다. 성적지향에 따른 동성애자의 군 복무는 1994년 이래 금지되지는 않았으나, 공식적인 인정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다. 성전환자 복무에 관한 규정 및 제도 역시 동성애자의 군 입대 사례와 같이 공식적인 인정에 관련한 법적 근거는 없다. 만약 여성이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병역면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병역신체검사 통지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 남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병역면제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이 상존하고 있다.

사. 외국군의 성전환자 군 복무 정책의 함의

유럽과 대부분의 군사 선진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2000년 전후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국가가 증가하였다. 미국도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다. 군 복무의 요건은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생식기능의 제거나 성전환 수술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국가가 다수이다. 전환된 성의 군인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체력이나 업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건이며, 성전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군 또는 외부 민간의료 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성전환에 필요한 의료비용은 군, 정부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수술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며, 영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성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성전환을 위한 충분한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성전환 이후 전환된 성으로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민간의 법적 성별정정이 반드시 군 내 성전환의 요건인 것은 아니며, 성전환 이전의 훈장이나 상훈 등도 국가별로 상이하나 전환된 성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Ⅳ.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관련 영향요소 분석

1. 군사적 측면에서 문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로 인해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전투준비태세와 교육훈련, 부대단결이나 사기, 부대시설과 의료지원, 인력관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투준비태세와 교육훈련 분야에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경우 6개월 이상의 회복기간 소요로 복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성의 경우 자궁적출과 난소제거 수술 등에 1개월 이상의 회복기간과 유방제거 및 남성 생식기 재건 수술을 위해서도 각 1개월 이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남성의 경우도 생식기나 전립선을 제거하고 여성 생식기 재건 수술을 받는다면 동일한 기간이 소요된다. 신체적 활동이 심한 훈련이나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보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성전환 수술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로 진행되어 하나의 수술이 종료되고 상당한 회복기간을 가진 후에 다른 부위의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외부 성기 성형까지 포함한다면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의 작전 대비 측면에서의 영향은 외국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성전환 여성의 유방 성형 시 4~6주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고 60일 이상의 의학적 장애가 발생하여 75일 동안 파견이 어렵다고 보았다. 생식기 수술 시는 8주 이상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며 90일 이상의 의학적 장애와 135일 동안 파견이 어렵다고 보았다. 성전환 남성의 경우 가슴 수술 시 4~6주 육체적 활동이 제한되며, 60일 이상의 의학적 장애와 75일 동안 파견이 제한된다고 보았다. 자궁적출의 경우는 90일 이상의 의학적 장애와 111일 동안 파견이 어렵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근무가 제한되는 구체적 기간은 <표 4-1>과 같다.[47]

---

47) Schaefer, Aqgnes Gereben, et al. (2016).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 Rand Corporation, p. 41.

〈표 4-1〉 성전환 관련 전투준비태세의 제한 사항

성전환 형태와 치료	회복시간	휴가 및 파견 영향	파견 불가 예상일
성전환 여성(MTF)			
호르몬 치료	불필요	영향 없음	–
유방성형	1주 근무 불가, 4~6 제한적 육체 활동	14일 이상 병가, 60일 이상 의학적 장애	75
생식기 수술 (고환제거, 질성형)	4~6 근무 불가, 8주 이상 제한적 육체 활동	45일 이상 병가, 90일 이상 의학적 장애	135
성전환 남성(FTM)			
호르몬 치료	불필요	영향 없음	–
가슴수술	1주 근무 불가, 4~6 제한적 육체 활동	14일 이상 병가, 60일 이상 의학적 장애	75
자궁적출	2주 근무 불가, 4~8주 제한적 육체 활동	21일 이상 병가, 90일 이상 의학적 장애	111
생식기 수술 (음경 성형)	2~4주 근무 불가, 4~6주 제한적 육체 활동	21일 이상 병가, 60일 이상 의학적 장애	81

부대단결이나 사기측면에서 성전환자의 복무로 인해 부대 내 성범죄가 발생하고, 성전환자의 복무 부적응으로 인해 부대단결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성전환자와 함께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장병이 있는 경우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부대관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부대시설과 의료지원 분야에서 성전환자를 위한 목욕, 화장실, 숙소 등의 추가적인 시설소요가 발생한다. 병사의 경우 목욕시설이나 화장실, 생활관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간부의 경우는 영외 숙소가 지원되므로 일과 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과 중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민간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지 않는 사항을 군에서 의료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인력확보 측면에서 보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의 확보나 유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성전환자는 성별불일치의 문제가 있었

을 뿐 군인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복무 중 능력이 검증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 우수 인력 유지가 가능하고 초임 간부 획득·양성을 위한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성전환자 현역복무 시 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요소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표 4-2〉 성전환자 현역복무 시 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 요소

구분	영향 요소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로 인한 치료기간 필요 - 치료 기간 중 해외파견이나 비상작전 투입 불가 - 신체적 활동이 심한 교육훈련 참가 곤란 - 강한 체력이 요구되는 일부 직위 보직 불가
부대단결 사기	- 성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 - 성전환자의 부대 부적응에 대한 우려 -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적 언행이나 부당한 행위 발생 우려 - 동료 중 함께 복무를 거부하는 장병 발생 우려 - 성전환자에 대한 신뢰 부족 - 성전환자에 대한 배려 시 상대적 박탈감 발생 가능
부대시설 의료지원	- 샤워, 화장실, 숙소 등의 추가적 시설소요 발생 - 성전환자에 대한 추가적 의료지원 소요 발생
인력 획득·양성·관리	- 인력획득과 양성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 - 능력이 검증된 자원의 획득을 통해 신규 인력획득 및 양성을 위한 시간·예산의 절감 효과 - 성전환자가 부대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부대관리 부담 증가 우려

2. 장병 및 국민 인식 측면에서의 문제

가. 성전환자에 대한 장병 면담조사

각 군의 사단급 부대 장병, 각 군 본부의 간부, 육군사관학교 생도 등을 대상으

로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성전환의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장병들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인권 보호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장병은 성전환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존재하였다. 성별정체성은 살아가면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이성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성전환자의 인권과 군 복무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대부분의 장병은 성전환자에 대해 개인의 결정은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시설, 복지, 의료, 인사 측면에서 군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생활여건이나 시설 등 성전환자의 복무여건이 먼저 충족된 상태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특히 해군 함정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성전환자와 함께 복무하는 다른 장병의 인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성전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함께 복무를 기피하는 장병과의 문제도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성전환자가 동료로 되는 경우 감정적으로는 이상할 수 있지만 함께 복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특히, 병사들의 경우 간부나 지휘관이 성전환자라 하더라도 복무에 있어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성전환자와의 복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하면 성전환자를 같은 생활관이나 부대에서 복무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 민간에서 먼저 성전환자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이후 군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는데, 성전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군 복무를 허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소수이지만 있었다. 반면,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가능하면 입대하기 전에 성전환 수술을 마친 경우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장기적으로 군에서 준비가 된다면 복무 중 성전환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한다면 입대 전이나 복무 중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장병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종합한 내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장병 면담조사 결과 내용

구 분	장병 의견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	- 대부분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존중 - 소수이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장병도 존재
성전환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	- 성전환자의 개인적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군의 특수성도 동시에 고려 필요 - 함께 복무할 수는 있지만 심리적 거부감이 존재할 것 같다고 응답한 장병이 다수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시기	- 입대 전에 성전환 수술을 마친 경우만 인정(다수) -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한다면 입대 전이든 복무 중이든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존재(소수)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위한 전제조건	-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외형적으로 전환된 성의 다른 장병과 최대한 유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 민간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된 이후 군에서의 복무도 인정하자는 의견도 존재 - 성전환자의 복무를 위한 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복무 허용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존재 -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소수)

나. 성전환자에 대한 장병 설문조사

2022. 7. 25. ~ 8. 12.까지 간부 1,575명, 병 3,956명, 전체 5,531명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전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에 대해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전환자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있는 인원은 간부 10%, 병 8%로 대부분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간부 89%, 병 75%는 성전환자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성별불일치는 있지만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하였다. 전 계급에서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간부 74.7%, 병 52.1%).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4>, <그림 4-1>과 같다.

〈표 4-4〉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없는 경우)

구분		① 현역복무 제한	② 현역복무 허용
간부	영관급	83.0%	17.0%
	위관급	72.1%	27.9%
	준·부사관급	74.1%	25.9%
	소계	74.7%	25.3%
병		52.1%	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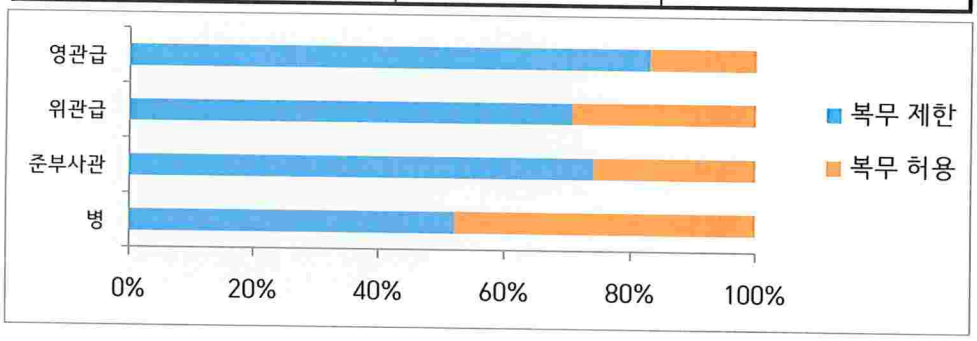

〈그림 4-1〉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없는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부정 인식이 더욱 높았다(간부 77.9%, 병 58.2%). 다만, 간부에 비해 병이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 다소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병들이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무에 지장이 있는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5>, <그림 4-2>와 같다.

〈표 4-5〉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있는 경우)

구분		① 현역복무 제한	② 현역복무 허용
간부	영관급	83.0%	17.0%
	위관급	76.2%	23.8%
	준·부사관급	77.6%	22.4%
	소계	77.9%	22.1%
병		58.2%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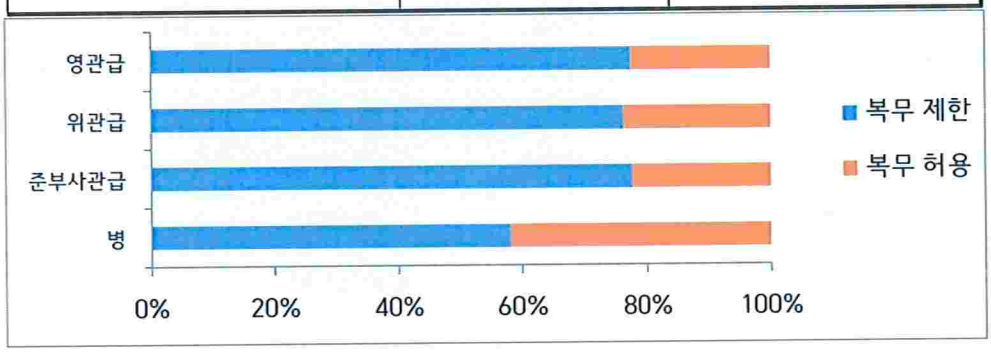

〈그림 4-2〉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복무 지장이 있는 경우)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서는 간부는 35.4%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병은 48.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간부보다 높은 긍정적 비율을 나타내었다. 위관급(43.6%) 및 준·부사관급(49%) 간부보다 영관급 장교(60.7%)가 현역복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대령 70%, 중령 64.2%, 소령 55.8%와 같이 상위 계급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병은 30%만이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를 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최근 MZ세대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부 15.7%, 병 21.8%의 적지 않은 인원은 실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6>, <그림 4-3>과 같다.

〈표 4-6〉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

구분			① 매우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
성전환 남성의 현역복무	간부	영관급	8.5%	21.4%	25.0%	35.7%	9.4%
		위관급	13.4%	25.9%	16.9%	26.7%	17.1%
		준·부사관급	14.3%	20.2%	17.9%	31.1%	16.5%
		소계	13.1%	22.2%	18.6%	30.3%	15.7%
	병		27.2%	21.0%	15.0%	15.0%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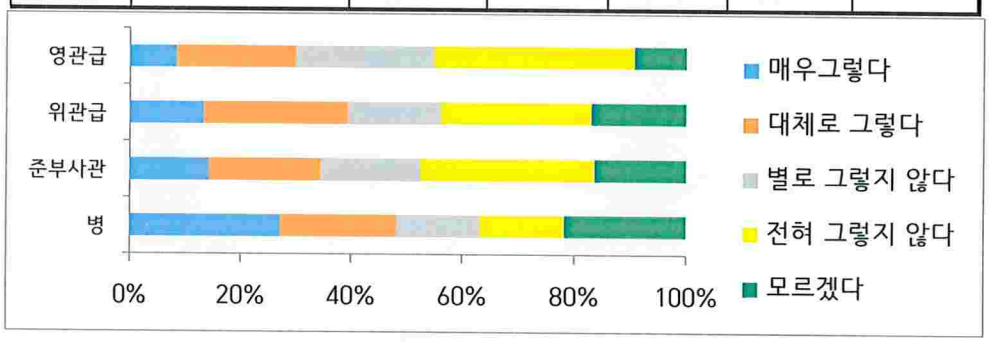

〈그림 4-3〉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인식

병은 성전환자 현역복무 허용 이유를 병력 보충(33.1%), 기본권 보장(32%), 능력 중시(24.9%), 긍정적 영향(10.1%) 순으로 응답한 반면, 간부의 성전환자 현역복무 허용 이유는 기본권 보장(41.8%), 능력 중시(32%), 병력 보충(17.2%), 긍정적 영향(9%) 순으로 나타났다.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이유에 대해 간부와 병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상이하였는데, 간부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병은 병력 보충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성전환자의 간부 복무에 대해서 간부는 33.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반면, 병은 42.5%로 간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간부와 병사 모두 성전환 남성의 현역복무보다 간부의 현역복무를 좀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7>, <그림 4-4>와 같다.

〈표 4-7〉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인식

구분			① 매우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	간부	영관급	6.7%	21.0%	23.7%	39.3%	9.4%
		위관급	13.6%	23.4%	15.5%	30.1%	17.5%
		준·부사관급	11.9%	21.7%	18.5%	31.5%	16.4%
		소계	11.7%	22.2%	18.3%	32.1%	15.7%
	병		19.1%	23.4%	14.6%	15.3%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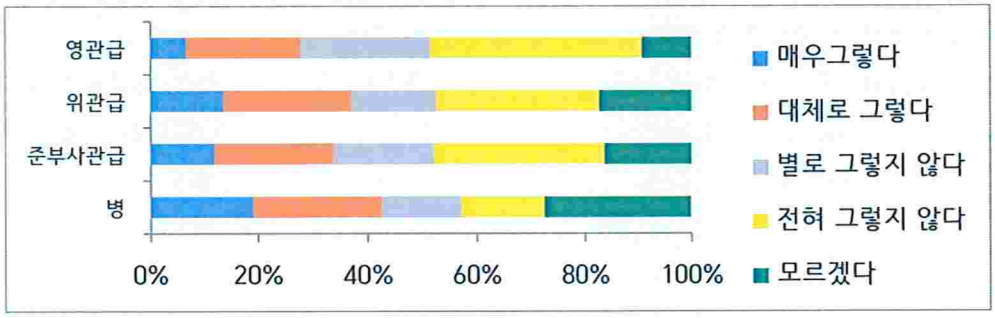

〈그림 4-4〉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인식

성전환자의 복무 허용 요건에 있어 간부는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정정의 동시 완료자(64.5%), 의료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되는 자(21.8%), 법적 성별정정이 완료된 수술 미완료자(13.7%)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병은 성전환 수술과 법적 정정 동시 완료자(43.5%), 의학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되는자(37.5%), 법적 정정이 완료된 수술 미완료자(1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체적 외형의 변화와 법적 성별정정을 군 복무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나 37.5%가 의료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된 경우도 복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복무 허용 이유에 대해서 간부는 성전환 남성의 현역복무에서와 동일하게, 병은 상이하게 기본권 보장이라는 명분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병의 성전환자 간부 복무 허용 이유는 기본권 보장(47.6%), 능력 중시(24.2%), 병력 보충(22.7%), 긍정적 영향(5.5%) 순으로 나타났다.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를 허용한다고 할 경우 성전환 완료 시기는 장병 대부분

이 병역 검사 전에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성전환자가 간부로 복무하기 위해서는 병역 검사 전에 성전환 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간부 47.1%, 병 50%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간부 30.8%, 병 28.6%는 입대 전에, 간부 22.1%, 병 21.4%는 복무 중 성전환을 완료해도 무관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장병의 80% 정도가 복무 중 성전환의 인정보다는 입대 전에 성전환을 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전환자가 상관, 동료, 하급자일 경우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는 신분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하였다. 상관의 성전환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있어 영향은 간부(30.9%)와 병(29%) 모두 크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으나, 동료나 부하의 성전환에 대해서는 간부(39.4%)와 병(35.1%) 모두 그 영향력이 상승하였다. 간부 17%, 병사 29%의 상당수 인원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간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보다 다소 우세하였는데, 20% 내외로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보류한 응답도 있었다.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결과를 보면 부대 단합과 단결(39.9%), 군기강 확립(34.5%), 부대사기(32.6%), 전투준비태세 유지(29%), 교육훈련(30%)보다 행정업무 수행 분야(22.5%)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병은 잘 모르겠다는 34%의 응답을 제외하고, 부대 단합과 단결(30.5%), 군기강 확립(27.1%), 부대사기(26.2%), 전투준비태세 유지(24.2%), 교육훈련(25%), 행정업무 수행 분야(23.2%)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간부보다 더욱 낮았다.

성 관련 사고 예방 분야는 간부의 경우 영향이 있음 39.6%, 영향이 없음 39.2%, 판단 보류 21.2%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병은 성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영향이 없다(34.2%)는 의견이 영향이 있다는 의견(30.9%)보다 높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35%를 차지하여 군 조직 내 성전환자의 복무사례를 경험하지 못해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추측된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림 4-5>, <그림 4-6>, <표 4-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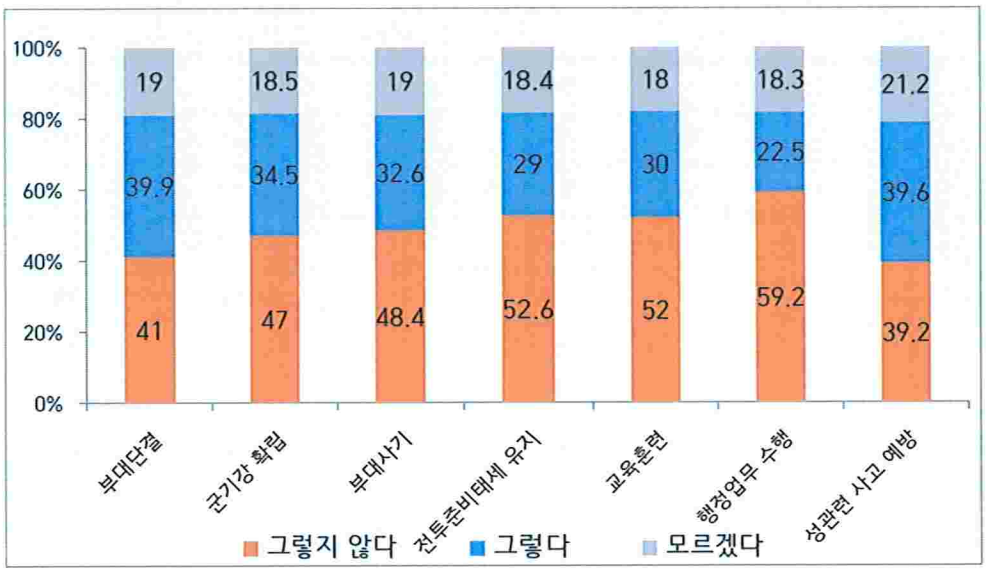

〈그림 4-5〉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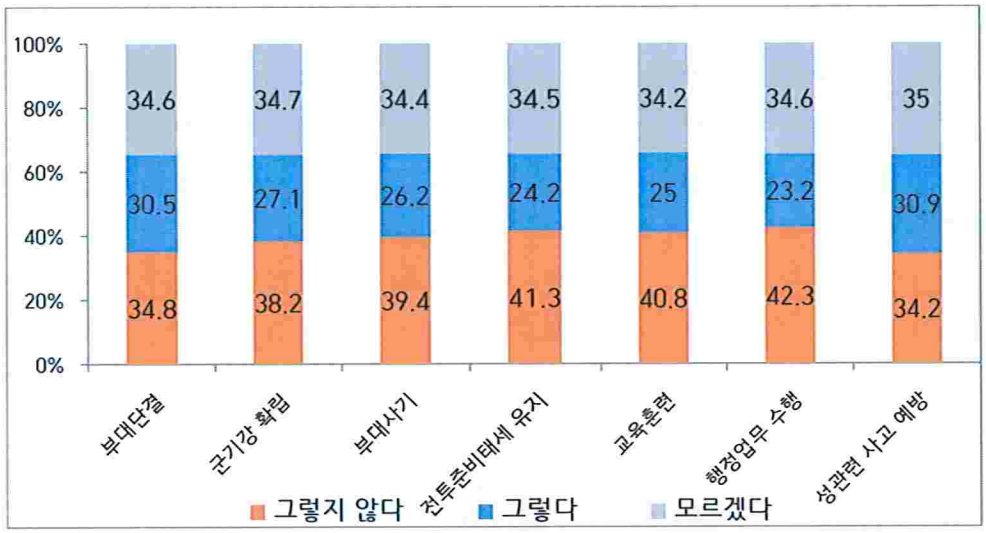

〈그림 4-6〉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병)

〈표 4-8〉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

구분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모르겠다
군에 미치는 영향	부대단결	간부	39.9%	41.0%	19.0%
		병	30.5%	34.8%	34.6%
	군기강 확립	간부	34.5%	47.0%	18.5%
		병	27.1%	38.2%	34.7%
	부대사기	간부	32.6%	48.4%	19.0%
		병	26.2%	39.4%	34.4%
	전투준비태세 유지	간부	29.0%	52.6%	18.4%
		병	24.2%	41.3%	34.5%
	교육훈련	간부	30.0%	52.0%	18.0%
		병	25.0%	40.8%	34.2%
	행정업무 수행	간부	22.5%	59.2%	18.3%
		병	23.2%	42.3%	34.6%
	성 관련 사고예방	간부	39.6%	39.2%	21.2%
		병	30.9%	34.2%	35.0%

전체 설문응답자 중에서 성전환자나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성별의 기재에 있어 일부 오류가 있지만 성별정체성이 다른 장병들이 일부 존재하였다. 남군 간부 중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남성, 성전환 여성과 여군 간부 중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여성이 있었다. 간부의 경우 남군 중 성전환 남성이나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여성의 일부 응답은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남성, 성전환 여성으로 응답한 상당한 수의 병들은 논바이너리 또는 성전환 여성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의 경우도 성전환 남성이나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여성의 일부 응답은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장병 설문대상자 중 성별불일치에 대한 추가적 답변 결과는 <표 4-9>, <그림 4-7>과 같다.

〈표 4-9〉 성별불일치 관련 추가적 답변 결과(장병)

(단위: 명)

구분	① 성전환 남성	② 성전환 여성	③ 비정체화된 출생 남성	④ 비정체화된 출생 여성
간부	"공 란"			
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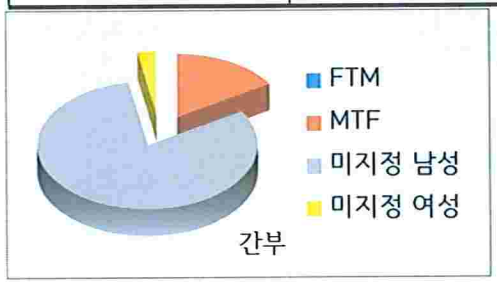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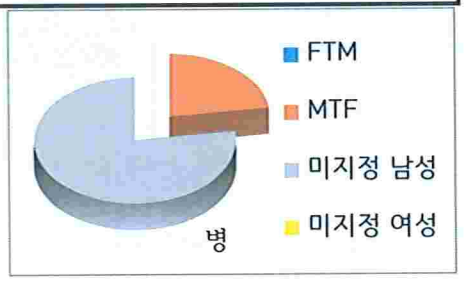

〈그림 4-7〉 성별불일치 관련 추가적 답변 결과(장병)

다. 대국민 인식조사

2022. 5. 20. ~ 5. 23.까지 18세 이상의 남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전환자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환자에 대해 대체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10%의 국민만이 성전환자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 있었음에도 65.7%의 국민이 성전환자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전환 남성 7명(0.7%), 성전환 여성 3명(0.3%), 비정체화된 남성 65명(6.5%), 비정체화된 여성 51명(5.1%)의 응답자들은 남녀의 성별 이외에 다른 성별정체성을 표시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 성전환자 비율이 0.5%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별정체성에 대한 추가적 답변 결과는 <표 4-10>, <그림 4-8>과 같다.

〈표 4-10〉 성정체성에 대한 추가적 답변 결과(국민)

(단위: 명)

구분	① 성전환 남성	② 성전환 여성	③ 비정체화된 출생 남성	④ 비정체화된 출생 여성
성정체성	7(0.7%)	3(0.3%)	65(6.5%)	5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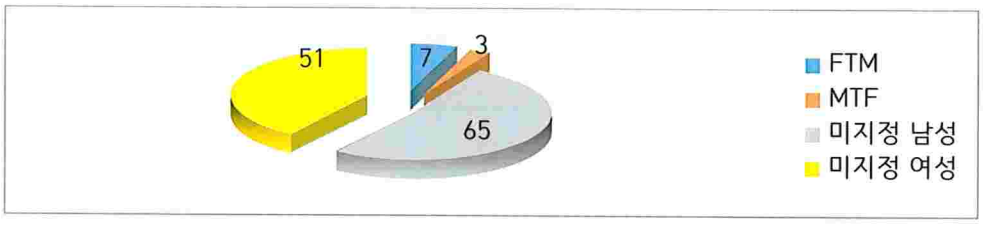

〈그림 4-8〉 성별정체성에 대한 추가적 답변 결과(국민)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복무를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이 40.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28.7%를 차지하였다. 성별정정이 되지 않은 성전환 여성도 군 복무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3.5%, 현역복무를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은 17.2%였다.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11>, <그림 4-9>와 같다.

〈표 4-11〉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응답

(단위: %)

구분	① 남성으로서 복무	② 원칙적 복무, 예외적 복무 제한	③ 원칙적 제한, 예외적 인정	④ 복무 제한
법적 성별정정 전 성전환 여성(MTF)의 현역복무	13.5	40.6	28.7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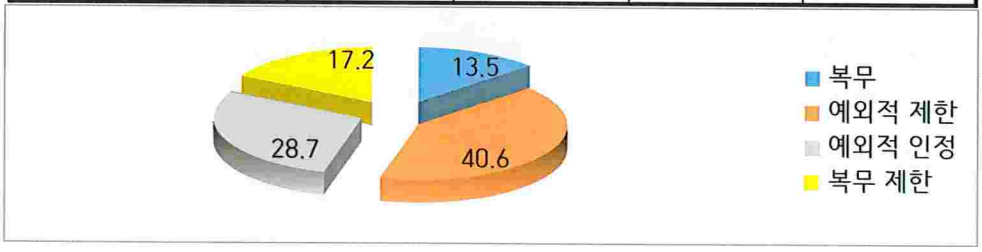

〈그림 4-9〉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한 응답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44.5%로 다수였다.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6.9%로 그다음이었다. 적극적으로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1.4%이고,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17.2%였다.

성전환자의 군 간부로서 복무는 군에서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42.2%였고,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9.2%였다. 군 간부로서 현역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8.4%로 성전환 남성보다 비율은 좀 더 낮고,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로 성전환 남성보다 비율은 좀 더 높았다.

성전환 장병의 군 복무 허용범위에 있어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법적 성별정정을 완료한 경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9.9%로 다수였으며, 법적 성별정정이 완료된 경우는 21%, 법적 성별정정과 무관하게 전문의에 의해 성전환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5.3%,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은 13.8%였다.

성전환 장병의 군 복무 허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입대 전에 성전환을 한 경우만 인정하자는 의견은 43.8%, 복무 중에도 성전환을 인정하자는 의견은 34.9%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외국의 경우 연령, 종교, 학력, 이념성향 등에 따라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편차가 존재하나 대국민 설문조사의 경우 크게 편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성전환 남성과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4-12>, <그림 4-10>과 같다.

〈표 4-12〉 성전환 남성과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응답

(단위: %)

구분	① 적극 허용	② 군의 여건 갖추어진 경우 조건부 허용	③ 원칙적 불허, 군에서 필요한 경우 예외적 허용	④ 복무 제한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	8.4	42.2	29.2	20.2
성전환 남성(FTM)의 현역병 복무	11.4	44.5	26.9	17.2

〈그림 4-10〉 성전환 남성과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한 응답

외부 설문조사 기관의 결과는 성전환자의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2017년 트렌스젠더에 대한 세계인의 태도 조사[48]를 위해 우리나라 16세에서 64세까지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긍정 45.2%, 부정 36.2%, 모름이 18.6%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4-13>, <그림 4-11>과 같다.

〈표 4-13〉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William)

(단위: %)

구분	① 매우 동의	② 약간 동의	③ 약간 부동의	④ 전혀 부동의	⑤ 모름
성전환자 군 복무	13.6%	31.6%	24.5%	11.7%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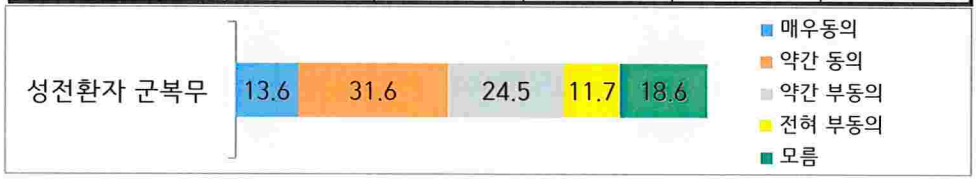

〈그림 4-11〉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William)

48) 이호림, 윈스터 루허 등. (2019). 『트렌스젠더 권리에 대한 여론: 대한민국』. William Institute.

2020년 1월 한국갤럽은 전국 18세 이상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과 성전환 여성의 계속 복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2001년 대비 전체적으로 9% 증가했는데, 40대 이하의 연령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높으며, 50대 이상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49] 추가적으로 성전환자의 지속적인 군 복무에 대한 설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군인의 계속 복무에 대해서는 긍정 33.3%, 부정 58%, 모름 9%로 부정적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60대 이상 남성의 부정적 응답이 67%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4-14>, <그림 4-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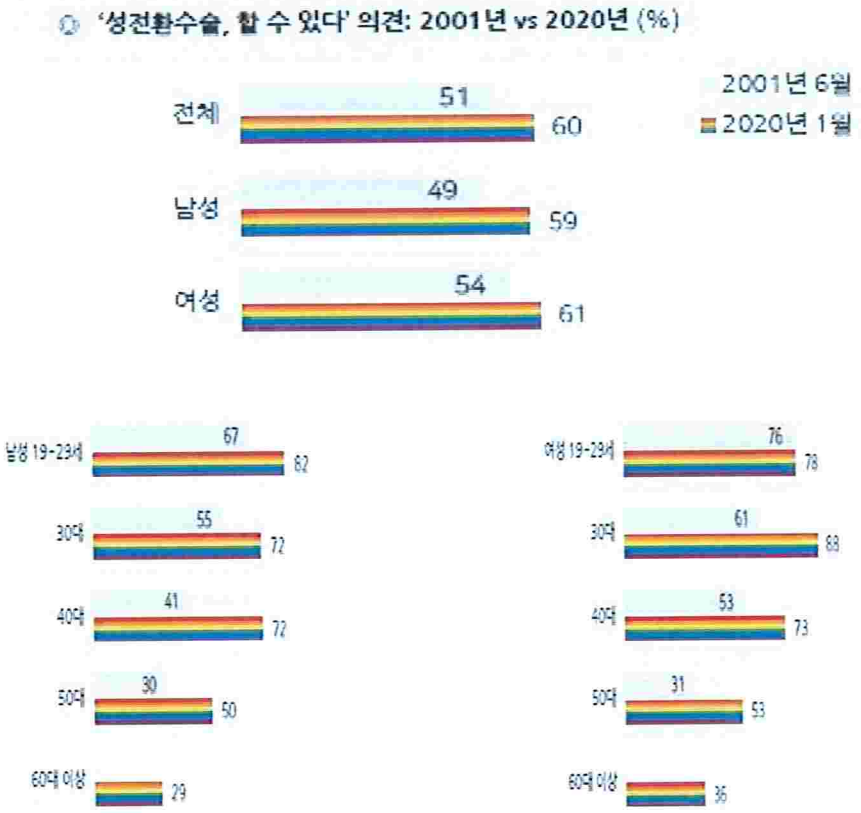

〈그림 4-12〉 성전환 수술에 대한 한국갤럽 설문조사 결과

49)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2020). 갤럽리포트 G20200131, p. 16.

〈표 4-14〉 성전환 여성의 계속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갤럽)

2020년 1월 5주 (28~30일)		사례수 (명)	성전환 군인의 군 복무 지속 여부		
			계속해도 된다	해선 안된다	모름/무응답
성/연령	전체	1,000	33%	58%	9%
남성	18~29	95	33%	61%	5%
	30대	82	34%	61%	5%
	40대	99	41%	52%	7%
	50대	99	33%	61%	6%
	60대 이상	121	24%	67%	9%
여성	18~29	85	32%	59%	9%
	30대	79	41%	53%	6%
	40대	94	42%	55%	4%
	50대	98	33%	61%	6%
	60대 이상	147	23%	54%	23%

이 밖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만 19세 이상 현역복무를 완료한 남성을 대상으로 2022. 9. 실시한 설문조사[50] 결과는 다른 국민 대상 설문 조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았는데, 특히 30대의 반대의견이 가장 많았다. 설문의 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병역의무 이행자 대상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얼미터)

구분	① 찬성	② 반대	③ 잘 모름
전체	29.9%	65.7%	4.5%
19~29세	29.1%	62.0%	8.9%
30대	26.1%	71.5%	2.4%
40대	32.3%	64.1%	3.6%
50대	32.8%	63.6%	3.5%
60대	28.7%	67.0%	4.2%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유형은 성전환자를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지배담론과 트랜스젠더의 사회적 처지를 개선해야 된다는 대항담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담론은 트랜스젠더를 육체적·정신적으로 질환 또는 심리적·정서

50) 국회 국방위원회. (2022). 군 동성애 및 젠더 군 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 국회의원회관, 2022. 10. 12.

적 장애로 보는 질병프레임,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소수자를 자연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으로 보는 종교적 죄악 프레임, 사회질서 혼란 프레임, 트랜스젠더를 성적인 문제에 국한시켜 흥밋거리로 대상화하는 성적 대상화 프레임이 존재한다. 반대로 대항담론은 트랜스젠더가 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소수자 보호 프레임,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정 프레임, 사회제도권으로의 편입을 위해 공적 권리에 대한 법제화를 강조하는 공적 권리 강조 프레임, 사회적 성취 프레임이나 트랜스젠더가 각종 폭력의 희생자임을 강조하는 피해자 프레임이 존재한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4-16>과 같다.[51]

〈표 4-16〉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유형

담론적 성격	프레임 유형
지배담론	- 질병 프레임 - 종교적 죄악 프레임 - 사회질서 혼란 프레임 - 성적 대상화 프레임
대항담론	- 소수자 보호 프레임 - 사회적 인정 프레임 - 공적 권리 강조 프레임 - 사회적 성취 프레임 - 피해자 프레임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성전환자의 전역처분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여론조사와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성별이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한다. 성전환 수술은 엄청난 고통과 치료시간이 요구되고, 성전환 수술 없이 생물학적 여군들과 함께 병영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여군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여 군의 특수성을 침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성별정체성 문제로 주민등록체계 등에 국가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며, 여군의 임용경쟁율이 높은 상황에서 성전환 여성의 군 복무 인정은 생물학적 여성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징병제하에서 성전환을 주장하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52]

---

51) 장수아, 남재일. (2022). "한국 신문의 트랜스젠터 재현 - 취재관행 및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pp. 116-117.

52) 국회 국방위원회. (2022). 군 동성애 및 젠더 군 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2. 10. 12.), pp. 38-41, 104-105.

라. 소결론

장병 면담 및 설문조사와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 및 장병은 성전환에 대해 개인적 인권과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었다. 인권 및 기본권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젠더보다는 능력 중심으로 개인을 평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장병들은 실제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해서는 다른 인식이 존재하는데, 특히 상관보다는 동료나 부하의 경우에 더욱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다.

성전환 여성, 성전환 남성,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에 대해 병, 간부, 국민들 사이에 조금씩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다.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서는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군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장병의 의견이 많았는데, 병보다는 간부의 부정적 의견이 더욱 높았다.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서 간부는 부정 의견이 더 많고, 병은 긍정 의견이 더 많았다. 성전환 간부의 군 복무에 대해서 간부는 부정의 의견이 더 높았고, 병은 긍정 의견이 더 높았다. 국민들은 현역복무에 지장이 없다거나 군에서 필요하다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전환자의 복무 요건으로는 법적 성별정정 및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병역판정 검사 전이나 최소한 입대 전 성전환을 군 복무 요건으로 제시하는 응답이 많았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시 부대 임무 수행에 여러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했으나, 특히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간부의 경우 성전환자가 현역복무를 하더라도 군 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인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았고, 병은 간부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낮았다. 성 관련 사고와 관련해서는 비록 병의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높긴 하지만 간부와 병 모두 유사한 비율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장병 모두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논바이너리나 성별정체성이 상이한 장병이 현재도 복무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

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여부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제한하는 것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 자유, 행복추구권, 간부의 경우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 침해도 동시에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동일한 기본권 주체의 하나의 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기본권의 경합이라고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나, 사실적 차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전환자에 대해 군 복무를 금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림 4-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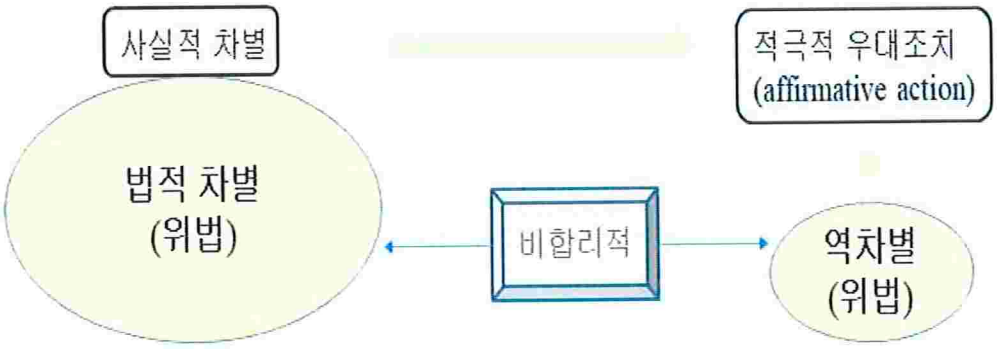

〈그림 4-13〉 성전환자의 합리적 차별 문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의 구체적 내용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것이 군의 전투준비태세나 부대단결 등의 목적을 위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인가의 문제에 있어 성전환자의 복무가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직접적으로 위배될 여지가 높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요하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의할 때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기본권이 보다 침해될 여지가 높다. 미국의 경우 신체의 자유 및 정신적 자유에 관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는 양자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53]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수단의 적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제3자와의 기본권 상충 문제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를 허용하는 경우 성전환자와 함께 복무를 해야 하는 장병들이나 간부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것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 성전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른 장병이나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대립되어 기본권을 주장하는 기본권 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군 복무의 금지로 인해 성전환자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기본권 경합의 문제라면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으로 인해 간부 임용준비생들의 공무담임권이나 다른 장병들의 사생활 자유,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권 상충의 문제

53) 미국 연방대법원은 평등과 관련된 심사기준으로 합리성심사, 중간심사, 엄격심사 기준을 활용한다. 합리성 심사는 입법권을 존중하여 차별목적에 비추어 그 수단이 합리적인 경우로 입법이 정당한 정부의 목적과 합리적 관련이 있는 경우(rationally related to a legitimate purpose) 합헌으로 판단한다. 의심스러운 구분(suspect classification)에 의해 차별을 한 경우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중요한 정부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necessary to achieve a compelling government purpose)에만 합헌으로 인정한다. 중간심사 기준은 차별이 입법목적의 달성과 실질적으로 관련된(substantially related) 것이면 합헌이라는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의 기본권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표 4-17> <그림 4-14>와 같다.

〈표 4-17〉 성전환자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

기본권 경합	기본권 상충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여러 기본권 적용을 주장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주장
성전환 간부의 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침해 (성전환자 복무 인정 시 동료 장병의 행복추구권, 사생활 자유 침해)	다른 장병과 간부 임용준비생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 사생활 자유) vs. 성전환 간부 (인격권, 사생활 자유, 직업의 자유, 평등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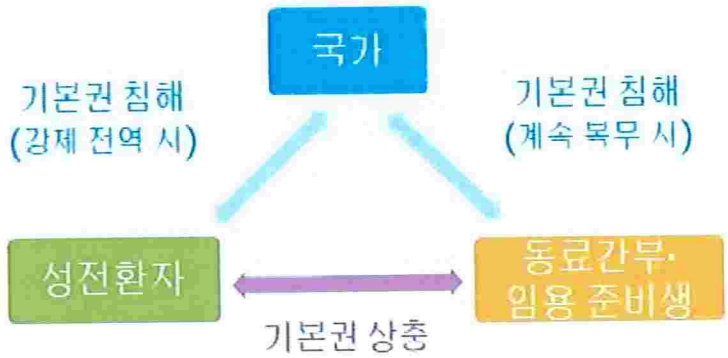

〈그림 4-14〉 성전환자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

성전환자의 간부 임용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간부·간부 임용준비생의 직업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특히 여군의 경우 임용경쟁률이 남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복무 중 성전환 여군을 인정할 때 다른 여군 간부나 간부 임용준비생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간부나 간부 임용준비생의 공무담임권 침해는 정도의 문제이지만, 성전환자 간부는 직업의 자유나 공무담임권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 다양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상충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익형량의

원칙, 규범조화적 해석, 기본권의 서열에 따른 해결이 그것이다.

대법원은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가치를 형량할 때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는 합헌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반론권이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합헌이라고 하였다. 기본권의 서열에 따른 해결방안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자유영역과 덜 중요한 자유영역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였고, 흡연권은 사생활 자유의 핵심이지만 혐연권은 사생활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과 연결되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해결방안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표 4-18>과 같다.

〈표 4-18〉 기본권 상충 시 해결방안

구분	내용
이익형량의 원칙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언론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가치를 형량할 때 언론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는 합헌(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규범조화적 해석	언론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반론권이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합헌(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기본권의 서열	중요한 자유영역과 덜 중요한 자유영역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헌법재판소 1994. 4. 29. 94헌바37 등)
	흡연권은 사생활 자유의 핵심이지만 혐연권은 사생활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과 연결되어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가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4. 종합적 검토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해서 군사적 측면, 장병 및 국민의 인식 측면,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군사적 측면을 보면, 전투준비태세나 부대단결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군의 사례를 검토할 때 성전환자의 복무가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지만 긍정적인 사례 또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제도 및 인권 측면에서 장병들에 대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대단결이나 사기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또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의지가 약한 경우 복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병력관리에 있어 지휘관의 부담이 증가될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성전환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며, 시·공간적인 분할 사용을 위해서도 지휘관의 별도 노력이 요구된다. 능력이 검증된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는 우수 인력 유지와 간부 양성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에 유익한 측면도 있다.

장병 및 국민의 인식 측면을 보면 대부분의 장병은 성전환자의 개인적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일부 정서적 거부감은 있으며 함께 복무하는 것을 꺼리는 장병도 존재한다. 장병은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복무를 부정하는 의견이, 병은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나 성전환 간부의 복무에 대한 긍정 의견이 성전환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국민은 일방적인 찬반보다는 복무기준 충족이나 군의 필요에 따라 성전환자의 복무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법률적 측면을 보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 성전환자의 평등권,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 침해로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다른 간부나 간부 임용준비생과의 기본권 상충 문제에 있어서도 성전환자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다른 간부는 기본권 침해 정도의 문제이지만 성전환자는 기본권 박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관련 방안 검토

1.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방안 결정 시 고려사항

가. 성전환자 군 복무 인정 시 적용 기준과 고려사항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한다고 할 경우 병은 병역의무의 이행에 중점이 있지만, 간부는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과도 관련이 있어 양자는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전환자는 먼저 성전환 남성과 성전환 여성으로 구분하되, 법적인 성별정정의 여부와 성전환의 유형에 따라 검토가 가능하다. 성전환 과정에서 상담치료와 외형적 변화로 충분한 경우,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까지 한 경우 등 단계별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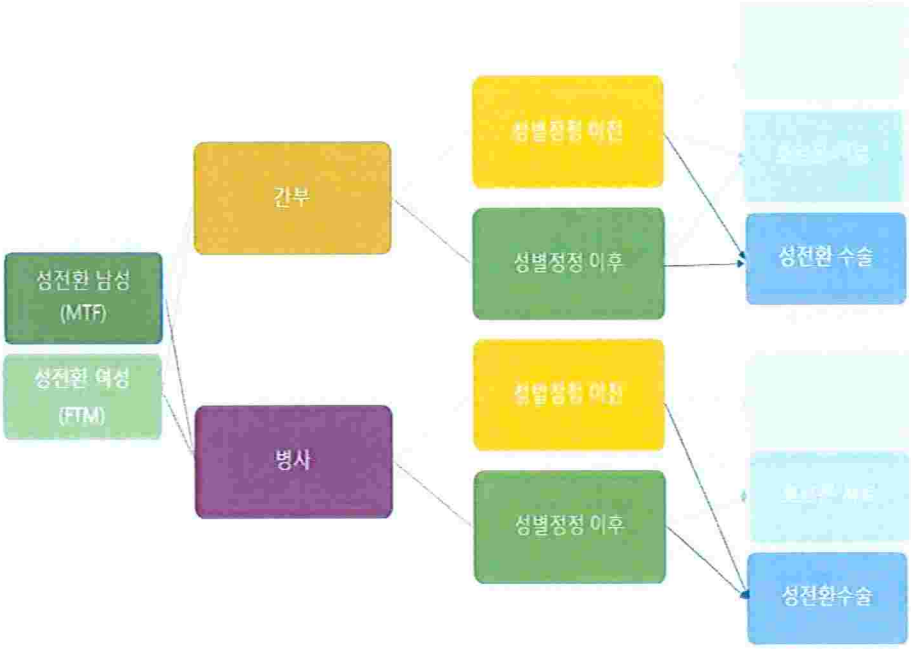

〈그림 5-1〉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 요소

법적으로 성별이 정정되었는지가 군 복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므로 법적 성별정정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인정 시 고려할 사항으로 입대 전 성전환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절차는 1차적으로 병무청에서 판단하지만, 필요시 민간의 성전환 관련 의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입대 후의 복무 부적응은 현역복무부적합심의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도 지속적으로 호르몬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므로 성전환에 있어 지휘관, 간부 또는 상담관에 의한 일반적인 상담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신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의료적 판단도 필요하고,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위한 휴가나 의료지원제도 확대 및 인사 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복무 중 성전환을 인정하는 경우 성전환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법원에 의해 성별정정이 인정된 경우 정정된 성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 이전의 경력과 상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도 필요하다. 이 밖에 성전환자 현역복무에 관한 구체적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 법규, 부대관리 등 세부 제도와 가능한 방안

군은 정책적으로 민간의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의 입법과 무관하게 별도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정책결정을 선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의 정책결정을 감안해 사후적으로 결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성전환자 문제가 군에서 이슈화된 상태에서 현역복무를 부정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경우 법규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위한 구체적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국방 관련 법령에 규정할지 또는 국방부 내부규정으로 정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부대관리, 인력관리, 교육훈련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성전환자의 적극적인 복무

를 유도하고 부대 내에서 성전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휘관에 대한 행동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전환자의 치료는 보장하되, 이로 인해 다른 장병들에게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전환자에게 전환된 성으로의 신체와 체력기준을 요구하되, 성전환 기간 동안은 일부 교육훈련과 작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보완 필요분야는 <표 5-1> <그림 5-2>와 같다.

〈표 5-1〉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보완 필요 분야

구분	내용
정책	1.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2. 조건부로 인정할 경우 구체적 조건에 대한 사항 검토 3. 복무를 부정하는 경우 명확한 근거 제시
법규	1.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기준 2. 복무 중 성전환 인정 시 구체적 절차 3. 법령, 훈령, 지침 중 어떤 형식으로 규정할지 검토
부대관리 병영문화	1. 성전환자 복무를 위한 시설의 추가 또는 기존시설의 활용방안 2. 성전환자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3. 성전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 제공 4. 민간의료·상담 인력의 지원 방안 5. 장병에 대한 다양성 및 인권교육 강화
인력관리	1. 법적 성별정정과의 연계성 확보 2. 필요시 치료나 복무에 적합한 부대로 보직 이동 3. 성전환자의 인사 불이익 방지 방안 4. 성전환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인해 다른 장병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 차별결과 예방 5. 성별정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변경과 이전
교육훈련과 작전	1. 성전환자에게도 전환된 성으로 동일한 신체나 체력기준의 적용 2. 성전환자의 치료를 위해 근무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일시적 예외 규정 마련 3. 해외파견이나 작전에 대한 일시적 예외 규정

〈그림 5-2〉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보완 필요 분야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병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병역면제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성전환 남성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성전환 여성은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것인지가 주된 정책결정 사항이다. 복무 중 성전환도 문제될 수 있지만 병의 복무기간이 짧은 관계로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할 것이다.

성전환 간부의 복무는 병역의무의 이행보다는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의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성전환 간부의 현역복무를 인정할 경우 입대 전에 성전환을 한 경우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군 복무 중에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외국의 경우 성불쾌감의 진단만 있으면 성전환을 인정하는 국가가 많으나 성전환 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를 요구할 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해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을 아래에서 검토한다.

2. 성전환자 현역복무의 제한 [방안 Ⅰ]

가.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령 유지 [방안 Ⅰ-1]

법적 성별에 따라 현역복무 여부를 결정하되, 성전환자의 병역의무를 성전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다. 성전환 여성은 법적으로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병적에서 제적된다.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성별불일치로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현역복무를 부정한다. 성전환 남성의 경우 성전환 수술과 상관 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복무 제한 방안

구분		병사		간부	
		성전환 남성 (병역이행)	성전환 여성 (병역 면제)	성전환 남성 (복무)	성전환 여성 (복무)
현행 유지 [방안 Ⅰ-1]	호르몬 치료	×	△[54]	×	×
	성전환 수술	×	○	×	×
	성별정정	×	○	×	×

군에는 부담이 적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또는 민간 인권단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여지가 높다. 민간의 성전환자 제도가 정립된 이후에 장병과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군의 전투준비태세나 부대관리에 있어 추가적인 제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성별을 정정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MTF)의 현역복무에 대한 지침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휘관, 장병, 성전환 여성 복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표 5-3>과 같다.

54) ×는 병역의무 이행이나 면제의 부정, △는 상황에 따라 인정, ○ 인정을 의미한다.

〈표 5-3〉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복무 제한 방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방안 Ⅰ-1	- 민간의 성전환자 정책방향에 따라 추후 성전환자 군 복무 정책 결정 - 군의 대비태세나 부대관리에 있어 추가적인 제도 마련 불필요	- 성전환자의 인권보장 미흡 -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비판 지속	법령 개정 불필요

나. 성별정정한 성전환 남성(FTM)의 병역이행 일부 인정(방안Ⅰ-2, 3)

성전환 여성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성전환 남성에 대해서 법적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방안Ⅰ-2).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성전환 남성은 취직을 하기 위해 병역면제 사항을 설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전환 남성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남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성전환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면 현역복무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병역기피 문제의 예방을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현역복무 인정이 타당하다.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았거나 현역복무 부적응자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되, 부대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성별정정이 된 성전환 남성 중에서 본인이 현역복무를 희망하지 않는 자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방안Ⅰ-3). 다른 장병과의 신체·정신적인 차이로 인해 현역복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성전환 남성이 현역복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 현역복무부적합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오히려 부대관리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경우 현역복무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제한적 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표 5-4>와 같고,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표 5-5>와 같다.

〈표 5-4〉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 복무 방안

구분		병사		간부	
		성전환 남성 (병역이행)	성전환 여성 (병역 면제)	성전환 남성 (복무)	성전환 여성 (복무)
FTM 복무 인정 [Ⅰ-2]	성별정정 이전	×		×	
	성별정정	○ (원칙적으로 전부)[55]		○(희망자만)	
FTM 희망자 복무 인정 [방안 Ⅰ-3]	성별정정 이전	×		×	
	성별정정	○(희망자만)		○(희망자만)	

〈표 5-5〉 법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제한적 복무 방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방안 Ⅰ-2	- 병력자원 확보에 유리 - 병역기피의 문제 발생 최소화	- 성전환자에 대한 부대관리 부담의 증가	「병역법」 개정 필요
방안 Ⅰ-3	-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 병력자원의 부분적 확보	- 성전환자 중 복무 희망자에 대한 부대관리 부담 증가 -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3. 성전환 수술 여부에 따른 현역복무 검토[방안 Ⅱ]

가. 성전환 수술과 성별정정을 기준으로 검토[방안 Ⅱ-1, 2, 3]

성전환 수술과 성별정정을 기준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한다고 할 경우

55) ○의 크기는 관련 인원의 해당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클수록 해당 인원이 많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체 외형의 동일성을 중요시하여 성별정정 이전의 성전환 수술 완료자에 대해 현역복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방안 Ⅱ-1). 성전환 수술 이후 법원에서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안에서는 법적 성별정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했지만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별재지정 수술을 통해 성전환이 완료된 경우만 현역복무를 인정함으로써 법적인 정정을 요구하지 않아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동료 장병들과 원활하게 복무할 가능성도 높다. 성전환 여성의 경우 병역기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다.

성전환 수술 강요로 인해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적으로 인정되는 성전환의 현역복무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우수한 인력자원의 확보에도 불리하다. 외부적 신체가 전환된 성의 생식기와 완벽하지 않은 경우 동료 장병 사이에 부분적으로 위화감이 발생할 수 있다. 성전환자의 원활한 복무를 위해 추가적 부대관리가 요구되고, 성전환 여성이지만 법적으로 남성인 경우 군의 행정상 처리나 인사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성전환 수술 이전에 성별정정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현역복무를 인정할 수도 있다(방안 Ⅱ-2). 법원에 의해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성전환자에 대해 현역복무를 인정한다면 군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 되므로 형식적으로 명확한 방안이다. 행정상 처리나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전환된 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판례의 경향상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성별정정이 허용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그 사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이 경우 성전환 수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적 외형의 차이로 인해 함께 복무하는 장병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을 느낄 것이며, 지휘관이나 간부들도 부대관리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만,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인력자원의 확보에 부분적으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성전환 수술 후 성별정정 완료자에 대해서만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방안도 있다(방안 Ⅱ-3). 성전환 수술과 성별정정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외형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현역복무에 가장 엄격한 요건을 통해 부대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성전환 수술과 법적 성별정정을 기준으로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표 5-6>과 같고,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표 5-7>과 같다.

〈표 5-6〉 성전환 수술 여부에 따른 현역복무 방안

구분			병사		간부	
			성전환 남성 (병역이행)	성전환 여성 (병역 면제)	성전환 남성 (복무)	성전환 여성 (복무)
제한적 복무 인정 [방안 Ⅱ]	[Ⅱ-1]	성전환 수술	○	○	○	○
	[Ⅱ-2]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	○	○	○
	[Ⅱ-3]	성전환 수술과 성별정정	○	○	○	○

※ ○의 크기는 해당 방안 내에서 해당 인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나타냄

〈표 5-7〉 성전환 수술 여부에 따른 현역복무 인정 시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방안 Ⅱ	1	- 성전환자 기본권 및 선택의 기회 부분적 보장 - 성전환 수술을 통해 다른 장병과의 동일성 의식 강화 - 성전환 여성의 병역기피 문제 감소	- 신체적 외형의 부분적 차이로 인해 장병의 정서적 불편 유발 -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 성전환자의 법적 처우와 행정적인 처리에 문제 발생 - 부대관리에 있어 부분적 부담 증가 - 인력자원 획득이 상대적으로 곤란	「병역법」, 「군인사법」 일부 개정 필요
	2	- 성전환자 기본권 및 선택의 기회 부분적으로 보장 - 행정상 처리나 인사관리에 적합 - 인력자원 획득에 부분적 이점	-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의 현역복무 가능성 존재 - 신체적 외형의 차이로 인해 장병의 상당한 정서적 불편 유발 - 부대관리에 있어 상당한 부담 증가	
	3	- 성전환자 기본권 및 선택의 기회 최소한 보장 - 성전환 수술을 통해 다른 장병과의 동일성 의식 강화 - 행정상 처리나 인사관리에 적합 - 성전환 여성의 병역기피 문제 감소	- 성전환자의 완전한 인권보장에 미흡 - 신체적 외형의 부분적 차이로 인해 장병의 정서적 불편함 유발 - 인력자원 획득이 상대적으로 곤란	

나. 의료적인 성전환자 현역복무 검토[방안 II-4]

성별정정 또는 성전환 수술과 무관하게 의료적으로 성불쾌감을 느끼거나 성별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성전환자도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이 있는데(방안 Ⅱ-4), 의료진과의 정신과 상담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별불일치가 인정되는 경우도 현역복무가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복무 의사와 무관하게 성전환 남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성전환 여성은 전문의가 성전환을 인정하는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고 성전환자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안이다.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장 넓게 보장하면서 군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이 가능하며, 능력이 인정되는 성전환자 간부나 병력의 획득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성별 재지정을 위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성전환 여성의 병역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전문의의 판정절차에서 병역기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적 신체의 차이로 인해 동료 장병 사이에 위화감 발생도 가능하다. 성전환자의 원활한 복무를 위해 보다 철저한 부대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성전환 여성이지만 법적으로 남성이므로 군의 행정상 처리나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도 예상된다. 성전환자에 대한 민간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선도적으로 의료적 성전환자에 대해 현역복무를 인정하기에 부담도 예상된다.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지 않은 의료적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인정 방안은 <표 5-8>과 같고,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표 5-9>와 같다.

〈표 5-8〉 성전환 수술 미완료 의료적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방안

구분			병사		간부	
			성전환 남성 (병역이행)	성전환 여성 (병역 면제)	성전환 남성 (복무)	성전환 여성 (복무)
확대적 복무 인정 [방안 Ⅱ]	[Ⅱ-4]	의료적 성전환 인정	○	○	○	○

〈표 5-9〉 성전환 수술 미완료자 현역복무 인정 방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방안 Ⅱ	4	- 성전환자 기본권 및 선택의 기회 최대한 보장 -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 군의 다양성 확대 - 인력자원 획득이 비교적 용이	- 신체적 외형의 차이로 다른 장병의 정서적 불편함 유발 - 성전환자의 법적 처우와 행정적인 처리에 문제 발생 - 성전환 여성의 병역기피 문제 - 부대관리에 있어 부담 증가	「병역법」, 「군인사법」 일부 개정 필요

4. 성전환 시기에 따른 검토 [방안 Ⅲ]

방안 Ⅱ에서는 입대 전 성전환을 완료한 경우의 방안을 검토하였다면, 방안 Ⅲ은 복무 중 성전환을 인정하는 경우의 방안이다. 기본적으로 방안 Ⅱ와 유사한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군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이 가능하고 복무 중 능력이 인정된 우수한 인력자원의 유지에 유리하다.

다만, 복무 중 성전환 치료와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업무공백 발생이 예상되고, 성전환 수술의 경우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의 경우도 정기적으로 민간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위한 시간의 부여가 필요하다. 성전환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추가적 업무 소요도 발생한다. 군 내 성전환 관련 상담이나 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인력의 확보도 요구된다. 군 복무 중 성전환을 인정하는 방안은 <표 5-10>과 같고, 이러한 방안의 장단점은 <표 5-11>과 같다.

〈표 5-10〉 군 복무 중 성전환 인정 방안

구분			병사		간부	
			성전환 남성 (병역이행)	성전환 여성 (병역 면제)	성전환 남성 (복무)	성전환 여성 (복무)
복무 중 성전환 인정 [방안 Ⅲ]	[Ⅲ-1]	성전환 수술	○	○	○	○
	[Ⅲ-2]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	○	○	○
	[Ⅲ-3]	성전환 수술과 성별정정	○	○	○	○
	[Ⅲ-4]	의료적 성전환자	○	○	○	○

〈표 5-11〉 군 복무 중 성전환 인정 방안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비고
방안 Ⅲ	1	대안 Ⅱ와 유사 - 인력자원 획득이 비교적 용이 - 성전환자의 적극적인 기본권 보장	대안 Ⅱ와 유사 - 성전환 치료를 위한 업무 공백 발생 - 군 내 성전환 관련 상담이나 의료 전문인력의 부족 - 추가적 업무 소요 발생	「병역법」, 「군인사법」 일부 개정 필요
	2			
	3			
	4			

5. 성전환자 현역복무 관련 현실적 방안

가. 현행 제도 유지 시 제도개선 방향

위에서 제시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관련 방안을 모두 군에서 수용하거나 채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 방안을 위주로 성전환자 현역복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의 변화에 맞추어 군의 성전환자 복무 정책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군에서 먼저 성전환자 복무를 허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장병의 인식, 부대시설, 인사나 교육제도 불비의 구체적 사유를 해명하면서 동시에 현재 복무하고 있는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 복무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동향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복무를 하고 있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국방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평등대우 원칙에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군에 부담이 되므로, 「군인사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과 같은 법령보다는 국방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대관리훈령」이나 각 군의 규정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부대관리훈령」 제4편 사고예방, 제7장 동성애자 장병의 복무에 성전환 여성(MTF) 관련 내용도 추가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제4편 사고예방 규정이 아닌 제3편 복무 관련 내용에 추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성전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성전환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군 인권업무 훈령」에서도 교육이나 인권 실태조사에 성전환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각 군에서도 개별적으로 부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 관련 규정의 구체적 개정 내용과 필요한 추가적 조치로 성전환자의 개념, 성전환자의 개인 신상비밀 보장, 차별금지 및 상담 관련 사항을 훈령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성전환자의 복무에 관하여 지침 수준의 일반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장병들에 대한 인권교육 시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교육도 규정해야 한다.

부대관리 측면에서 성별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지휘관이나 의료, 법률, 상담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제도 유지 시 보완 사항을 정리하면 <표 5-12>와 같고, 국방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은 <표 5-13>과 같다.

〈표 5-12〉 현행제도 유지 시 보완 사항

구분	내용
정책	1.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허용할 수 없는 사유 설명 2. 장병의 인식, 시설 여건, 제도적 준비 필요 3. 민간의 정책결정 후 군에 적용
법규	1. 국방부 및 각 군 내부 규정의 개정 2. 지휘관 및 관련자에 대한 지침, 매뉴얼 제공 3. 성전환자 여성(MTF)의 복무 적응 지원
부대관리 병영문화	1. 성전환 여성의 복무를 위한 편의 제공 2. 성전환자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3. 성전환자의 상담·치료 지원 제공 4. 민간의료·상담 인력의 지원 방안 모색 5. 장병에 대한 다양성 및 인권교육 강화

〈표 5-13〉 국방 관련 규정 개정사항

	현행		추가할 내용
부대관리 훈령	- 동성애자 관련 규정만 존재 - 신상비밀보장을 위해 동성애자 식별을 위한 설문조사 금지(제254조)	→	- 성전환자 관련 개념 명시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복무 중 차별금지 - 신상비밀보장과 복무 지원 규정 - 성전환자 인권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허용
군 인권 훈령			성소수자 인권 보호 규정
각 군 규정	관련 규정 부존재		국방부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
성전환자 관련 지침			지휘관, 의료, 법률, 상담 인력의 성전환자 복무 지원 사항

나.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제도개선 방향

민간의 입법조치와 상관없이 군에서 먼저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한다고 할 경우 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입대 전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한 경우만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부대관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민간의 성전환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을 위한 국방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필요시 「군인사법」, 「군인복무기본법」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상 성전환 남성의 전시근로역 편입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며, 「병역법」, 「군인사법」을 근거로 한 신체검사규정 중 생물학적 성 관련 신체 부위 내용을 성전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부대관리훈령」과 각 군 규정에 성별이 정정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성전환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 상담, 복무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부대시설이나 인사관리에 대한 추가적 조치도 필요한데, 성전환자가 별도로 샤워나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을 시·공간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복무 중 인사관리는 전환된 성별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이다.

장병과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군에서도 복무 중 성전환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입대 후 성전환을 인정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다. 인권친화적 병영 조성과 상호 존중의 풍토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복무 중 성전환을 인정하는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한데, 필요시 「군인사법」에 복무 중 성전환자의 인사관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 규정에서 구체적인 성전환 가능 사유와 절차, 성전환자 지원사항을 신설해야 하며, 전환된 성으로 개인정보 변경 절차와 변경 가능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복무 중 성전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사관리가 필요한데, 성전환 절차 중 훈련, 작전, 파견 등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 성전환 과정 동안과 성전환 종

료 후 휴가나 보직 관련 인사상 조치를 규정하고, 성전환 이후 민간 법원을 통한 성별정정과 군의 개인정보 정정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사항은 <표 5-14>와 같다.

〈표 5-14〉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사항

구분		입대 전 성별정정	입대 후 성별정정
정책		-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분적 동참 -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한도에서의 현역복무 인정 - 민간의 성소수자 정책논의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	-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
법규	법령	- 「군인사법」, 「군인복무기본법」상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필요시) - 「병역법 시행령」상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규정 삭제 - 「병역법」, 「군인사법」에 따른 신체검사 규정상의 생물학적 성 관련 신체 부위 내용의 개정	- 「군인사법」상 성전환자 관련 인사 원칙 규정(필요시)
	국방 규정	- 부대관리훈령이나 군인권훈령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추가 - 부대관리훈령에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명시 - 각 군의신체검사 규정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 - 장병에 대한 다양성 및 인권교육 강화	- 복무 중 성전환이 가능한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의료, 법률,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규정 신설 - 전환된 성으로의 개인정보 변경 절차와 범위 규정 - 성전환자의 의료지원 사항
부대시설		- 성전환자 별도 시설 마련(가용 시) - 기존 시설의 시·공간적 분할 사용	
인사관리		- 정정된 성별로 관리	- 성전환 과정과 이후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규정 - 법원을 통한 성별정정 절차를 통해 전환된 성으로 인사관리 - 성전환 절차 중 훈련, 작전, 파견 등에 대한 예외 규정 - 성전환 후 동료에 대한 통보(필요시)

장기적으로 성전환자의 인권에 대한 개방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군도 성전환자의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한 경우 성별불일치를 가진 인원의 현역복무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환자의 인권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장병들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유용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안도 의료적 성전환자 모두에 대해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성별불일치가 존재하고 법적으로 성별이 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의료적 성전환자에 대해 성별정정의 기준을 변경하여 성별정정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성별정정이 인정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의료적 성전환자를 인정하는 경우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성전환자에 비해 부대관리 측면에서 더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다 세심한 관심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적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인정을 위해 성전환 수술과 상관없이 성전환 복무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 규정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피해예방에 대한 교육과 조치도 필요하다. 특히 신체 외형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법적 성별에 따라 다른 장병과 동일한 복무를 보장해야 한다. 다양한 성전환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 상담, 복무 지원 관련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군에서의 상담이나 의료 지원이 부족한 경우 민간의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대시설이나 인사관리에 대한 추가적 조치도 필요한데, 외형적으로 생물학적 성에 따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샤워나 목욕 또는 관련 시설을 시·공간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구체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복무 중 다른 장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성전환자의 의사에 따른 인사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성별불일치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사항은 <표 5-15>와 같다.

〈표 5-15〉 의료적 판단에 의한 성전환자 현역복무 인정 시 고려사항

구분		성전환 남성	성전환 여성
정책		- 장병들이 성전환자와 복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고려 가능 - 성별불일치가 존재하고 법적 성별정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법규	법령 및 국방 규정	- 성전환 수술 완료자와 동일한 복무 보장 - 성전환 수술 미완료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 규정 - 지속적인 상담이나 치료 지원 및 피해 예방 - 신체 외형에 의한 차별금지 명문화	
부대시설		- 샤워나 목욕시설은 별도로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시·공간적 분할 사용	
		원칙적으로 남자 화장실 사용	원칙적으로 여자 화장실 사용
인사관리		- 정정된 성별로 관리 - 외형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성전환자의 의사에 따른 인사조치	

Ⅵ. 결론 및 제언

1. 성전환자 현역복무 문제의 종합적 검토

성전환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회나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기본권 보장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은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인정해야 하는지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나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성전환자의 평등권, 사생활 보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군의 제도 변화에서와 같이 민간의 성전환자 정책을 지켜보고 군의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첫째, 성소수자와 성전환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하였다. 시대적 변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규범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권고, 성전환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의 법령과 민형사상 판례의 변화도 확인하였다. 일반 및 경찰·소방·교육 공무원들의 성전환자 임용과 법무부의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제도도 검토하였다. 특히, 성별정정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의 성별정정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과거에 성전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었지만, 1990년 이후 성전환자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으로 성별정체성에 의한 성불쾌감보다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더 큰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제법원에서도 일반적인 성에 의한 차별에는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도 포함된다고 하여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보험 부적용 또는 연금지급에 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동성애자의 현역복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병역판정 단계에서 성별정정이 완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성별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호르몬이나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성전환 여성과 성전환 남성의 병역처분 실태를 확인하였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 외국군의 성전환자 복무실태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군사 선진국에서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입대 시뿐만 아니라 복무 중 성전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국, 러시아, 터키 같은 국가에서는 아직도 성전환자의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성전환자의 현역복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가능성과 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군사적 측면, 장병 및 국민의 인식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투준비태세, 교육훈련, 부대단결, 사기, 부대시설이나 병력관리, 인력관리 분야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 군에서도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이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 그 외의 경우는 외국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군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장병과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병 4,000여 명, 간부 1,500여 명,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 복무가 어려우므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만, 단순히 호르몬 치료만 받는다면 복무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경우는 작전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이 외국처럼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단결이나 사기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인식은 성전환 여성, 성전환 남성, 성전환 간부별로 인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성전환 여성의 현역병 복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가장 많았다. 병은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나 성전환 간부의 복무에 대한 긍정 의견의 비율이 부정적 의견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간부의 경우는 반대였다.

국민들은 현역복무에 지장이 없다거나 군에서 필요하다면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해 고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법률적 측면에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어 성전환자의 평등권,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부터 의료적으로 성별불일치를 느끼고 있는 장병들의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것까지 우리 군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성전환 여성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부터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사람만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방안,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지는 않았지만 성별정정을 완료한 사람, 복무 중 성전환을 한 사람, 성전환 수술 없이 정신과 상담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전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현역복무 인정 방안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개별 방안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개별 방안을 선택할 경우 제도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 법규, 부대관리, 인력, 병영문화, 교육훈련과 작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2.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정책적 제언

군사적 측면, 장병 및 국민의 인식 측면,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전환자의 복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방안들이 부정적인 영향이 없이 군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방안을 군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 중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과 이러한 방안을 선택했을 때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군에서 성전환자 복무를 허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국회의 입법 동향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성별정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이나 이들을 관리하는 지휘관이나 간부들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지침이나 복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군이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적인 방안은 성전환 수술을 하였거나 성별정정을 완료한 장병에 대해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성전환자에 대한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경우 법률상의 성별정정을 기준으로 현역복무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성전환 수술을 마친 경우는 비록 성별정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 성별정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른 장병들과 복무를 함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적을 것이므로 현역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경우 「군인사법」, 「군인

복무기본법」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 「병역법 시행령」상 성전환 남성의 전시근로역 편입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며, 「병역법」, 「군인사법」을 근거로 한 신체검사규정 중 생물학적 성 관련 신체 부위 내용을 성전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성전환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 상담, 복무 지원 관련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적인 성전환자 현역복무 제도의 개선 방향은 <그림 6-1>과 같다.

〈그림 6-1〉 성전환자 현역복무 개선 방향

추가적으로 장병 및 국민의 인식변화와 기존 성전환자의 제한적 군 복무 허용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복무 중 성전환이나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성별불일치가 존재하는 장병의 현역복무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전환자의 현역복무 문제는 군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사안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군에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성전환자의 기본권 침해문제가 군에서 먼저 제기되었고 차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므로 군사적인 측면, 장병의 인식 측면뿐만 아니라 법률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방안 중에서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고 성전환자의 기본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장병의 의식과 시대 상황에 따른 변화에 대해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일란. (2006). 『성전환자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나영정 외. (2013). 『트랜스젠더 로드맵』.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 법.

박기주. (2013). "전환자의 성별기준에 관한 입법적 과제." 『입법과 정책』, 제5권 제2호.

장서연.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박한희. (2018). "트랜스젠더 정체성의 비병리화 담론의 전개와 인권적 의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 개정을 앞두고." 『인권연구』, Vol. 1, No. 1 한국인권학회.

음선필. (2019). "욕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장수아, 남재일. (2022). "한국 신문의 트랜스젠터 재현 – 취재관행 및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제22권 제2호.

홍성수. (2020). 『트렌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2022).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22. 2. 16.).

국회 국방위원회. (2022). 군 동성애 및 젠더 군 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22. 10. 12.).

Council of Europe. (2015). *Protecting Human Rights of Transgender Persons.*

Lewis, C. Daniel, et al. (2021). "Public Attitudes on Transgender Military Service: The Role of Gender." *Armed Forces & Society,* Vol. 47(2).

Coleman, Eli, et al. (2012). *Standard of Care for the Health of Transsexual, Transgender, and Gender-Nonconforming People.* 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Grinspan, Mauro Cabral, et al. (2017). *The Yogyakarta Principles plus 10.* www.Yogyakartaprinciples.org.

Hillman. (2020). *Human Rights of Armed Forces Personnel: Compendium of Standards Good Practices Recommendations.* Geneva Centre for Security Sector Governance.

Marjolein Van Den Brink, et al. (2018). *Trans and Intersex Equality Rights in Europe.* EU Commission.

Okros, Alan, and Denise Scott. (2015). "Gender Identity in the Canadian Forces."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41, No. 2.

Polchar, Joshua, et al. (2014). *LGBT Military Personnel: A Strategic Vision for Inclusion.* The Hague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Schaefer, Aqgnes Gereben, et al. (2016). *Assessing the Implications of Allowing Transgender Personnel to Serve Openly.* Rand Corporation.

Steering Committee on Anti-discrimination, Diversity and Inclusion. (2022). *Thematic Report on Legal Gender Recognition in Europe.* Council of Europe.

UNODC. (2009). *Handbook on Prisoners with Special Needs.*

Quinn, Sheila. (2010). *An Activist's Guide to the Yogyakarta Principles.* Hivos.

Australian Air force. *Air force Transgender and Gender Affirmation Guide.*

United Kingdom. Ministry of Defence. JSP 889 Police for the Recruitment and Management of Transgender Personnel in the Armed Forces.

United States. Directive-Type Memo 16-005(Military Service of Transgender Service Members)(2016. 6. 30.).

United States. Presidential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regarding Military Service by Transgender Individuals(2018. 3. 23.).

United States. Directive-Type Memo 19-004(Military Service by Transgender Persons and Persons with Gender Dysphoria)(2019. 3. 12.).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on Preventing and Combat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2021. 1. 20.).

United States. DoD Instruction 1300.28 In-Service Transition for Transgender Service Members.

United States. DoD Instruction 6130.03 Medical Standards for Military Service: Appointment, Enlistment, or Induction.

부 록

1. 부대 방문 장병 대상 면담 내용
2. 대국민 조사 설문지 및 설문결과
3. 장병 대상 조사 설문지

[부록 1] 부대 방문 장병 대상 면담 내용

1. 면담 일정

일자	방문부대	면담대상
4. 19.(화)	15사단	지휘관, 간부, 병
4. 21.(목)	15전투비행단	
4. 28.목)	1사단	
5. 3.(화)	2함대사	
5. 9.(월)	계룡대	육·해·공군 간부
5. 10.(화)	계룡대	
5. 17.(화)	육군사관학교	생도(2, 3, 4학년)

2. 면담 대상 ※ 그룹별 집단 토의 및 그룹별 5~7명 선정 (계층별, 신분별, 성별, 병과별 균등 편성)

구분				방문부대		
그룹	성별	병과	신분	야전	정책	육사
지휘관(부서장)	남	전투	영관	1	1	1
			위관	1	-	1
			부사관	-	-	-
		기행	영관	1	1	1
			위관	-	-	1
			부사관	-	-	-
	여	전투	영관	1	1	1
			위관	1	-	1
			부사관	-	-	-
		기행	영관	1	1	1
			위관	1		1
			부사관	-	-	-
간부(실무자)	남	전투	영관	1	-	1
			위관	1	-	1
			부사관	1	-	-
		기행	영관	-	1	1
			위관	-	1	1
			부사관	-	1	-
	여	전투	영관	1	-	1
			위관	1	-	1
			부사관	1	-	-
		기행	영관	-	1	1
			위관	-	1	1
			부사관	-	1	-
병(생도)	남			5~7명	-	4명
	여			-	-	4명

3. 면담 질문지

구분		질문 내용 *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는 항상 이유를 청취
대분류	중분류	
현재 인식	고정관념	. 성전환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 성전환자는 정신적 질병인지? . 성전환자와 함께 복무하는 것은 부대단결을 저해할 것인지? . 성전환자에게 부대임무를 맡기는 것이 불편할 것인지?
	인간관계	. 성전환자와 함께 복무할 의사가 있는지? . 성전환자와 함께 일하면 어떤 점이 불편할 것인지? .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성전환자임이 밝혀진다면 예전과 달리 대할 것인지? . 성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면 거부할 것인지?
	인권의식	. 성전환자도 군 복무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성전환자도 일반인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지? . 성전환자를 위한 별도의 환경(시설, 법·제도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예상 되는 문제	임무달성	.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부대의 임무달성에 영향이 없는지? . 기타 부대 임무달성에 저해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부대단결	. 부대원의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 성소수자의 군 복무로 인해 타인에 대한 배려와 화합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 기타 부대단결에 저해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병영생활	. 성전환자에 의한 역차별이 예상되는지? . 성전환자의 군 복무로 인해 달라질 병영문화(군기강, 사기, 단결 등)가 있다면? . 기타 병영생활에 저해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해결 해야 할 과제	복무요건	.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에 대한 의견 . 성전환자의 현역복무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과 허용 시기
	부대환경	. 성전환자를 위한 부대시설은 무엇이 필요한지? . 성전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타 환경적 조치(지휘관 교육, 인권 교육 등)는 무엇이 있는지?
	법·제도	.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점은? (입영, 복무, 보직, 진급, 인사, 복지 등)

[부록 2] 대국민 조사 설문지 및 설문결과

I. 설문 개요 및 내용

1. 설문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케이스탯리서치 K패널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응답(협조)율	· 조사요청 2,830명, 조사참여 1,17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41.4%, 참여대비 85.3%)
조사일시	· 2022년 5월 20일(금) ~ 5월 23일(월)
조사/실사기관	· KIDA/(주)케이스탯컨설팅

2. 설문 내용

1. 귀하는 성전환자의 개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음

2) 대체로 알고 있음

3) 대체로 잘 모름

4) 전혀 알지 못함

성정체성 (gender identity)	지정 성별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전환자 (Transgender)	남성 여성 간성(intersex)	동성애자 (homosexual) Lesbian, Gay 양성애자 (Bisexual)

성적지향은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의 문제입니다(이성애자가 보편적이나 동성, 양성, 무성애자도 존재). 성전환은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sex)과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gender)이 달라 외모, 신체특징, 성 역할을 자신의 인식된 성정체성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는데, 인식된 성으로 외모, 복장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외모의 변화와 더불어 호르몬 치료, 필요시 성전환 수술을 실시하는 다양한 성전환자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과거 성전환 수술이나 생식능력의 상실에 관한 전문의의 감정서를 성별정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하다가, 2020년 2월부터 이러한 서류를 '참고서면'으로 변경하여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귀하는 주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전환자를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까?
1) 있음
2) 없음

미국,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일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 등의 국가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재 「병역법」은 법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별불일치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군 복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여성으로 성별정정이 되지 않았다면 남성으로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남성이므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성별불일치로 인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군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3) 성별불일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군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군 복무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할 수 있다.
4) 성별불일치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군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4. 현재 「병역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병사로 군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2)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3)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성전환(여성→남성, 남성→여성) 간부(장교, 준·부사관)의 군 복무 허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2)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군에서 수용할 수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3)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4)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4, 5, 문항에서 하나라도 1), 2), 3)항을 선택하신 경우

4.5-1.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인권 존중 및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2)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급적 복무 기준을 충족한 성전환자 간부나 병사를 활용해야 하므로
3) 복무 기준만 충족한다면 군의 단결이나 준비태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4)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할 때 군은 성별보다 군인으로서 능력을 중요시해야 하므로
5) 기타( )

4, 5, 문항에서 하나라도 4)항을 선택하신 경우

4.5-2.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부대 단합 및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 우려 때문에(다른 동료나 부하들이 함께 복무하기를 꺼려)
2) 임무/업무 수행 역량 부족 우려 때문에
3) 성전환자 개인의 단체생활 부적응 및 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4) 소수의 인원을 위해 시설이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5) 기타 ( )

6. 만약 성전환 장병에 대해 군 복무를 허용한다면,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법적인 성별정정과 무관하게 전문의에 의해 성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사람
2)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성별정정이 완료된 사람
3)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별정정이 완료된 사람
4)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

7. 만약 성전환 장병에 대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면, 입대 시기와 관련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입대 전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2) 입대 후 복무 중에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인정
3)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

8. 만약 성전환 장병에 대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면, 군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성전환 관련 문제의 상담이나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확보
2) 성전환자 치료비/수술비 지원
3) 성전환자에 대한 장병의 인식 개선
4) 성전환자와 기존 복무자 간의 갈등 관리
5) 화장실, 샤워장, 숙소 등 부대시설 확충
6) 성전환자를 고려한 부대 공동생활 규칙 제/개정
7) 기타 ( )

종교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원불교 5) 이슬람교 6) 기타

성별

1) 남성 2) 여성 3) 기타

※ 개인 항목 성별 사항 중 "3) 기타"를 선택하신 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전환 남성
2) 성전환 여성
3)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남성
4)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여성

II. 설문 결과

1. 응답자 특성표

(단위 : %)

거주지역		
서울	(189)	18.9
인천/경기	(316)	31.6
대전/세종/충청	(107)	10.7
광주/전라	(100)	10.0
대구/경북	(97)	9.7
부산/울산/경남	(148)	14.8
강원/제주	(43)	4.3
학력		
고졸이하	(257)	25.7
대재이상	(743)	74.3

직업		
농/임/어업	(12)	1.2
자영업	(102)	10.2
판매/영업/서비스	(78)	7.8
생산/기능/노무	(94)	9.4
사무/관리/전문	(320)	32.0
주부	(194)	19.4
학생	(44)	4.4
무직/퇴직/기타	(156)	15.6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34.5
비정규직근로자	(127)	12.7
고용원있는자영업	(80)	8.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8.4
무급가족종사자	(81)	8.1
비경제활동	(283)	28.3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14.3
200-300만원	(191)	19.1
300-400만원	(204)	20.4
400-500만원	(137)	13.7
500-600만원	(107)	10.7
600-700만원	(78)	7.8
700만원이상	(140)	14.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37.5
중도(5)	(427)	42.7
보수(0-4)	(198)	19.8
종교		
기독교	(242)	24.2
천주교	(140)	14.0
불교	(270)	27.0
원불교	(27)	2.7
이슬람교	(12)	1.2
기타	(1)	0.1
무교	(308)	30.8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0.7
성전환 여성	(3)	0.3
비정체화 남성	(65)	6.5
비정체화 여성	(51)	5.1
해당사항 없음	(874)	87.4

2. 설문조사 결과

(성전환자 개념 인지도) 귀하는 성전환자의 개념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② 대체로 알고 있음	①+② 알고 있음	③ 대체로 잘 모름	④ 전혀 알지 못함	③+④ 모름	계
▣ 전체 ▣	(1000)	8.4	57.3	65.7	28.5	5.8	34.3	100.0
성별								
남자	(497)	10.9	58.4	69.2	25.6	5.2	30.8	100.0
여자	(503)	6.0	56.3	62.2	31.4	6.4	37.8	100.0
연령								
18-29세	(171)	10.5	51.5	62.0	26.9	11.1	38.0	100.0
30-39세	(149)	7.4	53.7	61.1	30.2	8.7	38.9	100.0
40-49세	(187)	8.0	62.0	70.1	25.1	4.8	29.9	100.0
50-59세	(196)	8.2	63.8	71.9	24.0	4.1	28.1	100.0
60세이상	(297)	8.1	55.2	63.3	33.7	3.0	36.7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7.9	57.1	65.1	29.1	5.8	34.9	100.0
인천/경기	(316)	10.4	59.2	69.6	25.9	4.4	30.4	100.0
대전/세종/충청	(107)	6.5	63.6	70.1	20.6	9.3	29.9	100.0
광주/전라	(100)	3.0	57.0	60.0	28.0	12.0	40.0	100.0
대구/경북	(97)	5.2	60.8	66.0	32.0	2.1	34.0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0.8	47.3	58.1	36.5	5.4	41.9	100.0
강원/제주	(43)	11.6	55.8	67.4	30.2	2.3	32.6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5.8	56.4	62.3	31.1	6.6	37.7	100.0
대재이상	(743)	9.3	57.6	66.9	27.6	5.5	33.1	100.0
직업								
농/임/어업	(12)	8.3	75.0	83.3	16.7	0.0	16.7	100.0
자영업	(102)	12.7	56.9	69.6	26.5	3.9	30.4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9.0	60.3	69.2	29.5	1.3	30.8	100.0
생산/기능/노무	(94)	8.5	46.8	55.3	37.2	7.4	44.7	100.0
사무/관리/전문	(320)	8.4	61.3	69.7	25.0	5.3	30.3	100.0
주부	(194)	5.2	56.7	61.9	34.0	4.1	38.1	100.0
학생	(44)	15.9	43.2	59.1	27.3	13.6	40.9	100.0
무직/퇴직/기타	(156)	7.1	57.7	64.7	25.6	9.6	35.3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8.4	60.6	69.0	25.5	5.5	31.0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14.2	55.9	70.1	25.2	4.7	29.9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7.5	53.8	61.3	38.8	0.0	38.8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9.5	56.0	65.5	28.6	6.0	34.5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6.2	48.1	54.3	40.7	4.9	45.7	100.0
비경제활동	(283)	6.4	58.0	64.3	27.2	8.5	35.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8.4	47.6	55.9	27.3	16.8	44.1	100.0
200-300만원	(191)	7.3	55.5	62.8	31.9	5.2	37.2	100.0
300-400만원	(204)	7.8	57.8	65.7	30.4	3.9	34.3	100.0
400-500만원	(137)	5.8	58.4	64.2	32.8	2.9	35.8	100.0
500-600만원	(107)	5.6	57.9	63.6	29.0	7.5	36.4	100.0
600-700만원	(78)	9.0	61.5	70.5	26.9	2.6	29.5	100.0
700만원이상	(140)	15.0	65.0	80.0	18.6	1.4	20.0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8.8	62.9	71.7	24.3	4.0	28.3	100.0
중도(5)	(427)	6.1	54.3	60.4	30.9	8.7	39.6	100.0
보수(0-4)	(198)	12.6	53.0	65.7	31.3	3.0	34.3	100.0
종교								
기독교	(242)	9.9	54.5	64.5	28.9	6.6	35.5	100.0
천주교	(140)	10.0	56.4	66.4	25.0	8.6	33.6	100.0
불교	(270)	7.0	55.2	62.2	34.1	3.7	37.8	100.0
원불교	(27)	3.7	51.9	55.6	40.7	3.7	44.4	100.0
이슬람교	(12)	0.0	50.0	50.0	50.0	0.0	50.0	100.0
기타	(1)	100.0	0.0	100.0	0.0	0.0	0.0	100.0
무교	(308)	8.1	62.7	70.8	23.1	6.2	29.2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57.1	28.6	85.7	14.3	0.0	14.3	100.0
성전환 여성	(3)	0.0	33.3	33.3	66.7	0.0	66.7	100.0
비정체화 남성	(65)	3.1	58.5	61.5	33.8	4.6	38.5	100.0
비정체화 여성	(51)	2.0	51.0	52.9	47.1	0.0	47.1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8.8	57.9	66.7	27.0	6.3	33.3	100.0

(성전환자 경험 여부) 귀하는 주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전환자를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있음	없음	계
▣ 전체 ▣	(1000)	10.8	89.2	100.0
성별				
남자	(497)	12.3	87.7	100.0
여자	(503)	9.3	90.7	100.0
연령				
18-29세	(171)	11.7	88.3	100.0
30-39세	(149)	20.1	79.9	100.0
40-49세	(187)	13.9	86.1	100.0
50-59세	(196)	5.6	94.4	100.0
60세이상	(297)	7.1	92.9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13.2	86.8	100.0
인천/경기	(316)	12.7	87.3	100.0
대전/세종/충청	(107)	10.3	89.7	100.0
광주/전라	(100)	6.0	94.0	100.0
대구/경북	(97)	7.2	92.8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1.5	88.5	100.0
강원/제주	(43)	4.7	95.3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7.0	93.0	100.0
대재이상	(743)	12.1	87.9	100.0
직업				
농/임/어업	(12)	16.7	83.3	100.0
자영업	(102)	13.7	86.3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15.4	84.6	100.0
생산/기능/노무	(94)	22.3	77.7	100.0
사무/관리/전문	(320)	9.7	90.3	100.0
주부	(194)	5.7	94.3	100.0
학생	(44)	18.2	81.8	100.0
무직/퇴직/기타	(156)	5.8	94.2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10.1	89.9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13.4	86.6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28.8	71.3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11.9	88.1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6.2	93.8	100.0
비경제활동	(283)	6.4	93.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10.5	89.5	100.0
200-300만원	(191)	12.0	88.0	100.0
300-400만원	(204)	12.3	87.7	100.0
400-500만원	(137)	10.2	89.8	100.0
500-600만원	(107)	6.5	93.5	100.0
600-700만원	(78)	10.3	89.7	100.0
700만원이상	(140)	11.4	88.6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16.0	84.0	100.0
중도(5)	(427)	6.6	93.4	100.0
보수(0-4)	(198)	10.1	89.9	100.0
종교				
기독교	(242)	12.4	87.6	100.0
천주교	(140)	9.3	90.7	100.0
불교	(270)	9.6	90.4	100.0
원불교	(27)	40.7	59.3	100.0
이슬람교	(12)	33.3	66.7	100.0
기타	(1)	0.0	100.0	100.0
무교	(308)	7.8	92.2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100.0	0.0	100.0
성전환 여성	(3)	0.0	100.0	100.0
비정체화 남성	(65)	23.1	76.9	100.0
비정체화 여성	(51)	15.7	84.3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8.9	91.1	100.0

(병역법상 성별불일치로 인한 군 복무 제한 의견) 현재 「병역법」은 법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별불일치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 군 복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여성으로 성별정정이 되지 않았다면 남성으로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남성이므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성별불일치로 인해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군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성별불일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군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군 복무를 강력하게 원하는 경우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할 수 있다	성별불일치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확인된다면 군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계
▣ 전체 ▣	(1000)	13.5	40.6	28.7	17.2	100.0
성별						
남자	(497)	10.5	41.9	29.6	18.1	100.0
여자	(503)	16.5	39.4	27.8	16.3	100.0
연령						
18-29세	(171)	16.4	45.6	22.8	15.2	100.0
30-39세	(149)	10.7	47.7	28.9	12.8	100.0
40-49세	(187)	9.1	42.8	30.5	17.6	100.0
50-59세	(196)	14.8	33.2	31.1	20.9	100.0
60세이상	(297)	15.2	37.7	29.3	17.8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16.4	41.8	30.7	11.1	100.0
인천/경기	(316)	10.1	43.4	28.2	18.4	100.0
대전/세종/충청	(107)	11.2	42.1	24.3	22.4	100.0
광주/전라	(100)	11.0	38.0	31.0	20.0	100.0
대구/경북	(97)	11.3	42.3	26.8	19.6	100.0
부산/울산/경남	(148)	20.9	35.1	26.4	17.6	100.0
강원/제주	(43)	16.3	32.6	41.9	9.3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13.2	35.8	29.6	21.4	100.0
대재이상	(743)	13.6	42.3	28.4	15.7	100.0
직업						
농/임/어업	(12)	33.3	41.7	25.0	0.0	100.0
자영업	(102)	10.8	43.1	26.5	19.6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16.7	37.2	21.8	24.4	100.0
생산/기능/노무	(94)	7.4	44.7	36.2	11.7	100.0
사무/관리/전문	(320)	11.9	42.8	29.1	16.3	100.0
주부	(194)	18.6	34.5	28.4	18.6	100.0
학생	(44)	20.5	45.5	18.2	15.9	100.0
무직/퇴직/기타	(156)	10.9	39.7	32.1	17.3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11.3	41.4	29.3	18.0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15.0	39.4	29.1	16.5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20.0	51.3	21.3	7.5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4.8	44.0	31.0	20.2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19.8	40.7	21.0	18.5	100.0
비경제활동	(283)	14.5	36.0	31.4	18.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14.7	37.8	27.3	20.3	100.0
200-300만원	(191)	14.7	42.9	25.1	17.3	100.0
300-400만원	(204)	14.2	38.7	29.4	17.6	100.0
400-500만원	(137)	8.8	46.7	22.6	21.9	100.0
500-600만원	(107)	12.1	37.4	36.4	14.0	100.0
600-700만원	(78)	15.4	37.2	25.6	21.8	100.0
700만원이상	(140)	14.3	41.4	35.7	8.6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13.1	48.5	28.8	9.6	100.0
중도(5)	(427)	14.1	35.4	30.0	20.6	100.0
보수(0-4)	(198)	13.1	36.9	25.8	24.2	100.0
종교						
기독교	(242)	14.9	47.9	19.0	18.2	100.0
천주교	(140)	10.0	42.1	28.6	19.3	100.0
불교	(270)	19.3	35.6	29.3	15.9	100.0
원불교	(27)	3.7	59.3	29.6	7.4	100.0
이슬람교	(12)	0.0	50.0	33.3	16.7	100.0
기타	(1)	0.0	0.0	0.0	100.0	100.0
무교	(308)	10.4	36.7	35.7	17.2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57.1	28.6	14.3	0.0	100.0
성전환 여성	(3)	0.0	66.7	0.0	33.3	100.0
비정체화 남성	(65)	16.9	44.6	26.2	12.3	100.0
비정체화 여성	(51)	15.7	51.0	21.6	11.8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12.8	39.7	29.5	18.0	100.0

(남성 성전환자 병사 복무 관련 의견) 현재 「병역법」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사람이 병사로 군 복무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전환자의 병사로서 군 복무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계
▣ 전체 ▣	(1000)	11.4	44.5	26.9	17.2	100.0
성별						
남자	(497)	11.7	43.7	25.6	19.1	100.0
여자	(503)	11.1	45.3	28.2	15.3	100.0
연령						
18-29세	(171)	11.1	42.7	31.0	15.2	100.0
30-39세	(149)	7.4	48.3	28.9	15.4	100.0
40-49세	(187)	9.6	46.5	25.7	18.2	100.0
50-59세	(196)	18.9	35.2	27.0	18.9	100.0
60세이상	(297)	9.8	48.5	24.2	17.5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11.1	52.4	24.9	11.6	100.0
인천/경기	(316)	10.4	42.1	29.7	17.7	100.0
대전/세종/충청	(107)	9.3	37.4	30.8	22.4	100.0
광주/전라	(100)	10.0	51.0	20.0	19.0	100.0
대구/경북	(97)	5.2	41.2	30.9	22.7	100.0
부산/울산/경남	(148)	18.2	40.5	23.6	17.6	100.0
강원/제주	(43)	18.6	51.2	23.3	7.0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8.6	45.9	24.9	20.6	100.0
대재이상	(743)	12.4	44.0	27.6	16.0	100.0
직업						
농/임/어업	(12)	8.3	50.0	41.7	0.0	100.0
자영업	(102)	10.8	51.0	23.5	14.7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16.7	42.3	24.4	16.7	100.0
생산/기능/노무	(94)	5.3	46.8	27.7	20.2	100.0
사무/관리/전문	(320)	11.6	43.1	27.8	17.5	100.0
주부	(194)	10.8	44.8	28.9	15.5	100.0
학생	(44)	18.2	38.6	27.3	15.9	100.0
무직/퇴직/기타	(156)	11.5	43.6	24.4	20.5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11.9	45.5	23.8	18.8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11.8	39.4	30.7	18.1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10.0	46.3	33.8	10.0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8.3	52.4	25.0	14.3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17.3	35.8	30.9	16.0	100.0
비경제활동	(283)	10.2	45.2	26.5	18.0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12.6	37.1	28.0	22.4	100.0
200-300만원	(191)	11.5	46.6	23.0	18.8	100.0
300-400만원	(204)	7.8	46.1	30.9	15.2	100.0
400-500만원	(137)	10.9	43.1	27.7	18.2	100.0
500-600만원	(107)	13.1	44.9	29.9	12.1	100.0
600-700만원	(78)	12.8	37.2	28.2	21.8	100.0
700만원이상	(140)	13.6	52.1	21.4	12.9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12.3	53.3	23.7	10.7	100.0
중도(5)	(427)	11.2	37.7	32.3	18.7	100.0
보수(0-4)	(198)	10.1	42.4	21.2	26.3	100.0
종교						
기독교	(242)	11.6	41.7	26.9	19.8	100.0
천주교	(140)	11.4	45.0	28.6	15.0	100.0
불교	(270)	13.7	47.0	24.4	14.8	100.0
원불교	(27)	3.7	63.0	29.6	3.7	100.0
이슬람교	(12)	0.0	33.3	41.7	25.0	100.0
기타	(1)	0.0	0.0	0.0	100.0	100.0
무교	(308)	10.4	43.2	27.6	18.8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28.6	42.9	28.6	0.0	100.0
성전환 여성	(3)	0.0	66.7	0.0	33.3	100.0
비정체화 남성	(65)	9.2	50.8	29.2	10.8	100.0
비정체화 여성	(51)	3.9	51.0	33.3	11.8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11.9	43.6	26.4	18.1	100.0

(성전환자 군 간부 복무 관련 의견) 성전환(여성→남성, 남성→여성) 간부(장교, 준·부사관)의 군 복무 허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군에서 수용할 수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나, 군에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성전환자의 간부로서 군 복무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계
▣ 전체 ▣	(1000)	8.4	42.2	29.2	20.2	100.0
성별						
남자	(497)	8.0	41.4	27.6	22.9	100.0
여자	(503)	8.7	42.9	30.8	17.5	100.0
연령						
18-29세	(171)	7.6	38.6	32.2	21.6	100.0
30-39세	(149)	6.7	40.9	36.2	16.1	100.0
40-49세	(187)	8.6	41.2	29.9	20.3	100.0
50-59세	(196)	10.7	43.9	24.0	21.4	100.0
60세이상	(297)	8.1	44.4	26.9	20.5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6.9	47.6	32.3	13.2	100.0
인천/경기	(316)	9.5	39.9	30.4	20.3	100.0
대전/세종/충청	(107)	8.4	41.1	28.0	22.4	100.0
광주/전라	(100)	10.0	39.0	28.0	23.0	100.0
대구/경북	(97)	5.2	35.1	27.8	32.0	100.0
부산/울산/경남	(148)	8.8	43.2	27.7	20.3	100.0
강원/제주	(43)	9.3	58.1	20.9	11.6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7.0	43.6	30.0	19.5	100.0
대재이상	(743)	8.9	41.7	28.9	20.5	100.0
직업						
농/임/어업	(12)	8.3	66.7	25.0	0.0	100.0
자영업	(102)	9.8	45.1	24.5	20.6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12.8	44.9	24.4	17.9	100.0
생산/기능/노무	(94)	1.1	36.2	36.2	26.6	100.0
사무/관리/전문	(320)	9.1	40.0	32.2	18.8	100.0
주부	(194)	7.2	44.8	28.4	19.6	100.0
학생	(44)	11.4	40.9	25.0	22.7	100.0
무직/퇴직/기타	(156)	9.0	42.3	26.9	21.8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9.3	40.6	28.7	21.4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10.2	43.3	25.2	21.3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3.8	47.5	38.8	10.0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9.5	39.3	31.0	20.2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8.6	43.2	33.3	14.8	100.0
비경제활동	(283)	7.4	42.8	27.2	22.6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10.5	37.8	28.0	23.8	100.0
200-300만원	(191)	7.3	41.4	32.5	18.8	100.0
300-400만원	(204)	5.4	50.0	26.5	18.1	100.0
400-500만원	(137)	5.1	44.5	27.7	22.6	100.0
500-600만원	(107)	11.2	34.6	37.4	16.8	100.0
600-700만원	(78)	11.5	32.1	29.5	26.9	100.0
700만원이상	(140)	11.4	45.7	25.0	17.9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9.3	47.5	30.4	12.8	100.0
중도(5)	(427)	8.4	37.9	30.9	22.7	100.0
보수(0-4)	(198)	6.6	41.4	23.2	28.8	100.0
종교						
기독교	(242)	5.8	44.2	27.7	22.3	100.0
천주교	(140)	9.3	44.3	26.4	20.0	100.0
불교	(270)	10.4	41.5	31.9	16.3	100.0
원불교	(27)	0.0	37.0	48.1	14.8	100.0
이슬람교	(12)	0.0	8.3	75.0	16.7	100.0
기타	(1)	0.0	0.0	0.0	100.0	100.0
무교	(308)	9.4	42.2	26.0	22.4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28.6	57.1	0.0	14.3	100.0
성전환 여성	(3)	0.0	33.3	66.7	0.0	100.0
비정체화 남성	(65)	6.2	41.5	36.9	15.4	100.0
비정체화 여성	(51)	0.0	43.1	47.1	9.8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8.9	42.1	27.7	21.3	100.0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이유) (문18, 문19에서 하나라도 ①, ②, ③을 선택한 경우)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Base=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한 응답자	사례수 (명)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할 때 군은 성별보다 군인으로서 능력을 중요시해야 하므로	인권 존중 및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복무 기준만 충족한다면 군의 단결이나 준비태세에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급적 복무 기준을 충족한 성전환자 간부나 병사를 활용해야 하므로	기타	계
▣ 전체 ▣	(857)	28.2	28.1	24.7	18.2	0.7	100.0
성별							
남자	(412)	27.9	26.2	23.3	22.3	0.2	100.0
여자	(445)	28.5	29.9	26.1	14.4	1.1	100.0
연령							
18-29세	(149)	18.1	19.5	34.9	25.5	2.0	100.0
30-39세	(130)	24.6	22.3	30.8	22.3	0.0	100.0
40-49세	(158)	27.8	32.9	19.0	19.6	0.6	100.0
50-59세	(164)	28.0	31.1	26.8	13.4	0.6	100.0
60세이상	(256)	36.3	31.3	18.0	14.1	0.4	100.0
거주지역							
서울	(174)	21.3	25.9	26.4	25.9	0.6	100.0
인천/경기	(268)	34.3	32.8	19.8	11.9	1.1	100.0
대전/세종/충청	(85)	29.4	23.5	28.2	18.8	0.0	100.0
광주/전라	(85)	24.7	22.4	30.6	22.4	0.0	100.0
대구/경북	(79)	27.8	25.3	29.1	17.7	0.0	100.0
부산/울산/경남	(126)	26.2	23.8	29.4	19.0	1.6	100.0
강원/제주	(40)	30.0	47.5	7.5	15.0	0.0	100.0
학력							
고졸이하	(219)	35.2	28.3	20.1	15.5	0.9	100.0
대재이상	(638)	25.9	28.1	26.3	19.1	0.6	100.0
직업							
농/임/어업	(12)	16.7	16.7	41.7	25.0	0.0	100.0
자영업	(88)	21.6	29.5	28.4	20.5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68)	29.4	36.8	19.1	13.2	1.5	100.0
생산/기능/노무	(77)	35.1	16.9	31.2	16.9	0.0	100.0
사무/관리/전문	(272)	23.2	29.0	25.4	22.4	0.0	100.0
주부	(170)	32.4	30.0	22.4	14.7	0.6	100.0
학생	(39)	15.4	28.2	30.8	23.1	2.6	100.0
무직/퇴직/기타	(131)	38.2	26.0	19.8	13.7	2.3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286)	26.6	29.4	21.3	22.4	0.3	100.0
비정규직근로자	(111)	32.4	33.3	15.3	18.9	0.0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75)	16.0	17.3	48.0	18.7	0.0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73)	21.9	27.4	35.6	13.7	1.4	100.0
무급가족종사자	(71)	29.6	29.6	21.1	19.7	0.0	100.0
비경제활동	(241)	33.6	27.4	23.7	13.7	1.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18)	31.4	27.1	21.2	19.5	0.8	100.0
200-300만원	(165)	25.5	32.1	26.7	15.2	0.6	100.0
300-400만원	(178)	32.0	19.1	29.8	18.5	0.6	100.0
400-500만원	(116)	26.7	25.0	30.2	18.1	0.0	100.0
500-600만원	(96)	26.0	34.4	18.8	20.8	0.0	100.0
600-700만원	(61)	19.7	45.9	18.0	14.8	1.6	100.0
700만원이상	(123)	30.9	26.0	21.1	20.3	1.6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45)	22.9	31.9	24.9	19.7	0.6	100.0
중도(5)	(359)	27.9	27.3	27.6	17.0	0.3	100.0
보수(0-4)	(153)	41.2	21.6	17.6	17.6	2.0	100.0
종교							
기독교	(200)	27.5	26.0	23.5	23.0	0.0	100.0
천주교	(125)	21.6	36.8	19.2	20.8	1.6	100.0
불교	(238)	24.8	30.3	27.3	17.2	0.4	100.0
원불교	(26)	7.7	7.7	80.8	3.8	0.0	100.0
이슬람교	(11)	54.5	0.0	36.4	9.1	0.0	100.0
무교	(257)	36.2	26.8	19.8	16.0	1.2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0.0	28.6	28.6	42.9	0.0	100.0
성전환 여성	(3)	0.0	0.0	0.0	100.0	0.0	100.0
비정체화 남성	(60)	20.0	15.0	43.3	21.7	0.0	100.0
비정체화 여성	(48)	14.6	14.6	54.2	12.5	4.2	100.0
해당사항 없음	(739)	30.2	30.2	21.4	17.7	0.5	100.0

(성전환자 군 복무 불가 이유) (문18, 문19에서 하나라도 ④를 선택한 경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Base=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응답자	사례수 (명)	성전환자 개인의 단체생활 부적응 및 사고 발생 우려 때문에	부대 단합 및 군 사기에 부정적 영향 우려 때문에(다른 동료나 부하들이 함께 복무하기를 꺼려)	소수의 인원을 위해 시설이나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임무/업무 수행 역량 부족 우려 때문에	기타	계
▣ 전체 ▣	(231)	38.5	29.4	26.0	4.3	1.7	100.0
성별							
남자	(124)	35.5	32.3	25.0	4.8	2.4	100.0
여자	(107)	42.1	26.2	27.1	3.7	0.9	100.0
연령							
18-29세	(41)	48.8	17.1	24.4	7.3	2.4	100.0
30-39세	(28)	32.1	32.1	28.6	3.6	3.6	100.0
40-49세	(43)	34.9	18.6	39.5	2.3	4.7	100.0
50-59세	(47)	38.3	38.3	23.4	0.0	0.0	100.0
60세이상	(72)	37.5	36.1	19.4	6.9	0.0	100.0
거주지역							
서울	(32)	40.6	28.1	18.8	6.3	6.3	100.0
인천/경기	(72)	36.1	30.6	29.2	1.4	2.8	100.0
대전/세종/충청	(26)	38.5	30.8	23.1	7.7	0.0	100.0
광주/전라	(27)	51.9	22.2	25.9	0.0	0.0	100.0
대구/경북	(35)	31.4	31.4	34.3	2.9	0.0	100.0
부산/울산/경남	(34)	38.2	32.4	17.6	11.8	0.0	100.0
강원/제주	(5)	40.0	20.0	40.0	0.0	0.0	100.0
학력							
고졸이하	(65)	40.0	21.5	35.4	3.1	0.0	100.0
대재이상	(166)	38.0	32.5	22.3	4.8	2.4	100.0
직업							
농/임/어업							100.0
자영업	(22)	40.9	36.4	22.7	0.0	0.0	100.0
판매/영업/서비스	(17)	41.2	29.4	23.5	5.9	0.0	100.0
생산/기능/노무	(27)	37.0	40.7	22.2	0.0	0.0	100.0
사무/관리/전문	(68)	33.8	29.4	26.5	7.4	2.9	100.0
주부	(44)	45.5	27.3	22.7	4.5	0.0	100.0
학생	(12)	58.3	16.7	25.0	0.0	0.0	100.0
무직/퇴직/기타	(41)	31.7	24.4	34.1	4.9	4.9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80)	32.5	32.5	25.0	7.5	2.5	100.0
비정규직근로자	(34)	38.2	32.4	26.5	2.9	0.0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11)	45.5	36.4	18.2	0.0	0.0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18)	44.4	27.8	27.8	0.0	0.0	100.0
무급가족종사자	(15)	46.7	13.3	33.3	6.7	0.0	100.0
비경제활동	(73)	41.1	27.4	26.0	2.7	2.7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41)	43.9	22.0	29.3	2.4	2.4	100.0
200-300만원	(46)	32.6	37.0	26.1	4.3	0.0	100.0
300-400만원	(42)	47.6	23.8	28.6	0.0	0.0	100.0
400-500만원	(35)	40.0	22.9	31.4	5.7	0.0	100.0
500-600만원	(20)	30.0	45.0	15.0	10.0	0.0	100.0
600-700만원	(21)	33.3	28.6	23.8	14.3	0.0	100.0
700만원이상	(26)	34.6	34.6	19.2	0.0	11.5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58)	39.7	27.6	22.4	5.2	5.2	100.0
중도(5)	(109)	37.6	27.5	33.0	1.8	0.0	100.0
보수(0-4)	(64)	39.1	34.4	17.2	7.8	1.6	100.0
종교							
기독교	(60)	41.7	28.3	20.0	6.7	3.3	100.0
천주교	(34)	32.4	29.4	32.4	2.9	2.9	100.0
불교	(52)	38.5	25.0	28.8	5.8	1.9	100.0
원불교	(4)	50.0	25.0	25.0	0.0	0.0	100.0
이슬람교	(4)	50.0	0.0	50.0	0.0	0.0	100.0
기타	(1)	0.0	100.0	0.0	0.0	0.0	100.0
무교	(76)	38.2	34.2	25.0	2.6	0.0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1)	0.0	100.0	0.0	0.0	0.0	100.0
성전환 여성	(1)	0.0	0.0	0.0	100.0	0.0	100.0
비정체화 남성	(12)	33.3	16.7	25.0	16.7	8.3	100.0
비정체화 여성	(8)	50.0	12.5	37.5	0.0	0.0	100.0
해당사항 없음	(209)	38.8	30.6	25.8	3.3	1.4	100.0

(성전환 장병 군 복무 허용 시 범위) 만약 성전환 장병에 대해 군 복무를 허용한다면,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성전환 수술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별정정이 완료된 사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성별정정이 완료된 사람	법적인 성별정정과 무관하게 전문의에 의해 성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 사람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	계
▣ 전체 ▣	(1000)	49.9	21.0	15.3	13.8	100.0
성별						
남자	(497)	45.9	20.9	16.3	16.9	100.0
여자	(503)	53.9	21.1	14.3	10.7	100.0
연령						
18-29세	(171)	44.4	27.5	15.2	12.9	100.0
30-39세	(149)	40.3	34.2	13.4	12.1	100.0
40-49세	(187)	48.1	23.5	14.4	13.9	100.0
50-59세	(196)	53.1	14.3	16.3	16.3	100.0
60세이상	(297)	56.9	13.5	16.2	13.5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46.6	31.7	13.2	8.5	100.0
인천/경기	(316)	52.2	19.3	13.3	15.2	100.0
대전/세종/충청	(107)	52.3	17.8	11.2	18.7	100.0
광주/전라	(100)	46.0	21.0	21.0	12.0	100.0
대구/경북	(97)	52.6	17.5	16.5	13.4	100.0
부산/울산/경남	(148)	45.9	18.9	18.9	16.2	100.0
강원/제주	(43)	58.1	9.3	20.9	11.6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54.9	14.4	16.3	14.4	100.0
대재이상	(743)	48.2	23.3	14.9	13.6	100.0
직업						
농/임/어업	(12)	41.7	16.7	41.7	0.0	100.0
자영업	(102)	50.0	17.6	15.7	16.7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50.0	15.4	20.5	14.1	100.0
생산/기능/노무	(94)	45.7	24.5	11.7	18.1	100.0
사무/관리/전문	(320)	46.3	27.2	14.1	12.5	100.0
주부	(194)	58.2	18.0	12.4	11.3	100.0
학생	(44)	38.6	29.5	22.7	9.1	100.0
무직/퇴직/기타	(156)	53.2	12.8	16.7	17.3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44.6	23.2	16.2	15.9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53.5	15.7	18.9	11.8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37.5	37.5	15.0	10.0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56.0	20.2	9.5	14.3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50.6	27.2	14.8	7.4	100.0
비경제활동	(283)	56.2	14.5	14.5	14.8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49.0	19.6	19.6	11.9	100.0
200-300만원	(191)	47.6	22.0	15.2	15.2	100.0
300-400만원	(204)	51.5	22.1	13.2	13.2	100.0
400-500만원	(137)	53.3	21.9	8.0	16.8	100.0
500-600만원	(107)	51.4	21.5	17.8	9.3	100.0
600-700만원	(78)	46.2	17.9	16.7	19.2	100.0
700만원이상	(140)	49.3	20.0	18.6	12.1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44.0	30.4	17.1	8.5	100.0
중도(5)	(427)	52.2	17.6	15.2	15.0	100.0
보수(0-4)	(198)	56.1	10.6	12.1	21.2	100.0
종교						
기독교	(242)	46.7	25.2	13.2	14.9	100.0
천주교	(140)	47.1	26.4	15.0	11.4	100.0
불교	(270)	50.4	19.6	17.8	12.2	100.0
원불교	(27)	25.9	55.6	7.4	11.1	100.0
이슬람교	(12)	66.7	25.0	0.0	8.3	100.0
기타	(1)	0.0	0.0	0.0	100.0	100.0
무교	(308)	54.9	13.3	16.2	15.6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14.3	57.1	28.6	0.0	100.0
성전환 여성	(3)	33.3	66.7	0.0	0.0	100.0
비정체화 남성	(65)	44.6	24.6	21.5	9.2	100.0
비정체화 여성	(51)	43.1	45.1	5.9	5.9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51.0	18.9	15.3	14.8	100.0

(성전환 장병 군 복무 허용 시 입대시기 제한) 만약 성전환 장병에 대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면, 입대 시기와 관련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입대 전 성별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인정	입대 후 복무 중에 성별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인정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면 안된다	계
▣ 전체 ▣	(1000)	43.8	34.9	21.3	100.0
성별					
남자	(497)	41.9	34.4	23.7	100.0
여자	(503)	45.7	35.4	18.9	100.0
연령					
18-29세	(171)	34.5	42.7	22.8	100.0
30-39세	(149)	30.2	43.6	26.2	100.0
40-49세	(187)	42.8	35.8	21.4	100.0
50-59세	(196)	46.4	31.1	22.4	100.0
60세이상	(297)	54.9	27.9	17.2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44.4	40.2	15.3	100.0
인천/경기	(316)	45.3	32.6	22.2	100.0
대전/세종/충청	(107)	48.6	32.7	18.7	100.0
광주/전라	(100)	35.0	43.0	22.0	100.0
대구/경북	(97)	42.3	27.8	29.9	100.0
부산/울산/경남	(148)	42.6	33.1	24.3	100.0
강원/제주	(43)	46.5	37.2	16.3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45.5	32.3	22.2	100.0
대재이상	(743)	43.2	35.8	21.0	100.0
직업					
농/임/어업	(12)	33.3	58.3	8.3	100.0
자영업	(102)	37.3	40.2	22.5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55.1	29.5	15.4	100.0
생산/기능/노무	(94)	38.3	31.9	29.8	100.0
사무/관리/전문	(320)	42.5	36.9	20.6	100.0
주부	(194)	48.5	32.0	19.6	100.0
학생	(44)	40.9	38.6	20.5	100.0
무직/퇴직/기타	(156)	44.2	32.7	23.1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44.3	33.3	22.3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55.9	27.6	16.5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21.3	56.3	22.5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39.3	38.1	22.6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44.4	35.8	19.8	100.0
비경제활동	(283)	45.2	32.9	21.9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43.4	34.3	22.4	100.0
200-300만원	(191)	38.7	37.2	24.1	100.0
300-400만원	(204)	40.2	39.2	20.6	100.0
400-500만원	(137)	46.0	29.9	24.1	100.0
500-600만원	(107)	47.7	36.4	15.9	100.0
600-700만원	(78)	50.0	28.2	21.8	100.0
700만원이상	(140)	47.9	33.6	18.6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42.1	42.9	14.9	100.0
중도(5)	(427)	41.9	33.7	24.4	100.0
보수(0-4)	(198)	51.0	22.2	26.8	100.0
종교					
기독교	(242)	42.1	36.8	21.1	100.0
천주교	(140)	45.0	37.9	17.1	100.0
불교	(270)	43.0	35.6	21.5	100.0
원불교	(27)	7.4	51.9	40.7	100.0
이슬람교	(12)	8.3	25.0	66.7	100.0
기타	(1)	0.0	0.0	100.0	100.0
무교	(308)	50.0	30.5	19.5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42.9	42.9	14.3	100.0
성전환 여성	(3)	33.3	66.7	0.0	100.0
비정체화 남성	(65)	27.7	46.2	26.2	100.0
비정체화 여성	(51)	19.6	58.8	21.6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46.5	32.5	21.1	100.0

(성전환 장병 군 복무 허용 시 군 우선 수행 과업) 만약 성전환 장병에 대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면, 군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성전환자에 대한 장병의 인식 개선	성전환자와 기존 복무자 간의 갈등 관리	성전환 관련 문제의 상담이나 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확보	성전환자를 고려한 부대 공동생활 규칙 제/개정	화장실, 샤워장, 숙소 등 부대시설 확충	성전환자 치료비/수술비 지원	기타	계
▣ 전체 ▣	(1000)	29.1	19.8	18.5	16.0	8.4	7.0	1.2	100.0
성별									
남자	(497)	28.4	18.9	19.9	15.3	7.6	8.0	1.8	100.0
여자	(503)	29.8	20.7	17.1	16.7	9.1	6.0	0.6	100.0
연령									
18-29세	(171)	31.6	21.6	12.9	11.1	9.4	12.3	1.2	100.0
30-39세	(149)	34.2	22.1	13.4	10.7	7.4	11.4	0.7	100.0
40-49세	(187)	29.9	19.3	18.2	15.5	9.1	5.9	2.1	100.0
50-59세	(196)	22.4	17.9	28.1	18.4	6.1	6.6	0.5	100.0
60세이상	(297)	29.0	19.2	18.2	20.2	9.4	2.7	1.3	100.0
거주지역									
서울	(189)	30.7	20.6	15.9	12.7	7.9	11.6	0.5	100.0
인천/경기	(316)	27.8	21.5	19.3	16.5	7.9	5.1	1.9	100.0
대전/세종/충청	(107)	23.4	19.6	16.8	20.6	10.3	8.4	0.9	100.0
광주/전라	(100)	35.0	15.0	17.0	17.0	8.0	7.0	1.0	100.0
대구/경북	(97)	29.9	20.6	19.6	15.5	8.2	5.2	1.0	100.0
부산/울산/경남	(148)	30.4	19.6	18.2	15.5	8.8	6.1	1.4	100.0
강원/제주	(43)	25.6	14.0	30.2	16.3	9.3	4.7	0.0	100.0
학력									
고졸이하	(257)	23.3	16.0	22.2	19.5	12.1	6.6	0.4	100.0
대재이상	(743)	31.1	21.1	17.2	14.8	7.1	7.1	1.5	100.0
직업									
농/임/어업	(12)	25.0	0.0	16.7	33.3	0.0	25.0	0.0	100.0
자영업	(102)	29.4	11.8	25.5	15.7	7.8	8.8	1.0	100.0
판매/영업/서비스	(78)	30.8	10.3	26.9	17.9	7.7	6.4	0.0	100.0
생산/기능/노무	(94)	31.9	18.1	9.6	19.1	10.6	9.6	1.1	100.0
사무/관리/전문	(320)	28.1	22.8	17.5	15.3	6.9	8.1	1.3	100.0
주부	(194)	25.3	25.3	20.6	16.5	8.2	3.6	0.5	100.0
학생	(44)	31.8	18.2	15.9	4.5	18.2	11.4	0.0	100.0
무직/퇴직/기타	(156)	32.7	19.9	15.4	16.0	9.0	3.8	3.2	100.0

직장지위									
정규직근로자	(345)	28.7	21.2	17.7	16.5	8.4	5.8	1.7	100.0
비정규직근로자	(127)	29.1	19.7	22.8	17.3	7.1	3.9	0.0	100.0
고용원있는자영업	(80)	37.5	11.3	16.3	7.5	5.0	22.5	0.0	100.0
고용원없는자영업	(84)	26.2	13.1	19.0	19.0	9.5	11.9	1.2	100.0
무급가족종사자	(81)	27.2	22.2	21.0	19.8	3.7	4.9	1.2	100.0
비경제활동	(283)	28.6	21.9	17.3	15.2	11.0	4.6	1.4	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미만	(143)	29.4	16.8	23.1	18.2	7.0	4.2	1.4	100.0
200-300만원	(191)	26.7	15.2	21.5	18.3	7.9	8.9	1.6	100.0
300-400만원	(204)	32.8	17.2	12.3	16.7	9.8	9.8	1.5	100.0
400-500만원	(137)	26.3	26.3	19.0	15.3	7.3	5.8	0.0	100.0
500-600만원	(107)	29.9	20.6	21.5	14.0	6.5	7.5	0.0	100.0
600-700만원	(78)	21.8	26.9	25.6	10.3	7.7	6.4	1.3	100.0
700만원이상	(140)	32.9	22.1	12.1	15.0	11.4	4.3	2.1	100.0
이념성향(11점)									
진보(6-10)	(375)	31.2	18.7	17.1	12.3	9.1	10.7	1.1	100.0
중도(5)	(427)	26.7	20.8	19.2	19.2	7.3	5.9	0.9	100.0
보수(0-4)	(198)	30.3	19.7	19.7	16.2	9.6	2.5	2.0	100.0
종교									
기독교	(242)	30.6	18.6	19.0	12.8	7.0	10.7	1.2	100.0
천주교	(140)	30.7	18.6	19.3	17.1	9.3	4.3	0.7	100.0
불교	(270)	30.0	17.4	20.0	14.1	8.5	8.5	1.5	100.0
원불교	(27)	33.3	25.9	3.7	3.7	11.1	22.2	0.0	100.0
이슬람교	(12)	33.3	8.3	0.0	8.3	41.7	8.3	0.0	100.0
기타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무교	(308)	26.0	23.4	18.5	21.1	7.5	2.6	1.0	100.0
성정체성									
성전환 남성	(7)	14.3	14.3	28.6	0.0	0.0	42.9	0.0	100.0
성전환 여성	(3)	33.3	33.3	0.0	33.3	0.0	0.0	0.0	100.0
비정체화 남성	(65)	29.2	15.4	13.8	12.3	9.2	20.0	0.0	100.0
비정체화 여성	(51)	37.3	17.6	5.9	9.8	9.8	17.6	2.0	100.0
해당사항 없음	(874)	28.7	20.3	19.6	16.7	8.4	5.1	1.3	100.0

[부록 3] 장병 대상 조사 설문지

2022년 장병 의식 및 생활 조사(병사용)[56]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근무에 헌신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국방부의 의뢰에 의해 정기적으로 장병 의식 및 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의 군 생활 전반과 최근 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귀하의 군 생활 경험을 토대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02) 961-1773

56) 장병 의식 및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의 일부로 수행하였으며, 간부도 동일한 내용이다.

문	아래 사항들을 기입해 주십시오.		
	[1-1] 소 속	[1-2] 계 급	[1-3] 학력
	[ ]	[ ]	[ ]
	① 육군 ② 해군 ③ 공군 ④ 해병대	① 병장 ② 상병 ③ 일병 ④ 이병	① 고등학교 졸업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재학 ④ 2~3년제 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재학 ⑥ 4년제 대학 졸업 ⑦ 대학원 재학 이상

Ⅰ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성전환자의 개념

1 귀하는 성전환자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성별 정체성 (gender identity)	지정 성별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전환자 (Transgender)	남성	동성애자 (homosexual) Lesbian, Gay
	여성	
	간성(intersex)	양성애자 (Bisexual)

성적지향은 성적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의 문제로 이성애자가 보편적이나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도 존재합니다.

성전환은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sex)과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gender)이 달라 외모, 신체특징, 성역할을 자신의 인식된 성정체성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인식된 성으로 외모, 복장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외모의 변화와 더불어 호르몬 치료, 필요시 성전환 수술을 실시하는 다양한 성전환자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과거 성전환 수술이나 생식능력의 상실에 관한 전문의의 감정서를 성별정정을 위한 필수 제출서류로 요구하다가, 2020년 2월부터 이러한 서류를 '참고서면'으로 변경하여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전환자에 대한 경험 여부

2 귀하는 주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전환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미국, 이스라엘,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 불허: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 등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 ① 남성 생식기를 제거하거나 ② 남성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통해 여성과 같이 유선이 생성되거나 여성의 외모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별정정을 하지 않았지만 성별불일치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성전환 여성

3 **현재 「병역법」은 법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하지 않았지만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별불일치로 군 복무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현역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2) 아니다(현역 복무를 시켜야 한다.)

성별정정을 하지 않고 성별불일치는 있지만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성전환 여성

4 **법적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이 되지 않고 성별불일치가 있지만 신체적으로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현역 복무를 시켜야 한다.)
2) 아니다(현역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하는 경우 유방 절제, 자궁적출, 남성 생식기 재건 등의 수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통해 수염이 나고 목소리도 남성의 목소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역법」은 법적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의 군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환 남성의 현역병 복무	복무의 조건
5 **성전환 남성이 현역복무를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잘 모르겠다 **5-1로** →	**5-1** **복무을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법적 성별정정과 무관하게 전문의에 의해 성전환이 인정된 경우 2)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적인 성별정정이 인정된 사람 3)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법적인 성별정정이 인정된 사람
	성전환 군 복무 허용의 이유
	5-2 **성전환자의 현역병 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인권 존중 및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무 기준을 충족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3) 복무 기준을 충족하는 성전환의 복무가 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4)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할 때 성별보다 군인으로서 능력을 중요시해야 하므로

성전환 간부의 군 복무

6 **성전환자(여성→남성, 남성→여성)의 간부(장교, 준·부사관)로서 군 복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 6-1로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잘 모르겠다

군 복무의 조건

6-1 **복무을 위한 성전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1) 법적 성별정정과 무관하게 전문의에 의해 성전환이 인정된 경우
2)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적인 성별정정이 인정된 경우
3)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해 법적인 성별정정이 인정된 경우

조건의 완료 시기

6-2

간부가 성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한가?

1) 병역판정 검사 전
2) 입대 전
3) 복무 중에도 언제나 성전환 가능

성전환 간부 군 복무 허용의 이유

6-3

성전환자 간부의 현역복무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인권 존중 및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 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무 기준을 충족한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3) 복무 기준을 충족하는 성전환의 복무가 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4) 다양성과 포용성을 고려할 때 성별보다 군인으로서 능력이 중요시해야 하므로

상관으로서 성전환자

7 귀하는 지휘관이나 상관이 성전환자인 경우 지시나 명령을 이행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잘 모르겠다

동료나 하급자로서 성전환자

8 귀하는 동료나 하급자가 성전환자인 경우 함께 복무를 하는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 잘 모르겠다

성전환의 현역복무가 군에 미치는 영향

9 귀하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부대원 간의 단합과 부대단결	①	②	③	④	⑨
2) 군기강 확립	①	②	③	④	⑨
3) 부대 사기	①	②	③	④	⑨
4) 부대 전투준비 태세 유지	①	②	③	④	⑨
5) 부대 교육 훈련	①	②	③	④	⑨
6) 행정업무 수행	①	②	③	④	⑨
7) 병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	①	②	③	④	⑨

종교

10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천주교
3) 불교
4) 원불교
5) 이슬람교
6) 기타

성별 정체성(관련되시는 분만 응답)

11 **생물학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 이외의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성전환 남성
2) 성전환 여성
3)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남성
4) 남녀로 정체화되지 않은 출생 성별 여성